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6호

2017. 4. 20.(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99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7-1013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7-134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제2017-136호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6
제2017-137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융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5
제2017-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6
제2017-139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71
제2017-140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89
제2017-141호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9
제2017-142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1
제2017-143호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113

◆ 공 고

제2017-934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14
제2017-9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115
제2017-969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115
제2017-974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116
제2017-977호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17
제2017-9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26
제2017-996호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133
제2017-100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36

◆ 구 고 시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37
제2017-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140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44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147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마포구)	149

제2017-28호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150
제2017-30호 도시계획시설(땡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154
제2017-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156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157
제2017-34호 가산동 3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금천구)	158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관악구)	159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	161
제2017-34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163

◆ 구 공 고

제2017-29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168
제2017-309호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도시계획시설 (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중구)	169
제2017-5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은평구)	170
제2017-4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 (마포구)	171
제2017-480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 호암사지구)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안)(금천구)	171
제2017-425호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작구)	172
제2017-5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관악구)	173
제2017-5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174
제2017-50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76
제2017-7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180

◆ 사업소고시

제2017-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82
제2017-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82
제2017-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83

◆ 사업소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작소방서)	184
-------------------------------------	-----

◆ 정 정

서울특별시 제2017-131호	185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9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안건의 특성상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10조 ②)
- 나.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으로 개정(안 제10조 ⑤)
- 다.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조례에 직접 명시(안 제11조 ①)
- 라. 서면심의의 근거 신설(안 제12조 ④)
- 마.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제15조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전화: 02-2133-6854, Fax: 02-2133-0825, E-mail: goguma@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013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중 직원의 범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제2조(직원의 범위)를 개정

-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조항 개정
-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당초에는 서울시청사내에서 근무하였으나 2009년 청사밖 사무실로(동대문구 소재) 이전함에 따라 직원의 범위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력개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 2133-5784, FAX : 2133-0775 E-mail : hoho173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4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 6. 12.)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1.21.)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8호(2013.1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2호(2016.8.18.)로 결정(변경)된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에 의해 이전한 기존 풍문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공예박물관(문화시설)을 설립하고자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문화시설을 신설하며, 일부 잔여지를 가구 및 획지15-1로 지정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	1,128,372.7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②	학교	고교	종로구 안국동 175-2 외 1	12,826.2	감) 12,826.2	-	1987.02.1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	풍문여고

※ 상기 시설 외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학교시설 변경없음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②	풍문여고	35%이하	120%이하	신축시	3층 이하 12m 이하	기존 현황 5층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시	4층 이하, 16m 이하	

○ 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풍문여고	학교 폐지 12,826.2㎡	•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풍문여고 이전

3)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박물관	종로구 안국동 175-2 외 1	-	증)12,829.8	12,829.8	-	서울 공예박물관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문화시설	60%이하	120%이하	신축시	3층 이하, 12m이하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시	4층 이하, 16m이하	
						과학관은 현행5층 허용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12,829.8㎡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풍문여고 이전 - 강남구 자곡동 이전(2017.2.28.)

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최대개발규모

•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6구역 계동길구역	33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본 지침 제3조 제⑤항 및 제25조에 의한 한옥에 한함.)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 획지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가회로구역 창덕궁길구역 삼청동길1구역 삼청동길2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660㎡ 이하	
	율곡로구역	1,200㎡ 이하	

• 변경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계동길구역	33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본 지침 제3조 제⑤항 및 제25조에 의한 한옥에 한함.)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 획지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가회로구역 창덕궁길구역 삼청동길1구역 삼청동길2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660㎡ 이하	
	율곡로구역	1,200㎡ 이하	

2) 획지계획

• 기정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선	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덕성여중고 삼청동157-83번지 외4필지	•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대지분할 가능선	특별계획구역	•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함.

• 변경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선	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덕성여중고 삼청동157-83번지 외4필지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 가구 및 획지 15-1의 건축행위는 안동별궁 별채 보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대지분할 가능선	특별계획구역	•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함.

※ 향후 가구 및 획지 15-1에 경우 획지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변경없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기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1	1	북촌7구역	삼청동	96-1	46.3	15,126.7	획지선 지정 (국무총리공관)
			삼청동	96-2	66.1		
			삼청동	106-11	15,014.3		
	2	북촌5구역	삼청동	157-83	411.9	576.5	획지선 지정 (기공동건축) 157-142호 옹벽부 절·성토 금지 및 조정식재
			삼청동	157-102	32.1		
			삼청동	157-135	23.1		
			삼청동	157-142	40.0		
			삼청동	157-144	69.4		
2	1	북촌7구역	삼청동	25-1	15,841.1	15,841.1	획지선 지정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3	1	북촌7구역	계동	1-21	1,858.7	3,994.1	획지선 지정 (한국디지털대학 교)
			원서동	1-4	2,135.4		
4	1	북촌7구역	계동	산1-36	1,752.0	1,778.0	획지선 지정
			계동	산1-37	26.0		
6	1	북촌7구역	삼청동	28-1	18,564.0	18,733.0	획지선 지정 (금융연수원)
			삼청동	28-70	169.0		
	2	북촌7구역	삼청동	28-37	(2,785.6)	4,031.0	획지선 지정 (주한베트남대사관)
			삼청동	28-97	(57.8)		
			삼청동	산2-16	(969.1)		
			삼청동	산2-25	(86.5)		
			삼청동	산2-63	(132.0)		
	3	-	화동	2	34,183.3	36,457.1	획지선 지정 (정독도서관 특별 계획구역)
			가회동	37-6	141.5		
			가회동	104	281.0		
			가회동	105	1,851.3		
9	1	-	송현동	48-3	(2,568.0)	2,568.0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 소부지 특별계획구역)
	2	-	중학동	5-3	0.7	33,472.5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 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중학동	6-3	9.9		
			중학동	7-3	21.2		
			중학동	23-1	4.9		
			중학동	23-4	26.8		
			중학동	24	18.2		
			중학동	24-1	20.8		
			중학동	25-1	4.5		
			중학동	25-3	7.1		
			중학동	26-3	1.0		
			중학동	30-2	10.5		
			중학동	30-3	41.0		
			중학동	30-4	38.0		
			사간동	34-3	(33.1)		
			사간동	96	59.5		
			사간동	96-1	23.1		
			사간동	97-2	(5,932.8)		
			사간동	97-3	515.7		
			사간동	97-4	6.6		
			사간동	98	62.8		
			사간동	98-1	33.1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9	2	-	사간동	99	69.4	33,472.5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 계획구역)
			사간동	100	43.3		
			사간동	101	52.5		
			사간동	102	70.8		
			사간동	103-1	117.1		
			사간동	103-2	2.6		
			사간동	104-1	97.4		
			사간동	104-2	107.7		
			사간동	122-3	3.6		
			사간동	122-4	17.2		
			사간동	122-5	30.4		
			사간동	122-6	22.1		
			사간동	122-7	178.5		
			송현동	48-3	(3,540.2)		
			송현동	48-9	226.4		
			송현동	48-10	44.0		
			송현동	48-12	62.8		
			송현동	48-13	39.7		
			송현동	48-16	82.0		
			송현동	49-1	20,203.2		
			송현동	49-6	82.6		
			송현동	49-7	1.3		
			송현동	49-8	4.3		
			송현동	49-16	221.5		
			송현동	49-18	158.7		
			송현동	49-19	(113.6)		
			송현동	52-1	6.0		
			송현동	52-2	1.7		
			송현동	56-7	4.0		
			송현동	56-9	1.3		
			송현동	57	297.7		
			송현동	58	287.1		
			송현동	60-1	410.5		
	3	-	소격동	165	12,323.5	27,303.1	획지선 지정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국군서울병원부지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소격동	165-10	14,979.6		
	4	북촌7구역	송현동	17-1	66.4	7,741.6	획지선 지정 (덕성여중)
			송현동	29-4	29.8		
			송현동	34	6,229.3		
			송현동	34-1	77.7		
			송현동	34-3	33.1		
			송현동	34-8	17.9		
			송현동	34-9	31.2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등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9	4	북촌7구역	송현동	34-10	57.8		
			송현동	34-11	363.9		
			송현동	34-12	183.8		
			송현동	34-13	305.9		
			송현동	34-14	213.4		
			송현동	34-15	86.1		
			송현동	42-1	3.3		
			송현동	45-1	1.7		
			송현동	48-14	40.3		
	5	북촌길및 진입가로구 역	사간동	125-2	82.6	364.3	획지선 지정
			사간동	126-3	93.6		
			사간동	126-6	95.9		
			사간동	126-7	92.2		
10	1	북촌7구역	안국동	9-2	32.8	11,174.8	획지선 지정 (덕성여고)
			안국동	17-10	148.8		
			안국동	17-13	130.6		
			안국동	17-16	117.0		
			안국동	17-17	82.6		
			안국동	27-4	39.3		
			안국동	27-5	91.2		
			안국동	37-1	9,320.4		
			안국동	37-7	290.5		
			안국동	37-8	41.2		
			안국동	40-1	36.7		
			안국동	48	45.8		
			안국동	49	72.5		
			안국동	50	61.1		
			안국동	51	27.4		
			안국동	51-1	23.1		
			안국동	175-96	35.4		
			안국동	176-1	59.5		
			안국동	177	518.9		
	2	율곡로구역	안국동	175-87	504.8	504.8	획지선 지정
	3	율곡로구역	안국동	175-3	1,145.4	1,145.4	획지선 지정
12	1	율곡로구역	안국동	164	324.5	626.8	획지선 지정
			안국동	164-6	286.7		
			안국동	165	15.6		
	2	율곡로구역	안국동	159-3	79.0	376.5	획지선 지정
			안국동	163	275.4		
			안국동	163-3	22.1		
	3	율곡로구역	안국동	148	631.1	755.1	획지선 지정
			안국동	153	124.0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12	4	울곡로구역	안국동	141	789.4	789.4	획지선 지정
	5	울곡로구역	안국동	138-1	94.2	300.1	획지선 지정
			안국동	138-2	84.3		
			안국동	139-1	89.3		
			안국동	139-2	22.1		
			안국동	140	10.2		
	6	울곡로구역	안국동	135	414.1	1,184.0	획지선 지정
			재동	111-5	769.9		
	7	울곡로구역	재동	104-1	96.8	911.7	획지선 지정
			재동	105-1	29.8		
			재동	106-4	457.5		
			재동	111-1	173.2		
			재동	111-7	63.8		
			재동	111-9	87.3		
			재동	111-15	3.3		
13	1	울곡로구역	재동	92	181.7	902.0	획지선 지정
			재동	93-1	218.2		
			재동	93-2	297.5		
			재동	94-1	86.0		
			재동	95-2	111.7		
			재동	96-2	6.9		
	2	울곡로구역	계동	146-2	643.3	643.3	획지선 지정
14	1	-	운니동	100-1	321.8	23,633.5	획지선 지정 (현대그룹사옥 특별계획구역)
			계동	140-2	19,366.8		
			원서동	206	3,944.9		
	2	울곡로구역	원서동	219	460.1	1,227.1	획지선 지정
			원서동	221-1	59.5		
			원서동	228	208.3		
			원서동	229	208.3		
			원서동	230	290.9		

※ 별도로 표기한 ()안의 값은 획지내 편입된 면적임.

- 상기 면적은 토지대장(2009년 9월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값이며 ()안의 값은 획지내 편입된 면적을 개략 산출한 값으로서, 획지의 면적 등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1	1	북촌7구역	삼청동	96-1	46.3	15,126.7	획지선 지정 (국무총리공관)
			삼청동	96-2	66.1		
			삼청동	106-11	15,014.3		
	2	북촌5구역	삼청동	157-83	411.9	576.5	획지선 지정 (기공동건축) 157-142호 옹벽부 절·성토 금지 및 조경식재
			삼청동	157-102	32.1		
			삼청동	157-135	23.1		
			삼청동	157-142	40.0		
			삼청동	157-144	69.4		
2	1	북촌7구역	삼청동	25-1	15,841.1	15,841.1	획지선 지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1	북촌7구역	계동	1-21	1,858.7	3,994.1	획지선 지정 (한국디지털대학교)
			원서동	1-4	2,135.4		
4	1	북촌7구역	계동	산1-36	1,752.0	1,778.0	획지선 지정
			계동	산1-37	26.0		
6	1	북촌7구역	삼청동	28-1	18,564.0	18,733.0	획지선 지정 (금융연수원)
			삼청동	28-70	169.0		
	2	북촌7구역	삼청동	28-37	(2,785.6)	4,031.0	획지선 지정 (주한베트남대사관)
			삼청동	28-97	(57.8)		
			삼청동	산2-16	(969.1)		
			삼청동	산2-25	(86.5)		
			삼청동	산2-63	(132.0)		
	3	-	화동	2	34,183.3	36,457.1	획지선 지정 (정독도서관 특별계획구역)
			가회동	37-6	141.5		
			가회동	104	281.0		
			가회동	105	1,851.3		
9	1	-	송현동	48-3	(2,568.0)	2,568.0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
	2	-	중학동	5-3	0.7	33,472.5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중학동	6-3	9.9		
			중학동	7-3	21.2		
			중학동	23-1	4.9		
			중학동	23-4	26.8		
			중학동	24	18.2		
			중학동	24-1	20.8		
			중학동	25-1	4.5		
			중학동	25-3	7.1		
			중학동	26-3	1.0		
			중학동	30-2	10.5		
			중학동	30-3	41.0		
			중학동	30-4	38.0		
			사간동	34-3	(33.1)		
			사간동	96	59.5		
			사간동	96-1	23.1		
			사간동	97-2	(5,932.8)		
			사간동	97-3	515.7		
			사간동	97-4	6.6		
			사간동	98	62.8		
			사간동	98-1	33.1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등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9	2	-	사간동	99	69.4	33,472.5	획지선 지정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사간동	100	43.3		
			사간동	101	52.5		
			사간동	102	70.8		
			사간동	103-1	117.1		
			사간동	103-2	2.6		
			사간동	104-1	97.4		
			사간동	104-2	107.7		
			사간동	122-3	3.6		
			사간동	122-4	17.2		
			사간동	122-5	30.4		
			사간동	122-6	22.1		
			사간동	122-7	178.5		
			송현동	48-3	(3,540.2)		
			송현동	48-9	226.4		
			송현동	48-10	44.0		
			송현동	48-12	62.8		
			송현동	48-13	39.7		
			송현동	48-16	82.0		
			송현동	49-1	20,203.2		
			송현동	49-6	82.6		
			송현동	49-7	1.3		
			송현동	49-8	4.3		
			송현동	49-16	221.5		
			송현동	49-18	158.7		
			송현동	49-19	(113.6)		
			송현동	52-1	6.0		
			송현동	52-2	1.7		
			송현동	56-7	4.0		
			송현동	56-9	1.3		
			송현동	57	297.7		
			송현동	58	287.1		
			송현동	60-1	410.5		
	3	-	소격동	165	12,323.5	27,303.1	획지선 지정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 구역) 국군서울병원부지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소격동	165-10	14,979.6		
	4	북촌7구역	송현동	17-1	66.4	7,741.6	획지선 지정 (덕성여중)
			송현동	29-4	29.8		
			송현동	34	6,229.3		
			송현동	34-1	77.7		
			송현동	34-3	33.1		
			송현동	34-8	17.9		
			송현동	34-9	31.2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9	4	북촌7구역	송현동	34-10	57.8		
			송현동	34-11	363.9		
			송현동	34-12	183.8		
			송현동	34-13	305.9		
			송현동	34-14	213.4		
			송현동	34-15	86.1		
			송현동	42-1	3.3		
			송현동	45-1	1.7		
			송현동	48-14	40.3		
	5	북촌길및 진입가로구 역	사간동	125-2	82.6	364.3	획지선 지정
			사간동	126-3	93.6		
			사간동	126-6	95.9		
			사간동	126-7	92.2		
10	1	북촌7구역	안국동	9-2	32.8	11,174.8	획지선 지정 (덕성여고)
			안국동	17-10	148.8		
			안국동	17-13	130.6		
			안국동	17-16	117.0		
			안국동	17-17	82.6		
			안국동	27-4	39.3		
			안국동	27-5	91.2		
			안국동	37-1	9,320.4		
			안국동	37-7	290.5		
			안국동	37-8	41.2		
			안국동	40-1	36.7		
			안국동	48	45.8		
			안국동	49	72.5		
			안국동	50	61.1		
			안국동	51	27.4		
			안국동	51-1	23.1		
			안국동	175-96	35.4		
			안국동	176-1	59.5		
			안국동	177	518.9		
	2	율곡로구역	안국동	175-87	504.8	504.8	획지선 지정
	3	율곡로구역	안국동	175-3	1,145.4	1,145.4	획지선 지정
12	1	율곡로구역	안국동	164	324.5	626.8	획지선 지정
			안국동	164-6	286.7		
			안국동	165	15.6		
	2	율곡로구역	안국동	159-3	79.0	376.5	획지선 지정
			안국동	163	275.4		
			안국동	163-3	22.1		
	3	율곡로구역	안국동	148	631.1	755.1	획지선 지정
			안국동	153	124.0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12	4	울곡로구역	안국동	141	789.4	789.4	획지선 지정
	5	울곡로구역	안국동	138-1	94.2	300.1	획지선 지정
			안국동	138-2	84.3		
			안국동	139-1	89.3		
			안국동	139-2	22.1		
			안국동	140	10.2		
	6	울곡로구역	안국동	135	414.1	1,184.0	획지선 지정
			재동	111-5	769.9		
	7	울곡로구역	재동	104-1	96.8	911.7	획지선 지정
			재동	105-1	29.8		
			재동	106-4	457.5		
			재동	111-1	173.2		
			재동	111-7	63.8		
			재동	111-9	87.3		
			재동	111-15	3.3		
13	1	울곡로구역	재동	92	181.7	902.0	획지선 지정
			재동	93-1	218.2		
			재동	93-2	297.5		
			재동	94-1	86.0		
			재동	95-2	111.7		
			재동	96-2	6.9		
	2	울곡로구역	계동	146-2	643.3	643.3	획지선 지정
14	1	-	운니동	100-1	321.8	23,633.5	획지선 지정 (현대그룹사옥 특별계획구역)
			계동	140-2	19,366.8		
			원서동	206	3,944.9		
	2	울곡로구역	원서동	219	460.1	1,227.1	획지선 지정
			원서동	221-1	59.5		
			원서동	228	208.3		
			원서동	229	208.3		
			원서동	230	290.9		
15	1	북촌6구역	안국동	175-112	985.1	985.1	획지선 지정

※ 별도로 표기한 ()안의 값은 획지내 편입된 면적임.

- 상기 면적은 토지대장(2009년 9월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값이며 ()안의 값은 획지내 편입된 면적을 개략 산출한 값으로서, 획지의 면적 등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획지계획 사유서

• 기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대상지번	계획내용	계획사유
1	1	삼청동 96-1, 96-2, 106-11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국무총리공관(동일소유필지 및 주변 필지 중 현재 공동개발되어 있는 필지)
	2	삼청동 157-83, 157-102, 157-135, 157-142, 157-144	획지선 지정	현황상 기공동개발 부지
2	1	삼청동 25-1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1	계동 1-21, 원서동 1-4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한국디지털대학교(동일소유필지)
4	1	계동 산1-36, 산1-37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필지
6	1	삼청동 28-1, 28-70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한국금융연수원(동일소유필지)
	2	삼청동 28-37, 28-97, 산2-16, 산2-25, 산2-63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주한베트남대사관
	3	화동 2, 가회동 37-6, 104, 105	획지선 지정	※ 정독도서관 특별계획구역 도서관, 공원, 지하주차장, 문화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창의적 개발안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동일소유필지)
9	1	송현동 48-3	획지선 지정	※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 - 개발 움직임이 있는 민간부지로 역사문화환경 등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따라 획지 분할
	2	중학동 5-3, 6-3, 7-3, 23-1, 23-4, 24, 24-1, 25-1, 25-3, 26-3, 30-2, 30-3, 30-4, 사간동 34-3, 96, 96-1, 97-2, 97-3, 97-4, 98, 98-1, 99, 100, 101, 102, 103-1, 103-2, 104-1, 104-2, 122-3, 122-4, 122-5, 122-6, 122-7, 송현동 48-3, 48-9, 48-10, 48-12, 48-13, 48-16, 49-1, 49-6, 49-7, 49-8, 49-16, 49-18, 49-19, 52-1, 52-2, 56-7, 56-9, 57, 58, 60-1	획지선 지정	
	3	소격동 165, 165-10	획지선 지정	
	4	송현동 17-1, 29-4, 34, 34-1, 34-3, 34-8, 34-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42-1, 45-1, 48-14	획지선 지정	
	5	사간동 125-2, 126-3, 126-6, 126-7	획지선 지정	
10	1	안국동 9-2, 17-10, 17-13, 17-16, 17-17, 27-4, 27-5, 37-1, 37-7, 37-8, 40-1, 48, 49, 50, 51, 51-1, 175-96, 176-1, 177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덕성여고(동일소유필지)
	2	안국동 175-87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3	안국동 175-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2	1	안국동 164, 164-6, 16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2	안국동 159-3, 163, 163-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3	안국동 148, 15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4	안국동 141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5	안국동 138-1, 138-2, 139-1, 139-2, 140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6	안국동 135, 재동 111-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7	재동 104-1, 105-1, 106-4, 111-1, 111-7, 111-9, 111-1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3	1	재동 92, 93-1, 93-2, 94-1, 95-2, 96-2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2	계동 146-2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4	1	운니동 100-1, 계동 140-2, 원서동 206	획지선 지정	※ 현대그룹사옥 특별계획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요구 및 입지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2	원서동 219, 221-1, 228, 229, 230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대상지번	계획내용	계획사유
1	1	삼청동 96-1, 96-2, 106-11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국무총리공관(동일소유필지 및 주변 필지 중 현재 공동개발되어 있는 필지)
	2	삼청동 157-83, 157-102, 157-135, 157-142, 157-144	획지선 지정	현황상 기공동개발 부지
2	1	삼청동 25-1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1	계동 1-21, 원서동 1-4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한국디지털대학교(동일소유필지)
4	1	계동 산1-36, 산1-37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필지
6	1	삼청동 28-1, 28-70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한국금융연수원(동일소유필지)
	2	삼청동 28-37, 28-97, 산2-16, 산2-25, 산2-63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주한베트남대사관
	3	화동 2, 가회동 37-6, 104, 105	획지선 지정	※ 정독도서관 특별계획구역 도서관, 공원, 지하주차장, 문화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창의적 개발안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동일소유필지)
9	1	송현동 48-3	획지선 지정	※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 - 개발 움직임이 있는 민간부지로 역사문화환경 등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따라 획지 분할
	2	중학동 5-3, 6-3, 7-3, 23-1, 23-4, 24, 24-1, 25-1, 25-3, 26-3, 30-2, 30-3, 30-4, 사간동 34-3, 96, 96-1, 97-2, 97-3, 97-4, 98, 98-1, 99, 100, 101, 102, 103-1, 103-2, 104-1, 104-2, 122-3, 122-4, 122-5, 122-6, 122-7, 송현동 48-3, 48-9, 48-10, 48-12, 48-13, 48-16, 49-1, 49-6, 49-7, 49-8, 49-16, 49-18, 49-19, 52-1, 52-2, 56-7, 56-9, 57, 58, 60-1	획지선 지정	
	3	소격동 165, 165-10	획지선 지정	
	4	송현동 17-1, 29-4, 34, 34-1, 34-3, 34-8, 34-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42-1, 45-1, 48-14	획지선 지정	
	5	사간동 125-2, 126-3, 126-6, 126-7	획지선 지정	
10	1	안국동 9-2, 17-10, 17-13, 17-16, 17-17, 27-4, 27-5, 37-1, 37-7, 37-8, 40-1, 48, 49, 50, 51, 51-1, 175-96, 176-1, 177	획지선 지정	대규모부지 덕성여고(동일소유필지)
	2	안국동 175-87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3	안국동 175-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2	1	안국동 164, 164-6, 16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2	안국동 159-3, 163, 163-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3	안국동 148, 153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4	안국동 141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5	안국동 138-1, 138-2, 139-1, 139-2, 140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6	안국동 135, 재동 111-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7	재동 104-1, 105-1, 106-4, 111-1, 111-7, 111-9, 111-15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3	1	재동 92, 93-1, 93-2, 94-1, 95-2, 96-2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2	계동 146-2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4	1	운니동 100-1, 계동 140-2, 원서동 206	획지선 지정	※ 현대그룹사옥 특별계획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요구 및 입지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2	원서동 219, 221-1, 228, 229, 230	획지선 지정	적정개발규모 고려
15	1	안국동 175-112	획지선 지정	풍문여고 이적지 중 문화시설 결정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여 관리필요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용도계획 결정조서

1) 허용용도 (변경없음)

2) 불허용도

- 관련법에 따라 도입가능한 용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만 허용하며, 그 중 적용구역에 따라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기정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적용기준
불허1	북촌4구역 북촌6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300㎡미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 입지 불허 • 건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지침제24조~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제53조(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이상)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00㎡미만) 제조업소, 수리점(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노래연습장	전층 불허
불허1-1	계동길구역 창덕궁길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300㎡미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 입지 불허 • 건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지침제24조~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제53조(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이상)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00㎡미만) 제조업소, 수리점(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노래연습장	전층 불허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적용기준
불허2	가회로구역 삼청동길1구역 삼청동길2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율곡로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변전소,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불허3	북촌7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300㎡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의 20%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는 제외
			세탁소 변전소, 대피소	전층 불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이상)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변경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적용기준
불허1	북촌4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300㎡미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 입지 불허 • 건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지침제24조~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제53조(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전층 불허
			휴게음식점(300㎡이상)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00㎡미만) 제조업소, 수리점(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노래연습장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적용기준
불허 1-1	계동길구역 창덕궁길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300㎡미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입지 불허 • 건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지침제24조~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제53조(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이상)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00㎡미만) 제조업소, 수리점(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노래연습장	전층 불허
불허2	가회로구역 삼정동길1구역 삼정동길2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율곡로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변전소,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불허3	북촌7구역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300㎡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의 20%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는 제외
			세탁소 변전소,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이상)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500㎡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3) 용도완화(변경없음)

- 북촌6구역 내 포함 된 가구 및 획지 15-1은 안동별궁 별채 보존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으로 용도완화 사항은 제외함

4) 권장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 각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정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변경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단, 가구 및 획지 15-1 : 학교이적지 건폐율 30%이하) ^{주1)}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주1) 서울시도시계획조례 54조 3항

- 건폐율 완화계획(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정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변경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단, 가구 및 획지 15-1:학교이적지 용적률 120%이하) ^{주2)}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주2) 서울시도시계획조례 55조 2항 제4호

- 용적률 완화계획(변경없음)

3) 높이 계획 결정조서

□ 높이 계획

• 기정

적용구역	높이		비고
북촌1구역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 비한옥의 신축불가(비한옥의 신축이외의 건축행위는 가능) - 비한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시 적용
북촌2구역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 높이 6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6구역 계동길구역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 높이 10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가회로구역 창덕궁길구역 삼청동길1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
을곡로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
북촌7구역	표고 50m이상인 경우,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 심의를 통해 3층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까지 완화
	표고 50m미만인 경우, 3층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삼청동길2구역	다음의 기준 모두 준수 - 화개1길 옹벽높이 이하 - 3개층 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 공동개발시, 본 지침 제7조 제⑤항, 제19조 참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건축물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산정 기준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의 기준에 의함.

변경

적용구역	높이		비고
북촌1구역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 비한옥의 신축불가(비한옥의 신축이외의 건축행위는 가능) - 비한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시 적용
북촌2구역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 높이 6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계동길구역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a : 건물폭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 높이 10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가회로구역 창덕궁길구역 삼청동길1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
을곡로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
북촌7구역	표고 50m이상인 경우,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심의를 통해 3층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까지 완화
	표고 50m미만인 경우, 3층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삼청동길2구역	다음의 기준 모두 준수 - 화개1길 옹벽높이 이하 - 3개층 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공동개발시, 본 지침 제7조 제⑤항, 제19조 참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건축물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산정 기준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의 기준에 의함.

4)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기정

도면표시 및 구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북촌1구역	- 가회동 31번지, 삼청동 35번지 일대 - 가회동 11번지 일대 - 계동 128-4 일대 - 원서동 47 일대	용도	허용1	비한옥 신축불가 (단, 비한옥 신축외 건축행위 가능)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북촌2구역	- 삼청동 35번지 일대 - 화동 77-4 일대 - 가회동 1-41 일대 - 가회동 93-1 일대 - 가회동 178 일대 - 계동 2-104 일대 - 계동 55 일대 - 계동 140-15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북촌3구역	- 가회동 1-13 일대 - 가회동 1-6 일대 - 원서동 9-6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4구역	- 팔판동 45-2 일대 - 화동 30 일대	용도	불허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5구역	- 삼청동 145-20 일대 - 팔판동 117-1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6구역	- 사간동 14 일대 - 안국동 53 일대 - 재동 54-2 일대 - 재동 84-45 일대	용도	불허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도면표시 및 구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동길구역 • 계동 133-6 일대	용도	불허1-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가회로구역 • 가회동 30-3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창덕궁길 구역 • 원서동 70 일대 • 원서동 116-3 일대	용도	불허1-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삼청동길1 구역 • 삼청동 31-1 일대 • 삼청동 105-1 일대 • 삼청동 35-1 일대 • 삼청동 55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삼청동길2 구역 • 삼청동 63-3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3개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옹벽이하	
	북촌길 및 진입가로 구역 • 소격동 144-2 일대 • 사간동 78 일대 • 재동 109 일대 • 계동 140-10 일대 • 재동 55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율곡로구역 • 재동 106-4 일대 • 원서동 229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6m이하	
	북촌7구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상) • 한국디지털대학교 • 한국금융연수원 • 베트남대사관 • 계동 산1-38 일대 • 국무총리공관 • 덕성여중고	용도	불허3 / 용도완화 (업무시설 포함 부지 별도 표시)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표고 50m이상인 경우,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표고 50m미만인 경우, 3층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변경

도면표시 및 구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북촌1구역	- 가회동 31번지, 삼청동 35번지 일대 - 가회동 11번지 일대 - 계동 128-4 일대 - 원서동 47 일대	용도	허용1	비한옥 신축불가 (단, 비한옥 신축외 건축행위 가능)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북촌2구역	- 삼청동 35번지 일대 - 화동 77-4 일대 - 가회동 1-41 일대 - 가회동 93-1 일대 - 가회동 178 일대 - 계동 2-104 일대 - 계동 55 일대 - 계동 140-15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1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4+0.65a)m 이하	
			비한옥 1층 이하 / 최고높이 4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6m이하)	
북촌3구역	- 가회동 1-13 일대 - 가회동 1-6 일대 - 원서동 9-6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4구역	- 팔판동 45-2 일대 - 화동 30 일대	용도	불허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5구역	- 삼청동 145-20 일대 - 팔판동 117-1 일대	용도	허용2 / 권장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 사간동 14 일대 - 안국동 53 일대 - 안국동 175-112 - 재동 54-2 일대 - 재동 84-45 일대	용도	불허1 / 용도완화(가구 및 획지 15-1 미포함)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도면표시 및 구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동길구역 • 계동 133-6 일대	용도	불허1-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가회로구역 • 가회동 30-3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창덕궁길구역 • 원서동 70 일대 • 원서동 116-3 일대	용도	불허1-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삼청동길1구역 • 삼청동 31-1 일대 • 삼청동 105-1 일대 • 삼청동 35-1 일대 • 삼청동 55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삼청동길2구역 • 삼청동 63-3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3개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옹벽이하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 소격동 144-2 일대 • 사간동 78 일대 • 재동 109 일대 • 계동 140-10 일대 • 재동 55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2m이하	
	율곡로구역 • 재동 106-4 일대 • 원서동 229 일대	용도	불허2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최고높이 16m이하	
	북촌7구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상) • 한국디지털대학교 • 한국금융연수원 • 베트남대사관 • 계동 산1-38 일대 • 국무총리공관 • 덕성여중고	용도	불허3 / 용도완화 (업무시설 포함 부지 별도 표시)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표고 50m이상인 경우, 2층 이하 /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표고 50m미만인 경우, 3층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비한옥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비한옥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통지침’과 각 구역별로 적용하는 ‘구역별지침’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기타 공작물, 부속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구역별지침 적용구역의 구분>

기정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한옥건축지정	북촌1구역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지정함. - 비한옥의 신축을 불허함. - 기존 비한옥의 경우, 신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공통지침과 한옥건축지정 지침 준수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한옥건축유도	북촌2구역 북촌6구역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유도함.(비한옥 신축가능) - 비한옥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기존 한옥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한옥건축유도지침 준수	
한옥건축권장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7구역 계동길구역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권장함.(비한옥 신축가능) - 비한옥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북촌 고유의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한옥건축권장지침 준수	

변경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한옥건축지정	북촌1구역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지정함. - 비한옥의 신축을 불허함. - 기존 비한옥의 경우, 신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공통지침과 한옥건축지정 지침 준수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한옥건축유도	북촌2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유도함.(비한옥 신축가능) - 비한옥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기존 한옥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한옥건축유도지침 준수	
한옥건축권장	북촌3구역 북촌4구역 북촌5구역 북촌7구역 계동길구역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권장함.(비한옥 신축가능) - 비한옥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북촌 고유의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한옥건축권장지침 준수	

<공통지침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① 규제사항 : 변경없음

② 권장사항 : 변경없음

<구역별 지침>

기정

구분		한옥건축지정	한옥건축유도	한옥건축권장
적용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북촌6구역	북촌3구역/북촌4구역 북촌5구역/북촌7구역 계동길구역
비한옥의 신축		불가	가능	가능
지붕	경사지붕 설치	권장	권장	권장
		• 단, 경사지붕 설치 시 - 지붕의 경사는 반드시 3:10 이상, 6:10 이하로 함. - 경사 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하도록 함.		
담장설치	도로경계선에 전통양식담장설치	규제	규제	권장
색채	권장색채사용 또는 재료 고유의 색채 유지	규제	규제	권장
옹벽 등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경우 콘크리트 마감 금지	규제	규제	-

변경

구분		한옥건축지정	한옥건축유도	한옥건축권장
적용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북촌3구역/북촌4구역 북촌5구역/북촌7구역 계동길구역
비한옥의 신축		불가	가능	가능
지붕	경사지붕 설치	권장	권장	권장
		• 단, 경사지붕 설치 시 - 지붕의 경사는 반드시 3:10 이상, 6:10 이하로 함. - 경사 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하도록 함.		
담장설치	도로경계선에 전통양식담장설치	규제	규제	권장
색채	권장색채사용 또는 재료 고유의 색채 유지	규제	규제	권장
옹벽 등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경우 콘크리트 마감 금지	규제	규제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 보행자 통행 가로변 (계동길 남측, 화개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해당구간 도면표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차량진입금지구간에 면한 대지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인근주차장 또는 비용납부로 대신)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건 및 내용은 완화계획에 따름. 「주차장법」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 준수
공용주차장	특별계획구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x 0.2 이상 설치	- 시설 설치 후 공공에 무상으로 제공시 - 심의를 통하여 계획지침 완화 가능

변경

구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 보행자 통행 가로변 (계동길 남측, 화개길,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윤보선길)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 및 윤보선길 차량금지구간 적용 (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 차량진·출입구 설정)	해당구간 도면표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차량진입금지구간에 면한 대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포함)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인근주차장 또는 비용납부로 대신)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건 및 내용은 완화계획에 따름. 「주차장법」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 준수
공용주차장	특별계획구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x 0.2 이상 설치	- 시설 설치 후 공공에 무상으로 제공시 - 심의를 통하여 계획지침 완화 가능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주민협정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가.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변경없음)
- 나. 용도완화(변경없음)
- 다. 건폐율 완화계획(변경없음)
- 라. 용적률 완화계획(변경없음)
- 마. 높이 완화계획(변경없음)
- 바. 건축한계선 적용 예외(변경없음)
- 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① 한옥건축시	10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①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한옥마을 보존	② 가로지장물을 부 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②	삼청동길변 가회로변 울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③ 가로지장물을 부 지내 수용시 ④ 공공에게 공간제 공시	100% 완화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 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시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① 한옥건축시	10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①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한옥마을 보존	② 가로지장물을 부 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서울공예 박물관 건립부지	차량진입금 지구간 지정	③ 차량진입 금지구간지정	100% 완화	• 유구출토 가능성이 높음으로 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최소 주차확보 • 주차장 조례 상 장애인주차3%적용 ※법정주차 : 문화시설면적 100㎡당 1대 총 106대 산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삼청동길변 가회로변 울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④ 가로지장물을 부 지내 수용시 ⑤ 공공에게 공간제 공시	100% 완화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 구)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 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시

8) 계획지침의 완화(변경없음)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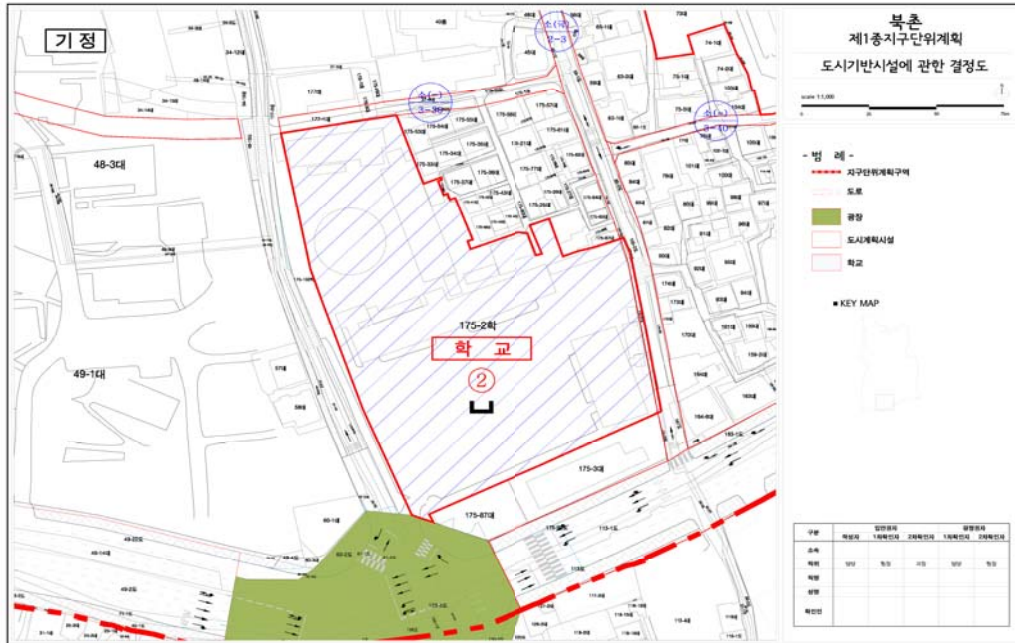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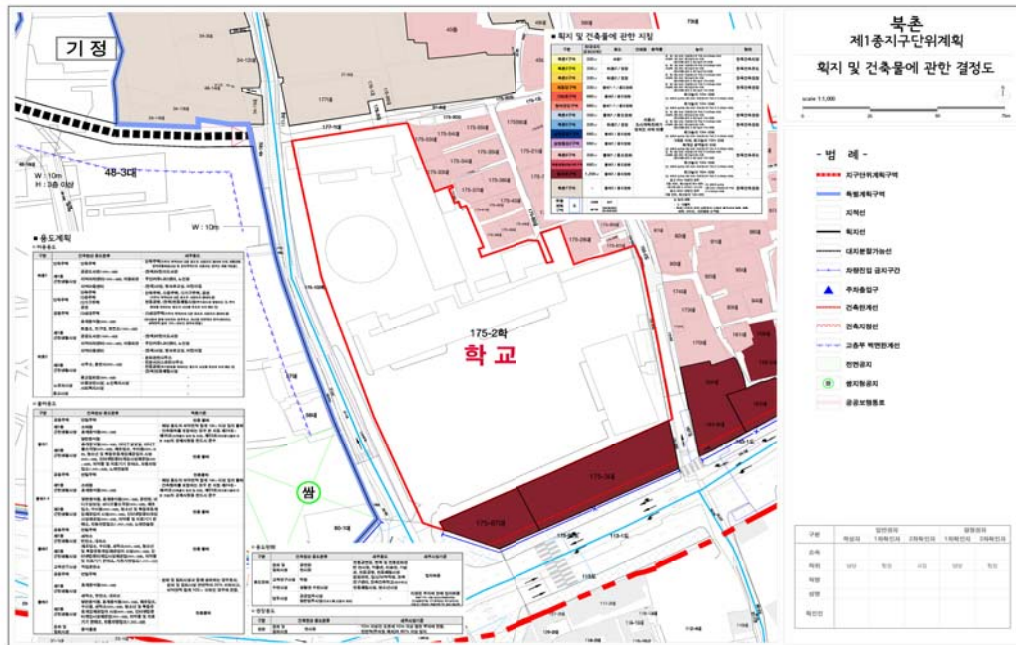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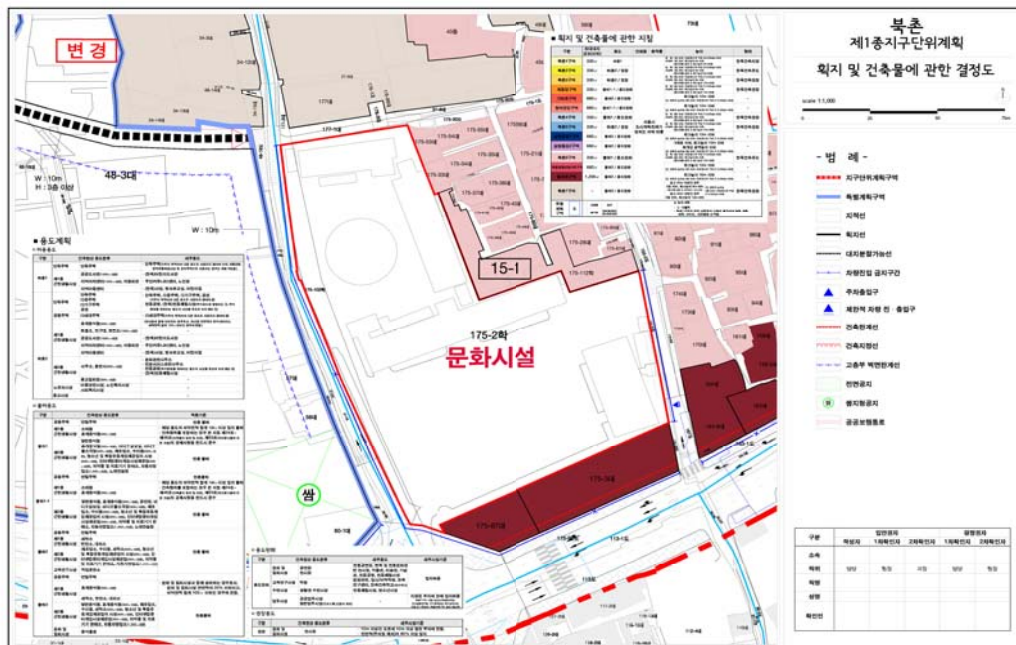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6호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3호(2016.5.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에서 제외된 광장 및 녹지를 반영하고 실내배드민턴장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공원경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29-50 일대

3. 면 적 : 254,64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 31-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55,342	22,664	3	2,008	6,110	8	254,648	22,252	3	1,893.83	6,104.79	8	감 694㎡	
	기반 시설	소계	12,820				12,408	12,408					감 412㎡	
		도로	7,675					7,675	7,675					
		광장	5,145					4,733	4,733					감 412㎡
조경시설		1,303	1,303				1,303	1,303				2		
휴양시설		4,467	4,467				4,467	4,467				2		
운동시설		2,823	2,823	1	927	993	2	2,823	2,823	1	812.83	987.79	2	
편익시설		184	184	1	72	72		184	184	1	72	72		
교양시설		1,067	1,067	1	1,009	5,045		1,067	1,067	1	1,009	5,045		
관리시설												2		
녹지및기타		232,678						232,396					감 282㎡	
공원시설율 (법정 40% 이하)		22,664 ÷ 255,342 × 100 = 8.88%						22,252 ÷ 254,648 × 100 = 8.73%						감 0.15%
공원건폐율 (법정 10% 이하)		2,008.0 ÷ 255,342 × 100 = 0.79%						1,893.83 ÷ 254,648 × 100 = 0.74%						감 0.05%

2. 시설조서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5,342	22,664	3동	2,008	6,110	8			254,648	22,252	3동	1,893.83	6,104.79	8	감 694㎡
소계				12,820	12,820							12,408	12,408					감 412㎡
도로				7,675	7,675							7,675	7,675					
(산책로)				(7,675)	(7,675)							(7,675)	(7,675)					
광장		가		5,145	5,145					가		4,733	4,733					감 412㎡
진입광장		가-1	산29-49임	(1,296)	(1,296)						산29-49임	(884)	(884)					감 412㎡
부진입광장		가-2	산43임	(1,735)	(1,735)						산43임	(1,735)	(1,735)					
중앙광장		가-3	산29-14임	(932)	(932)						산29-14임	(932)	(932)					
다목적 광장			산6-18임	(1,182)	(1,182)						산6-18임	(1,182)	(1,182)					
소계				1,303	1,303				2			1,303	1,303				2	
화단		나	산43임	803	803					나	산43임	803	803					
폭포		카	산43임	500	500						산43임	500	500					
파고라		①				목재			1	①				목재			1	
쉼터		②				목재			1	②				목재			1	
소계				4,467	4,467				2			4,467	4,467				2	
휴게소		다		4,467	4,467					다		4,467	4,467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1	다-1	산43 임	(163)	(163)						다-1	산43 임	(163)	(163)						
	휴게소2	다-2	산179 임	(765)	(765)						다-2	산179 임	(765)	(765)						
	휴게소3	다-3	산179 임	(337)	(337)						다-3	산179 임	(337)	(337)						
	휴게소4	다-4	산6- 18임	(810)	(810)						다-4	산6- 18임	(810)	(810)						
	휴게소5	다-5	산6- 18임	(562)	(562)						다-5	산6- 18임	(562)	(562)						
	휴게소6	다-6	산6- 16임	(450)	(450)						다-6	산6- 16임	(450)	(450)						
	휴게소7	다-7	산31- 3임	(1,125)	(1,125)						다-7	산31- 3임	(1,125)	(1,125)						
	휴게소8	다-8	산31- 1임	(165)	(165)						다-8	산31- 1임	(165)	(165)						
	휴게소9	다-9	204	(90)	(90)						다-9	204	(90)	(90)						
정자		③				목재				1	③			목재				1		
장의자						목재				1				목재				1		
소계				2,823	2,823		1동	927	993	2			2,823	2,823		1동	812.83	987.79	2	
다목적운동장		라	산6- 18임	753	753					1	라	산6- 18임	753	753					1	
베드민턴장		마		1,677	1,677		1동	927	993		마		1,677	1,677		1동	812.83	987.79		
베드민턴장2		-2	산34- 5임	(750)	(750)						마-2	산34- 5임	(750)	(750)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실내배드 민턴장3	마-3	산31-3 3임	(927)	(927)	철골조철 근콘크리 트조	1동	927	993		마-3	204	(927)	(927)	철골조, 철 근콘크리 트조	1동	812.83	987.79	
	체력단련 센터	바	산179-2 2임	393	393	목재			1	바	산179-2 2임	393	393	393	목재			1	
편의 시설	소계			184	184		1동	72	72				184	184		1동	72	72	
	약수터	자	산31-3 3임	22	22					자	산31-3 3임	22	22	22					
	창고 및 화장실	5-2	산31-3	120	120	목재	1동	72	72		5-2	산31-3	120	120	목재	1동	72	72	
	주차장	6	204	42	42					6	204	42	42	42					
교양 시설	소계			1,067	1,067		1동	1,009	5,045				1,067	1,067		1동	1,009	5,045	
	문화회관	4	산29-1 3임	1,067	1,067		1동	1,009	5,045		4	산29-1 3임	1,067	1,067		1동	1,009	5,045	
관리 시설	소계									2								2	
	공원등								1									1	
	휴지통					스텐			1					스텐				1	
녹지 및 기타	소계			232,678									232,396						
	녹지			232,678									232,396						감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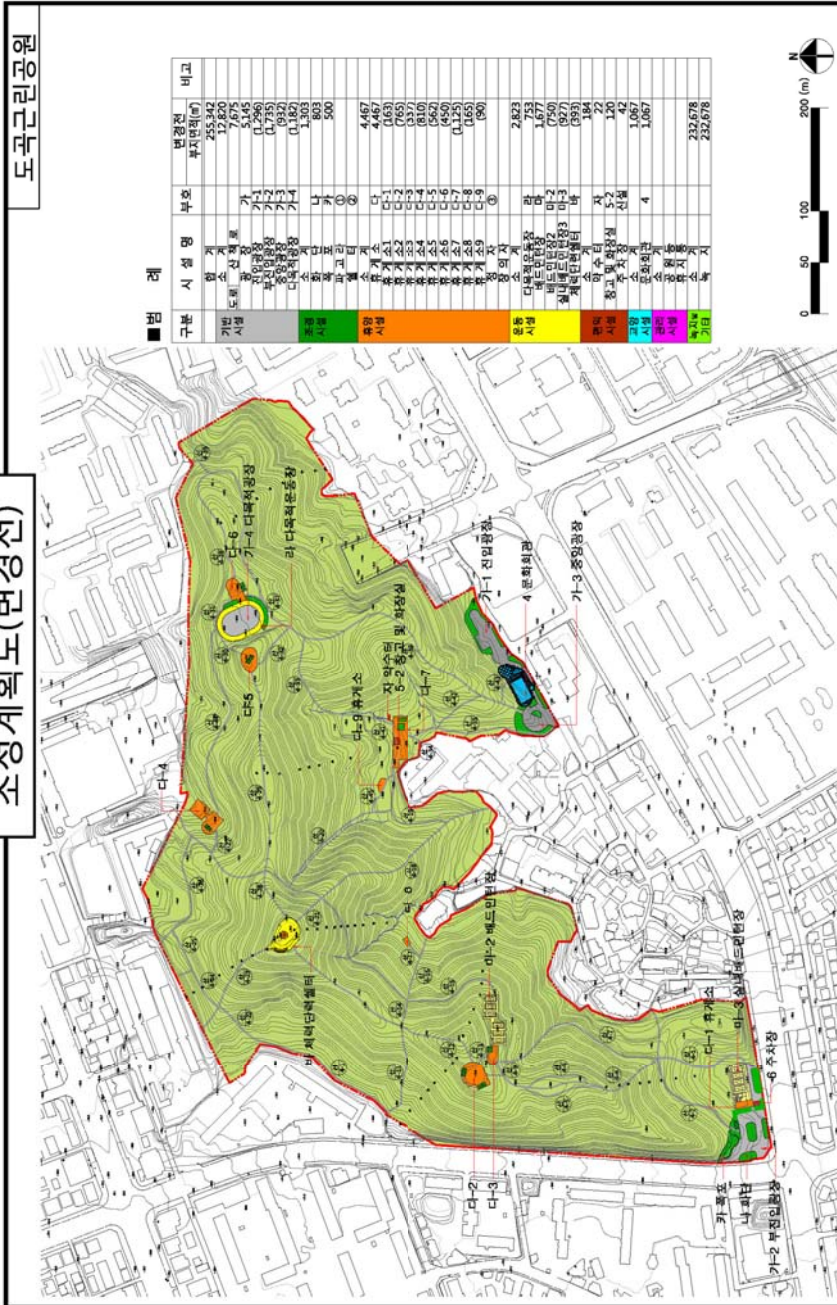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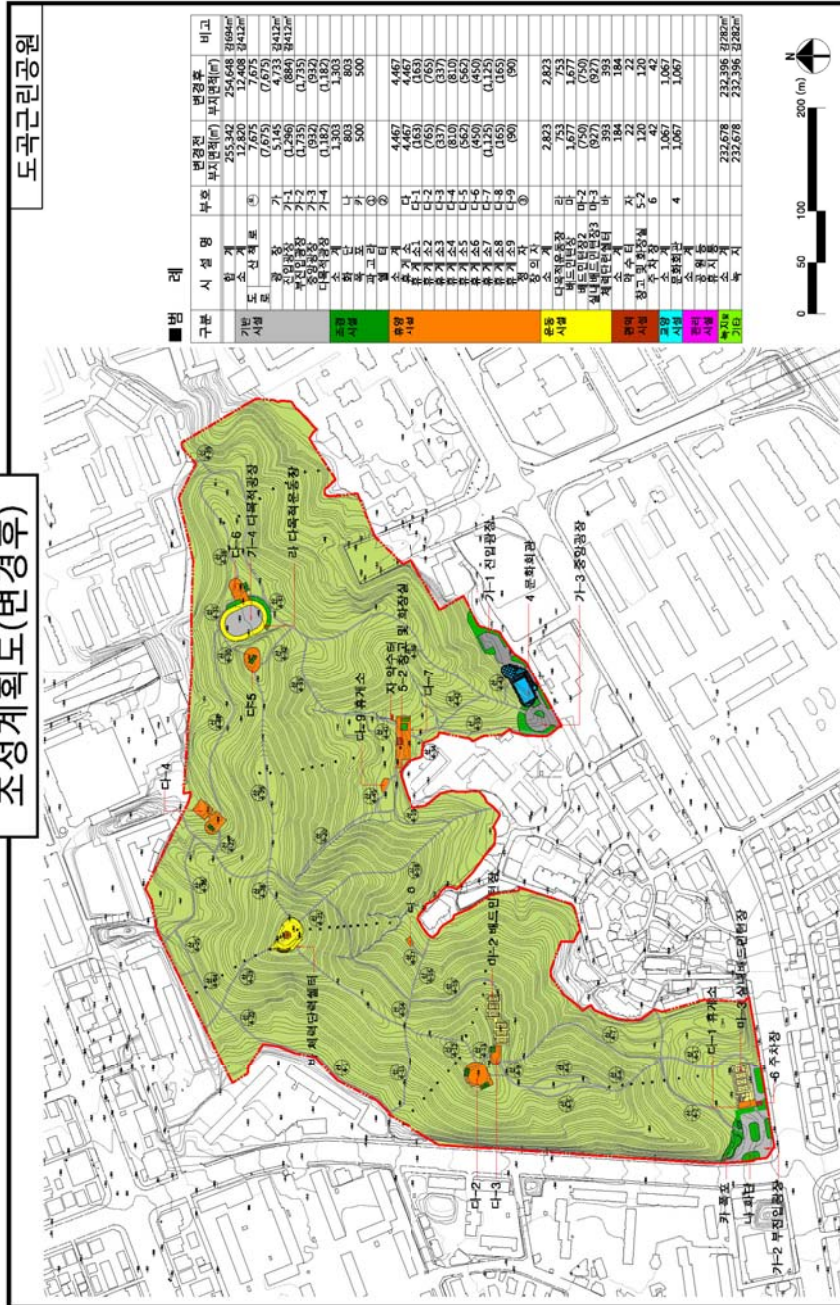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032	7,675				
당초	산책로		4-1	1.5	105	158	산책로	농구장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2	1.5	126	189	산책로	부진입광장2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3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22	
당초	산책로		4-4	1.5	282	42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2	
당초	산책로		4-5	1.5	105	157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6	1.5	97	145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7	1.5	210	315	산책로	산책로3	휴게소3	
당초	산책로		4-9	1.5	30	45	산책로	산책로4	휴게소3	
당초	산책로		4-11	1.5	97	145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2	
당초	산책로		4-12	1.5	247	370	산책로	휴게소2	체력단련장	
당초	산책로		4-13	1.5	15	22	산책로	휴게소2	휴게소3	
당초	산책로		4-14	1.5	37	55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15	1.5	444	666	산책로	배드민턴장2	산책로26	
당초	산책로		4-16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15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4-17	1.5	15	22	산책로	산책로16	휴게소8	
당초	산책로		4-18	1.5	225	33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19	1.5	120	180	산책로	산책로18	5-2참고 및 화장실	
당초	산책로		4-20	1.5	288	432	산책로	배드민턴장3	자-약수터	
당초	산책로		4-21	1.5	37	55	산책로	산책로15	체력단련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4-22	1.5	60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3	
당초	산책로		4-23	1.5	127	190	산책로	부지경계	체력단련장	
당초	산책로		4-24	1.5	60	9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5	
당초	산책로		4-25	1.5	195	292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4-26	1.5	15	2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5	
당초	산책로		4-27	1.5	30	45	산책로	휴게소4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28	1.5	67	1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29	1.5	187	280	산책로	산책로15	휴게소5	
당초	산책로		4-30	1.5	37	55	산책로	휴게소5	산책로31	
당초	산책로		4-31	2	52	104	산책로	산책로30	휴게소6	
당초	산책로		4-32	1.5	45	67	산책로	휴게소5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4-33	1.5	112	168	산책로	배드민턴장4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4-34	1.5	15	22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7	
당초	산책로		4-35	1.5	190	285	산책로	산책로34	중앙광장	
당초	산책로		4-36	1.5	344	516	산책로	중앙광장	산책로37	
당초	산책로		4-3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36	휴게소6	
당초	산책로		4-38	1.5	330	495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6	
당초	산책로		4-39	1.5	7	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8	
당초	산책로		4-41	1.5	20	30	산책로	휴게소7	배드민턴장4	
당초	산책로		4-42	1.5	42	63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35	
당초	산책로		4-43	1.5	34	51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4-44	2	168	336	산책로	산책로31	휴게소4	
당초	산책로		4-45	1.5	50	75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0	

조성계획도(변경전)



조성계획도(변경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7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융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8.2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2.10.24.) 및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3.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일대 (구)서울융합차고지에 대하여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생활권 중심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	3,883,394.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 (2005. 2. 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83,394.0	-	3,883,394.0	100.0
일반주거지역	2,741,126.9	감) 14,635.0	2,726,491.9	70.2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451,207.2	—	451,207.2	11.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1,640.2	감) 20,458.5	171,181.7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3,092.6	증) 5,823.5	1,728,916.1	44.5
	제3종일반주거지역	375,186.9	—	375,186.9	9.7
	준주거지역	—	증) 14,635.0	14,635.0	0.4
	일반상업지역	108,338.6	—	108,338.6	2.8
	자연녹지지역	1,033,928.5	—	1,033,928.5	26.6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고덕동 210-1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5,823.5 14,635.0	택지(14,635.0㎡)는 상일동역과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생활권 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인접도로(5,823.5㎡)는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7	25	보조간선 도로	465	대로1-1	대로3-196	일반 도로		1982.4.29	
변경	대로	3	157	25-31	보조간선 도로	465 (79)	대로1-1	대로3-196	일반 도로		—	

※ ()안은 변경구간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57	대로3-157	일부구간 노선확폭 - 폭원 : 25m → 25~31m	상일동길 확폭 및 완화차로 설치

나) 주차장 : 변경없음

다) 자동차 정류장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덕동 210-1	14,967.5	감) 14,967.5	-	1982.4.29	

※ 최초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면적 15,900.9㎡→14,967.5㎡(감 967.5㎡) - 서울시고시 2006-63 (2006. 2. 23)

■ 자동차정류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자동차정류장	시설 폐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구모 결정(변경)조서

■ 최대획지(대지)규모 및 최소획지(대지)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최대획지(대지)규모	최소획지(대지)규모	비고
폐지	PU2	P10	14,967.5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신설	-	M1	14,635.0	-	-	준주거지역

2)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연립주택지 : 변경없음

■ 단독주택지 : 변경없음

■ 공공용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변경사유
				위치	면적(㎡)	
기정	P1-1 ~ P9-1	P1 ~ P9	변 경 없 음			
폐지	P10-1	P10	14,967.5	고덕동 210-1	14,967.5	•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따라 공공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
기정	P11-1 ~ P23-1	P11 ~ P23	변 경 없 음			

■ 복합용지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변경사유
				위치	면적(㎡)	
신설	M1	M1	14,635.0	고덕동 210-1	14,635.0	• 폐지되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하여 계획 적인 복합개발 유도 • 폐지되는 가구 P10에서 주변도로 확폭에 따 라 획지면적 변경

■ 상업지역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지정용도(신설)

구분			도면표시	용도	비고
신설	복합용지	공공청사	A	• 공공업무시설 등	• 적용구역 : M1지역
		문화·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주) 지정용도 적용대상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설

■ 허용용도 : 변경없음

■ 불허용도(변경)

구분	도면표시	용도	비고
기정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변 경 없 음	
신설	복합용지	전층 F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청소년 유흥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장례식장 • 적용구역 - M1지역

■ 권장용도 : 변경없음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계획

구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RA1, RA2, RA3, RD1, RD2, RD3, RD4, PU1, PU2, PU3, CO1		변 경 없 음	
신설	M1	준주거지역	60% 이하	• 적용구역 : 복합용지

나) 용적률 계획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정	RA1, RA2, RA3, RD1, RD2, RD3, RD4, PU1, PU2, PU3, CO1		변 경 없 음		
신설	M1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00%이하, 기본용적률 310%이하	허용용적률 38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 적용구역 : 복합용지 • 상한용적률은 공공임대주택 제공량에 따라 적용

다)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RA1, RA2, RA3, RD1, RD2, RD3, RD4, PU1, PU2, PU3, CO1		변 경 없 음	
신설	M1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120m 이하 ^{주1)}	• 적용구역 : 복합용지

주 : 1) M1의 높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라)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기정	RA1, RA2, RA3, RD1, RD2, RD3, RD4, PU1, PU2, PU3, CO1		변 경 없 음	
신설	M1	•적용가구 : M1 •적용지역 : 준주거지역 •적용용지 : 복합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00
				기본 310
				허용 380
			상한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주1)량에 따라 적용)
			높이	최고높이 120m 이하

주 : 1)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족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연립주택용지내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건축물 관련 계획사항 : 변경없음
- 복합용지 : 신설

구분	계획내용	
	제어기준	위치
건축한계선	• 보행공간, 휴식공간, 가로형 공원 등 조성 - 폭원 3m, 5m	• 대로변 : 3m • 북측 이면도로변 : 5m
침상형 공지조성	•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접근성 등이 용이하도록 전면부에 침상형 공지를 조성	• 지하층에 문화체육시설 설치시 전면부
건축물 형태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와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분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형태, 외장 등을 분절하여 계획	• 5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여 시각통로 확보	• 6층 이상 고층부
	•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 전체

- 연립주택용지내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건축물 관련 계획사항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복합용지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어기준	위치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 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복합용지	규제
		북측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항시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개공지	• 주요 교차로 및 보행결절점에 조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일동역과 북측 주거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복합용지	규제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복합용지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어기준	위치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고덕동길, 상일동길변)	• 복합용지	규제

나)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복합용지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어기준	위치	
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장	• 외벽재료는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복합용지	권장
	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환경친화 요소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상의 사항 준용 권장	복합용지	권장

- 4) 공동주택용지의 단계별 계획(정비지구 계획) 결정 : 변경없음
 5) 단독주택용지 건설가능 세대수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단독주택용지내 공동주택(아파트)건설시 계획사항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구역면적 (㎡)	해당필지	지정사유
기정	특별계획구역 1~26	변 경 없 음			
신설	특별계획구역 27	고덕동 210-1 (구)서울승합차고지	15,900.9	고덕동 210-1	•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복합개발 유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서울승합차고지를 특별계획구역27로 신규지정

■ 특별계획구역 현황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구역면적(㎡)	택지면적	비 고
기정	우선정비지구 유지관리지구	특별계획구역 1~26	변 경 없 음			
신설	우선정비지구	특별계획구역 27	(구)서울승합차고지	15,900.9	14,635.0	•도로 1,265.9㎡

2)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1~26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7((구)서울승합차고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계획		• 도로 확장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 도	• 지정용도 ^{주1)}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미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청소년 유흥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장례식장									
	용적률	<table><tr><td>기준</td><td>200% 이하</td></tr><tr><td>기본</td><td>310% 이하</td></tr><tr><td>허용</td><td>380% 이하</td></tr><tr><td>상한</td><td>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주2)}량에 따라 적용)</td></tr></table>		기준	200% 이하	기본	310% 이하	허용	380% 이하	상한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2)} 량에 따라 적용)
	기준	200% 이하									
	기본	310% 이하									
	허용	380% 이하									
	상한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2)} 량에 따라 적용)									
	건폐율	• 60% 이하									
높 이	• 120m 이하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계획	대로변 : 3m, 북측 이면도로변 : 5m									
	침상형 공지조성	•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접근성 등이 용이하도록 전면 부에 침상형 공지를 조성 • 위치 - 지하층에 문화체육시설 설치시 전면부									
	건축물 형태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와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분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 도록 형태, 외장 등을 분절하여 계획(위치 : 5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여 시각통로 확보(위치 : 6층 이상 고층부) •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위치 : 전체)									
건축기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대지내 공지계획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 공에 향시 개방토록 조성 북측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 도록 향시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개공지	• 주요 교차로 및 보행결절점에 조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일동역과 북측 주거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 통로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고덕동길, 상일동길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장	• 외벽재료는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광고물 설치	•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 단위계획운영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환경친화 요소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상의 사항 준 용 권장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름									

주 : 1) 지정용도 적용대상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에 따른 시설

2)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족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마. 인센티브 결정(변경)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가) 단독주택용지 및 기타용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나) 상업용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다) 복합용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신설

■ 기본용적률 :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이행시 제공

■ 계획유도항목 등 계획기준

항 목	세 분	세부계획 기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본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3				
	섬지형, 침상형 공지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본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	• 지하는 지하철, 지하 광장보도와 연계시 부여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본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을제외한건축면적)×1 이내	• 20% 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계수 적용 • 특정층과 지정권장을 구분하여 계수 적용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본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바닥 면적)×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도시 경관 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본용적률×0.5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물을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등 형태	기본용적률×0.2	•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본용적률×0.2				
	공동주차장	기본용적률×0.2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본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 녹화	기본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본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 서 기본용적률×0.05 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본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본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침투시설 설계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 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본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률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본용적률 × 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본용적률 × 0.05	

※ 자연지반 보존 등 환경친화 항목의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항목 인센티브의 2/10 이상 계획한다.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②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명 (구역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구)서울승합차고지 (특27)	강동구 고덕동 210-1	-	15,900.9	15,900.9	

2.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900.9	-	15,900.9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900.9	감) 15,90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265.9	1,265.9	8.0
	준주거지역	-	증) 14,635.0	14,635.0	92.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고덕동 210-1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1,265.9 14,635.0	• 택지(14,635.0㎡)는 상일동역과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생활권 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도로(1,265.9㎡)는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함.

3.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7	25	보조간선 도로	465	대로1-1	대로3-196	일반도로		1982.4.29	
변경	대로	3	157	25-31	보조간선 도로	465(79)	대로1-1	대로3-196	일반도로		-	

※ ()안은 변경구간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57	대로3-157	• 일부구간 (연장 : 79m)노선확폭 - 폭원 : 25m → 25~31m	• 상일동길 확장 및 완화차로 설치

2) 자동차 정류장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덕동 210-1	14,967.5	감) 14,967.5	-	1982.4.29	

※ 최초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면적 15,900.9㎡→14,967.5㎡(감 967.5㎡) - 서울시고시 2006-63 (2006. 2. 23)

■ 자동차정류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자동차정류장	시설 폐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M1	강동구 고덕동 210-1	14,635.0	• 특별계획구역27 면적 15,900.9㎡중 주변도로 확폭에 따라 1,265.9㎡ 제외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1)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위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신설	A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등	좌동	
		문화·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주) 지정용도 적용대상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에 따른 시설

2)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신설	F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청소년 유흥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장례식장	좌동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세부 개발계획	비고
신설	M1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동	

2) 용적률 계획

구분	도면표시	위치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신설	M1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00% 이하	200%	
			기본용적률	310% 이하	310%	
			허용용적률	380% 이하	380%	계획유도항목 인센티브 적용
			상한용적률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1)} 량에 따라 적용)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 용적률 : 완화되는 용적률의 1/2

주 : 1)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족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	위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신설	M1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 120m 이하	좌동	•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 적용

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보행공간, 휴식공간, 가로형 공원 등 조성 - 위치 - 대로변 : 3m, 북측 이면도로변 : 5m	좌동	
침상형 공지조성	-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접근성 등이 용이하도록 전면부에 침상형 공지를 조성 - 위치 - 지하층에 문화체육시설 설치시 전면부	좌동	
건축물 형태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와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분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형태, 외장 등을 분절하여 계획 - 위치 - 5층 이하 저층부	좌동	
	- 고층부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여 시각통로 확보 - 위치 - 6층 이상 고층부	좌동	
	-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 위치 - 전체	좌동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어기준	위치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 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복합용 지 규제
		북측이면도 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 도록 항시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개공지	• 주요 교차로 및 보행결절점에 조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일동역과 북측 주거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 로 설치	복합용 지	규제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고덕동길, 상일동길변)	좌동	규제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장	• 외벽재료는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좌동	권장
	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지구 단위계획운영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좌동	
환경친화 요소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상의 사항 준용 권장	좌동	권장

라.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신설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공공업무시설 등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신설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 : 1)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
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단,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후 확정한다.

7.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27((구)서울승합차고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계획		• 도로 확장			
건축물 관 련 계	용 도	• 지정용도 ^{주1)}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청소년 유흥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장례식장			
	용적률	기준	200% 이하		
		기본	310% 이하		
		허용	380% 이하		
		상한	500% 이하(공공임대주택 ^{주2)} 제공 용적률 : 완화된 용적률의 1/2)		
	건폐율	• 60% 이하			
	높 이	• 12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계획	대로변 : 3m, 북측 이면도로변 : 5m		
		침상형 공지조성	•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접근성 등이 용이하도록 전면부에 침상형 공지를 조성 • 위치 - 지하층에 문화체육시설 설치시 전면부		
		건축물 형태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와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분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형태, 외장 등을 분절하여 계획(위치 : 5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여 시각통로 확보(위치 : 6층 이상 고층부) •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위치 : 전체)		
건축기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대지내 공지계획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상 개방하도록 조성	
			북측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항상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개공지		• 주요 교차로 및 보행결절점에 조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일동역과 북측 주거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고덕동길, 상일동길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장	• 외벽재료는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광고물 설치	•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환경친화 요소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상의 사항 준용 권장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3), 4)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공공업무시설 등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문화체육 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 : 1) 지정용도 적용대상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에 따른 시설

- 2)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족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3)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 4)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단,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후 확정한다.

8. 인센티브 결정

■ 기본용적률 :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이행시 제공

■ 계획유도항목 등 계획기준

항 목	세 분	세부계획 기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본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3															
	쌈지형, 침상형 공지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본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	• 지하는 지하철, 지하 광장·보도와 연계시 부여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본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제 외한건축면적)×1 이내	• 20% 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계수 적용 • 특정층과 지정·권장을 구분하여 계수 적용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본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바닥면적) ×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도시 경관 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본용적률×0.5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물을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등 형태	기본용적률×0.2	•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본용적률×0.2															
	공동주차장	기본용적률×0.2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본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 녹화	기본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본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본용적률×0.05 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본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본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침투시설 설계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 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본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table><tr><td>구분</td><td>에너지절감률</td><td>에너지성능지표</td><td>친환경건축물인증</td><td>완화기준</td></tr><tr><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d>기본용적률 × 0.08</td></tr><tr><td>2등급</td><td>23.5~33.5% 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본용적률 × 0.05</td></tr></table>	구분	에너지절감률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본용적률 × 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본용적률 × 0.05
구분	에너지절감률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본용적률 × 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본용적률 × 0.05													

※ 자연지반 보존 등 환경친화 항목의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항목 인센티브의 2/10 이상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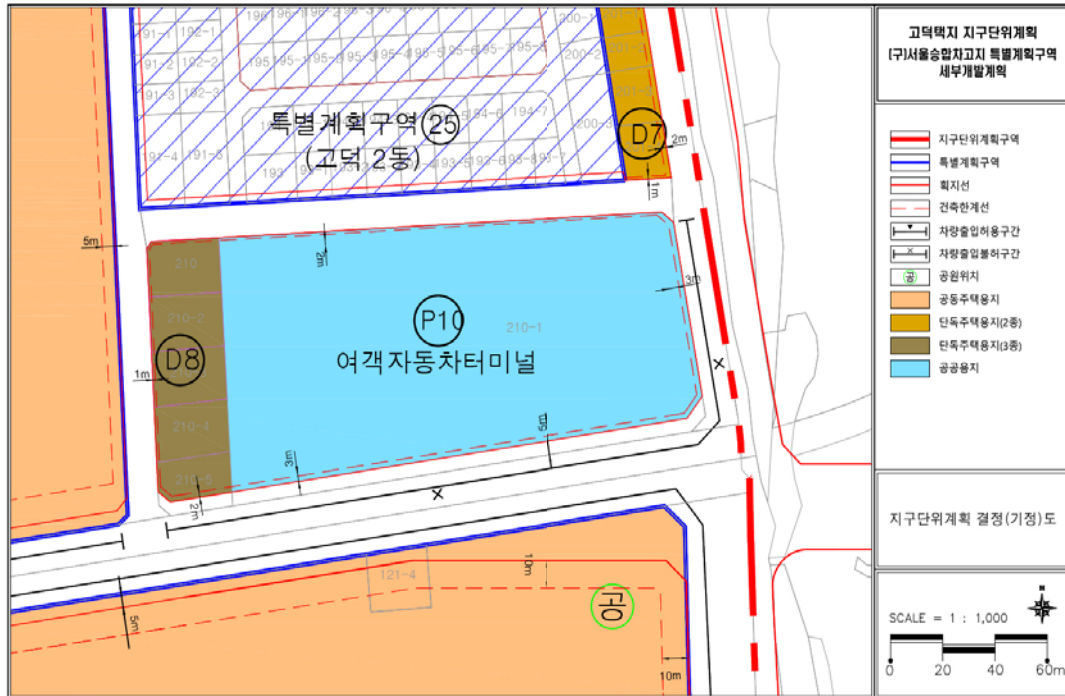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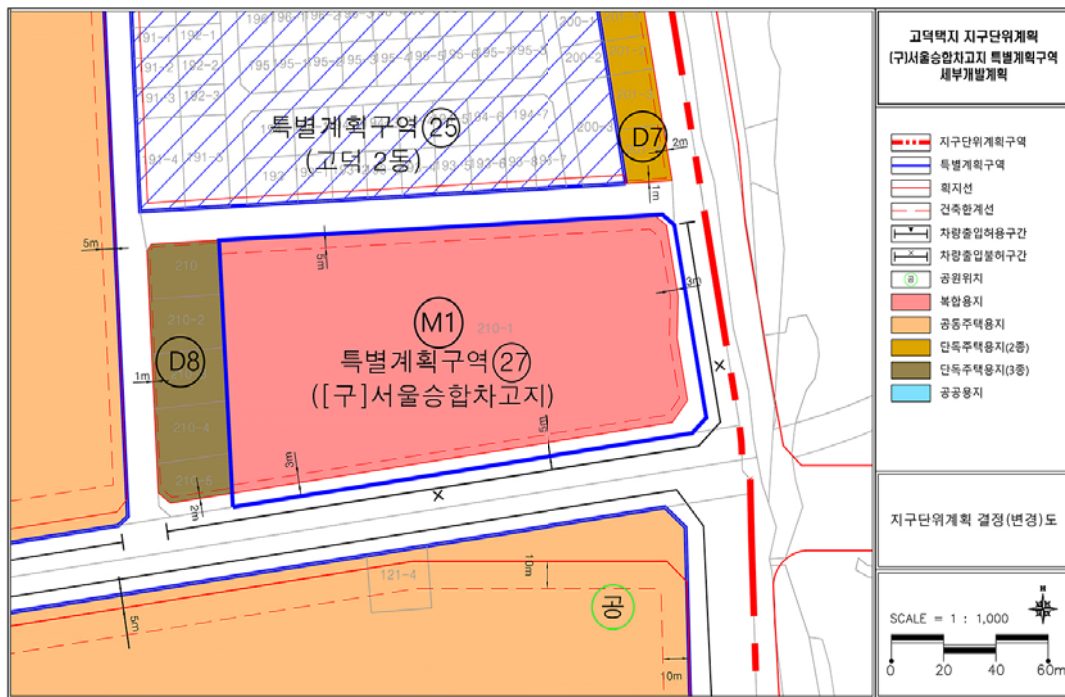
IV.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02-2133-8437),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3-602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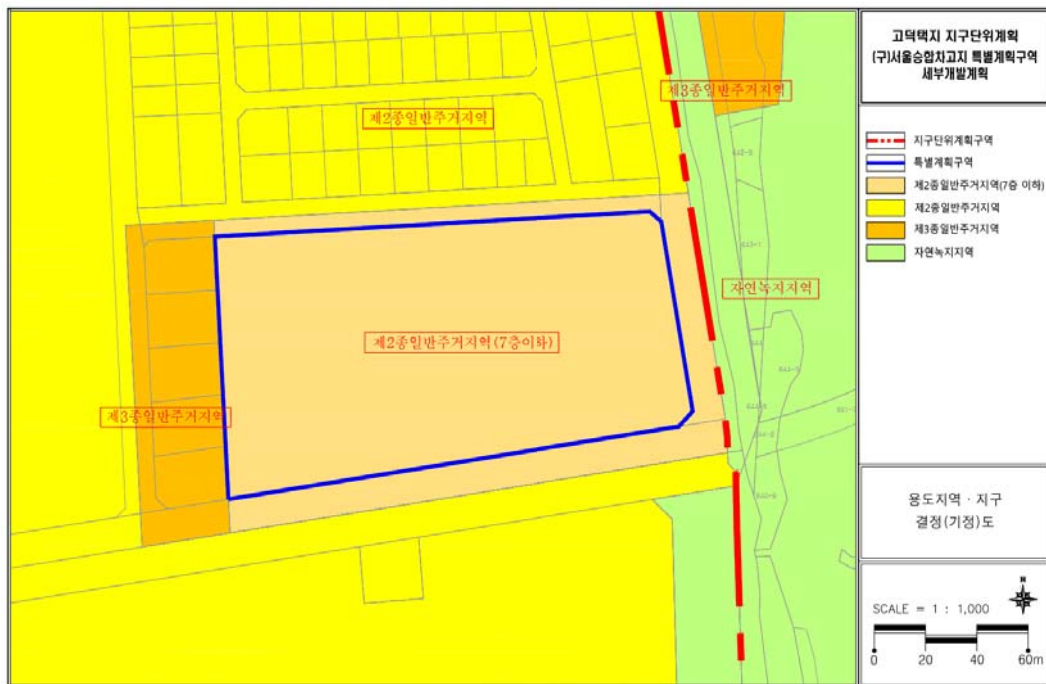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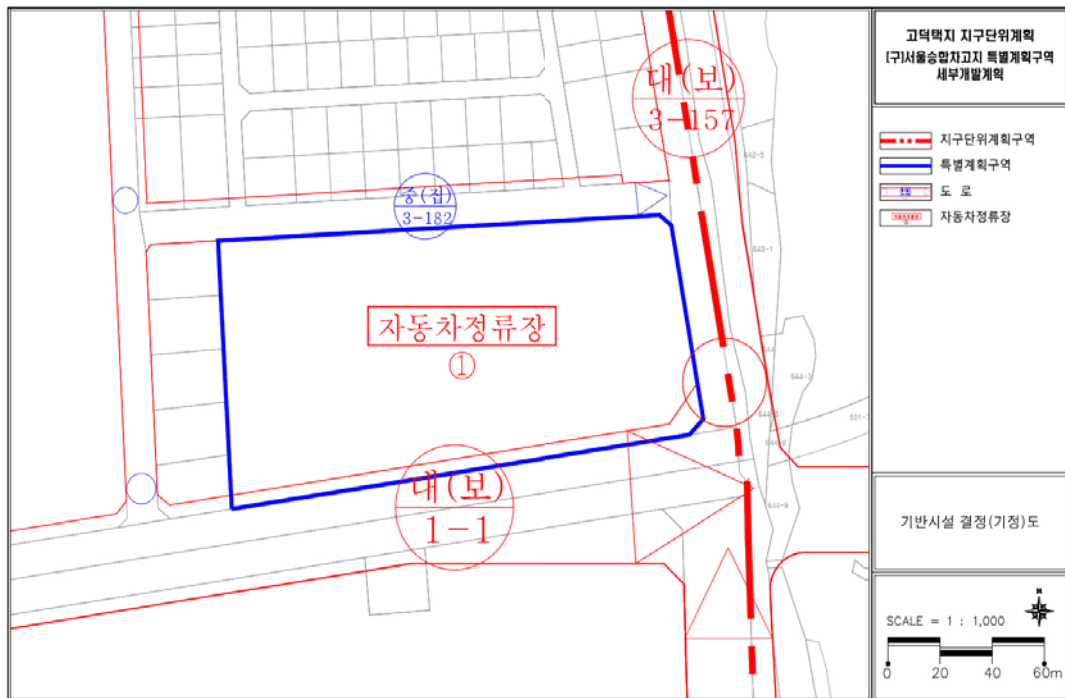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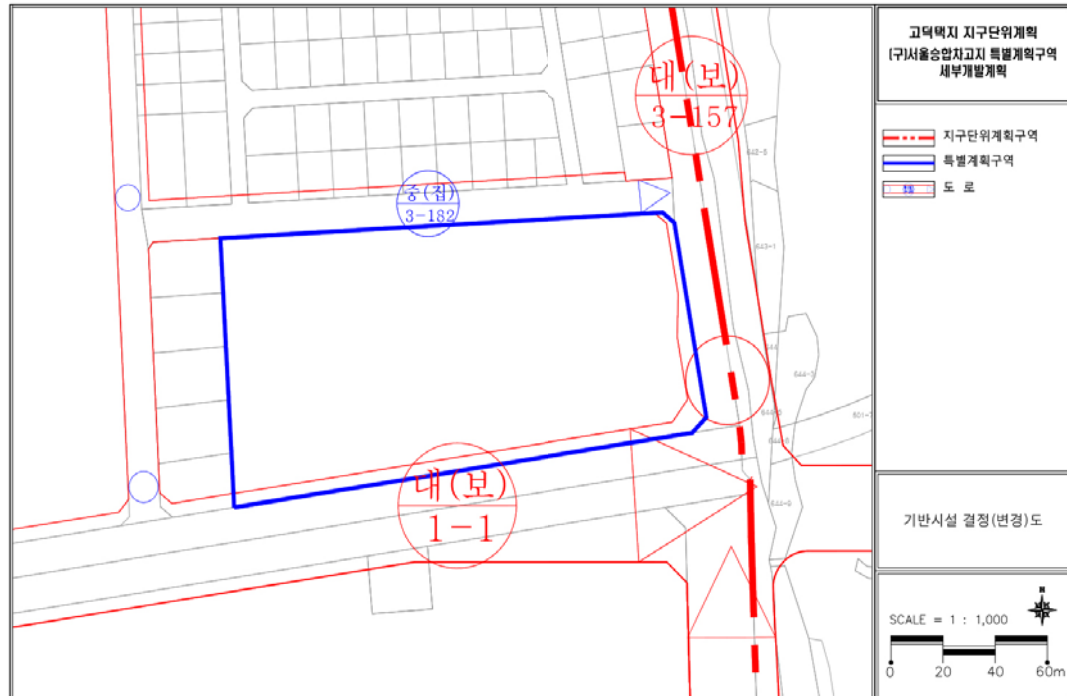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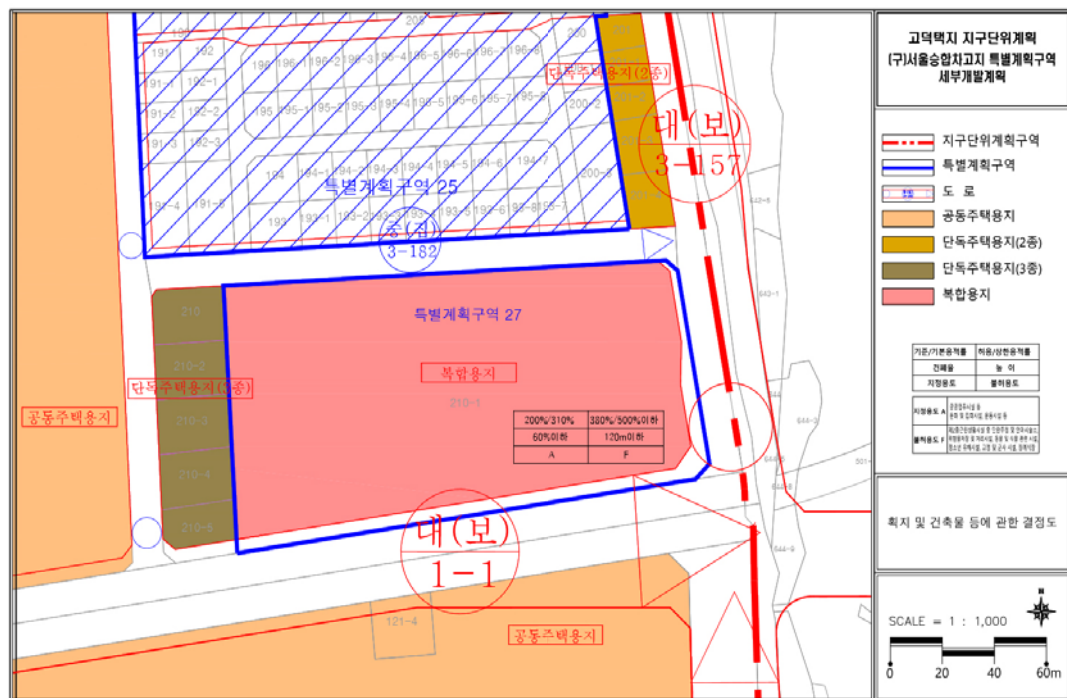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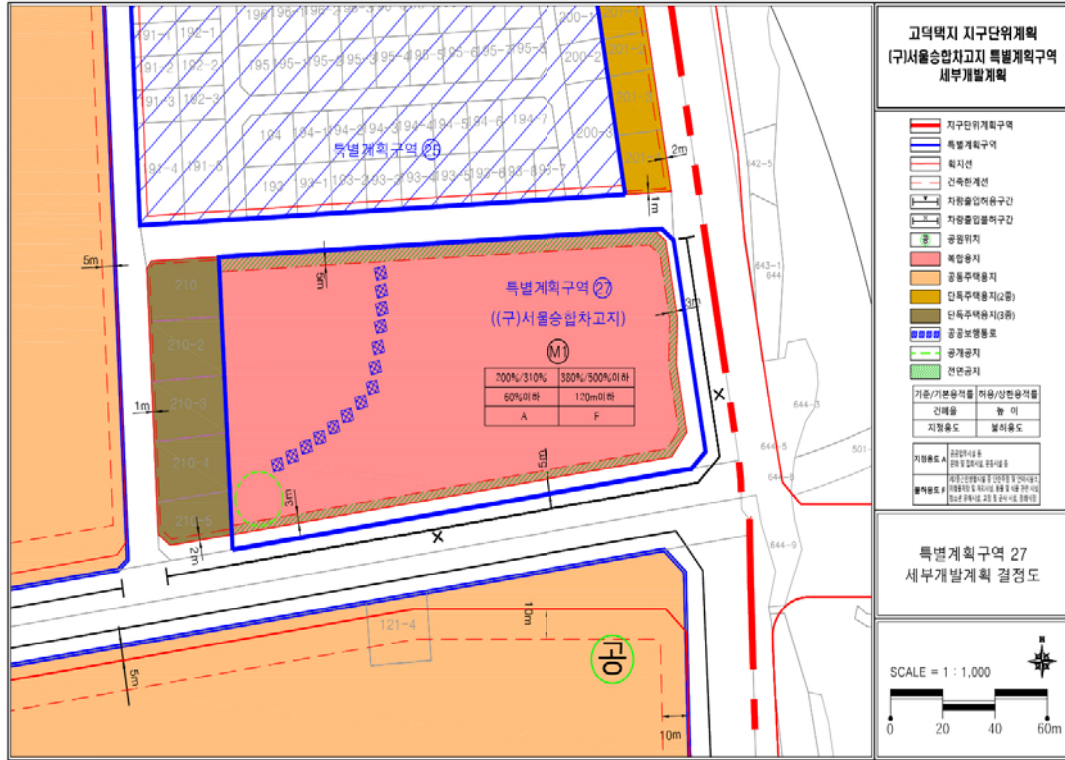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27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9호(2015. 10.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7호(2017. 2.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일삼거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변동된 저촉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7-4 ~ 강일동 601-4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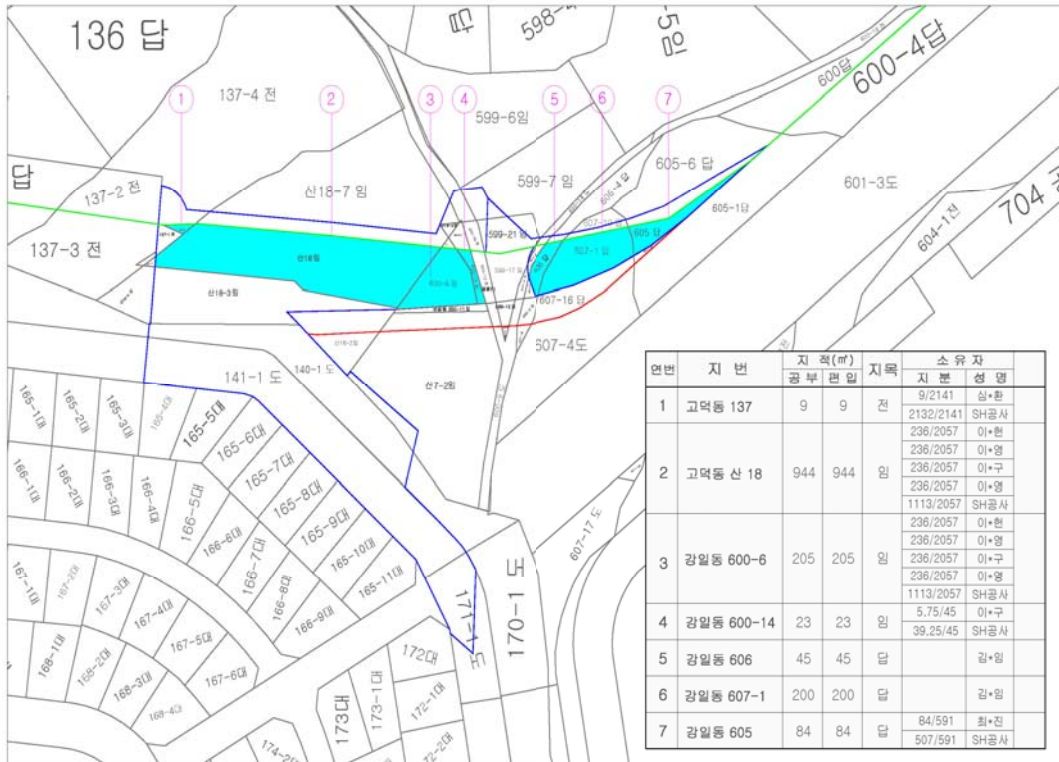
-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폭 25 → 38m, 연장 300m
-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따로 붙임
- 아.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변경없음)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 차. 시민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도로계획과(☎02-2133-8088) 및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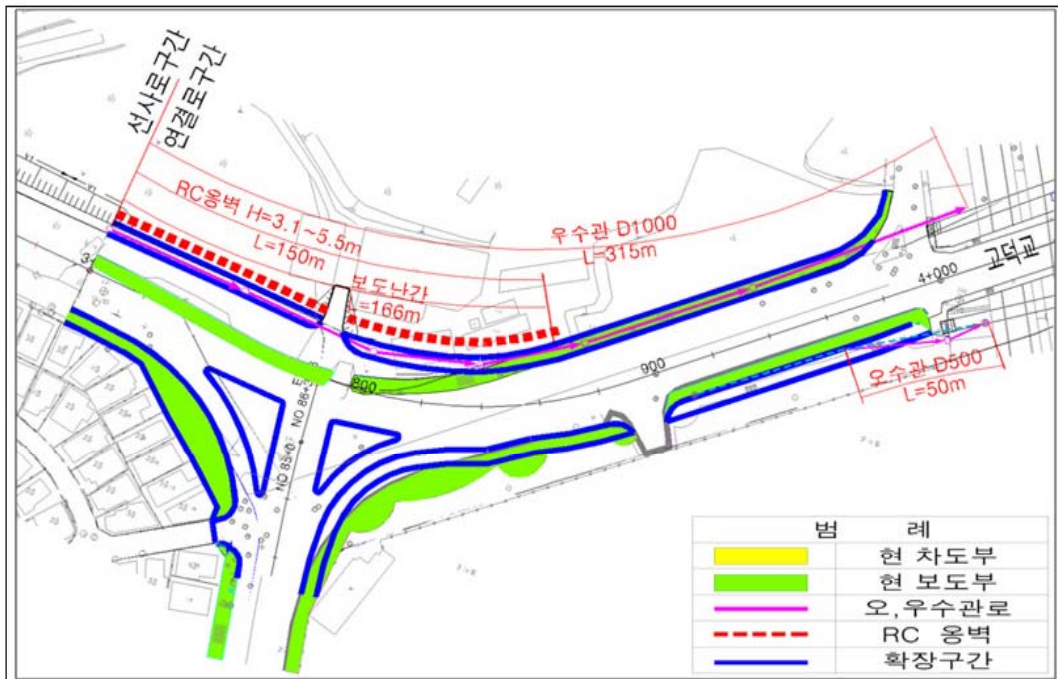
- ☐ 사업명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구분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고덕동 산18	당초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6m×5m	24		이*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203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				
								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 호자촌 60*--*01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이*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7-2 은마아파트 3*동 10**호				
삭제													
2	강일동 607-1	당초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10m×20m	107		김*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7, *0*동 *0*호 (중동, 어울림타운하우스)				
							삭제						
3	강일동 605	추가	지장물	감나무	R10cm × H5m	1주		최*진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2*동 *0*호 (목동, 신내두산아파트)				
							삭제						

용 지 도



위 치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9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09.08.) 동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동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1호(2017.01.26.)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한 “동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제92조포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 9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 명 칭 : 동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문화시설		소공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9,042.50㎡	대지면적	727.60㎡
건축면적	4,242.17㎡	녹지면적	623.31㎡
연 면 적	9,180.18㎡ (용적률산정용:7,309.73㎡)	시설면적	104.29㎡
건 폐 율	46.91%	시 설 율	14.33%
용 적 률	80.84%	건 폐 율	-
규 모	43개동(지하2층, 지상4층 / 기존5층 2개동 포함)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1·2종근린생활시설		
최고높이	동별 건축물 현황(관련도면) 참조		

- 건축허가 의제 동별 건축물 현황

연번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비고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	A2	7-5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9	52.56	52.56	
2	A3	7-50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2	41.37	41.37	
3	A4	7-7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1	52.88	52.88	
4	A5	7-8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8	45.81	45.81	
5	B1	7-10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68	31.12	31.12	
6	B2	7-12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91	34.84	34.84	
7	B3	7-13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88	30.37	30.37	
8	B6	7-15(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0	40.09	40.09	
9	B7	7-17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2	39.46	39.46	
10	B8	7-20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6	50.81	50.81	
11	B9	7-11,18,19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5	132.51	132.51	
12	B10	4	제2종근린생활시설 (급수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	3.30	11.41	11.41	
13	C	7-22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5층	17.36	138.19	811.48	
14	D	6, 6-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5층	25.70	839.83	2,114.18	
15	E1E2	7-33, 34-2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62	193.08	379.12	
16	E3	3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55	103.30	196.67	
17	E4E5	36-2, 37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 지상3층	12.35	271.83	708.20	
18	E6	7-3,7-4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철골구조	지상1층	4.56	148.64	148.64	
19	F1	32-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21	68.90	99.02	
20	F2	30-1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61	79.28	123.26	
21	F3	3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96	56.70	93.83	
22	G1	27,2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7.01	124.25	221.50	
23	G2	22-2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47	90.99	221.52	
24	G3	22-3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55	78.32	145.69	
25	G4	25(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철골구조	지상3층	11.66	59.91	172.10	
26	G5	25(나,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6.75	114.37	160.60	
27	G6	23-1,23-2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3.67	69.95	69.95	
28	G7	20-1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4.96	79.88	79.88	

연번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비고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29	H1	17-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골조	지상3층	10.90	37.69	113.07	
30	H2	18-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7.55	51.44	90.83	
31	H3	19-7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	5.25	46.59	46.59	
32	H4	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13.10	72.40	224.17	
33	I1	40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70	74.96	95.88	
34	I2	4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하1층/ 지상3층	9.80	60.50	181.14	
35	I3	43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5.50	62.29	62.29	
36	I4	44(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55	56.08	91.75	
37	I5	44(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0	40.03	40.03	
38	I6	46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8.50	86.03	122.67	
39	I7	49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10	55.98	74.42	
40	I8	5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31	59.20	100.41	
41	J1	35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5.73	90.02	90.02	
42	J2	35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90	63.84	63.84	
43	K	58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의원, 미용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 사진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3층	11.50	304.47	1,474.2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7.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무교별관 4층)또는 도시공간개선단(신청사 5층)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사업과(2133-7219) 또는 도시공간개선단(2133-76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편입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10,218.70	9,042.50	727.60	452.20	박물관마을 편입면적 합계 : 9,770.10					
1	신문로2가	1-402	대	253.80	204.20		49.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	신문로2가	2-45	대	16.50	16.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	신문로2가	2-46	대	20.80	20.80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신문로2가	2-47	대	22.10	22.10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	신문로2가	3-1	도	13.20	4.40		8.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6	신문로2가	4	대	117.40	72.20		45.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	신문로2가	4-1	도	3.30	2.10		1.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	신문로2가	4-3	대	143.80	92.00		51.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9	신문로2가	6	대	494.50	281.40		213.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10	신문로2가	6-3	대	842.00	780.70		61.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11	신문로2가	7-1	대	3.30	3.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2	신문로2가	7-3	대	79.30	79.30			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신문로2가	7-4	대	88.20	88.20			이**	서울 서초구 바우포로1길 *,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황**	서울 은평구 진흥로 267, 1**-6**				
14	신문로2가	7-5	대	109.00	109.00			신**	서울 종로구 승월길 **-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5	신문로2가	7-7	대	111.50	111.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6	신문로2가	7-8	대	104.80	104.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7	신문로2가	7-10	대	52.90	52.90			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8	신문로2가	7-11	대	69.40	69.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9	신문로2가	7-12	대	66.10	66.10			왕**	서울 종로구 승월길 **-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0	신문로2가	7-13	대	52.90	52.90			유**	충남 당진시 방월로 1**,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1	신문로2가	7-14	대	52.90	52.90			연**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2	신문로2가	7-15	대	135.50	135.50			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8**, 9**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3	신문로2가	7-17	대	56.20	56.20			김**	서울 종로구 승월길 **-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4	신문로2가	7-18	대	59.50	59.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5	신문로2가	7-19	대	56.20	56.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6	신문로2가	7-20	대	82.60	82.60			김나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자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신문로2가	7-21	도	479.30	475.30		4.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8	신문로2가	7-22	대	261.20	261.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9	신문로2가	7-23	대	178.50	178.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0	신문로2가	7-24	대	208.30	208.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1	신문로2가	7-29	대	30.10	30.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2	신문로2가	7-31	대	1.30	1.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3	신문로2가	7-33	대	89.30	89.30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4	신문로2가	7-35	대	34.00	22.00		12.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5	신문로2가	7-36	대	2.60	1.00		1.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6	신문로2가	7-43	도	46.30	46.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7	신문로2가	7-50	대	90.20	90.20			김**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 *동 36**호					
38	신문로2가	8-1	대	34.40	34.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9	신문로2가	8-4	대	2.30	2.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신문로2가	8-7	도	5.10	5.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1	신문로2가	17-1	대	64.10	64.10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주태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2	신문로2가	18-1	대	56.50	56.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3	신문로2가	19-1	대	52.90	52.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4	신문로2가	19-4	도	9.20	9.20			국(국토교통부)					
45	신문로2가	19-5	대	24.80	24.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6	신문로2가	19-7	대	53.20	53.20			김**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 1**동 6**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7	신문로2가	19-13	대	6.30	6.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8	신문로2가	20-1	대	152.10	152.10			재단법인학원 밀알장학재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406호				
49	신문로2가	22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길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0	신문로2가	22-2	도	84.30	84.30			윤**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 1**동 7**호	주태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신문로2가	22-3	대	132.20	132.20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길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윤**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 1**동 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2	신문로2가	22-4	도	0.5	0.5			국(국토교통부)					
53	신문로2가	22-7	대	2.60	2.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54	신문로2가	22-8	대	3.50	3.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55	신문로2가	23-1	대	40.70	40.70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 1**동 9**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6	신문로2가	23-2	대	45.30	45.30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 1**동 9**호				
57	신문로2가	25	대	261.40	261.40			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8	신문로2가	27	대	115.70	115.70			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3** 발렌시아 해시엔 다랜취코트 20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9	신문로2가	28	대	56.20	56.20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60	신문로2가	29	대	56.20	56.20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편입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1	신문로2가	30-1	대	95.20	95.20			곽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2	신문로2가	30-2	대	10.60	10.60			곽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3	신문로2가	31	대	69.40	69.40			구**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5**동 10**호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마포구 창전로2길 **, 1**-19**				
64	신문로2가	32-1	대	109.10	109.10			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1**-1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강남구 인주로29길 **, 5**-3**				
								전**	서울 은평구 진관2로 77, 2**동 13**호				
								곽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5	신문로2가	32-2	대	26.40	26.40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6	신문로2가	33	대	158.30	158.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	서울 성동구 뚝레15길 *, 1**동 20**호				
67	신문로2가	34	대	220.80	220.80			정**	서울 성동구 뚝레15길 *, 1**동 2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정**	서울 성동구 뚝레15길 *, 1**동 20**호				
								정**	서울 성동구 뚝레15길 *, 1**동 20**호				
								정**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8	신문로2가	34-1	도	4.50	4.50			국(국토교통부)						
69	신문로2가	34-2	대	132.20	132.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0	신문로2가	34-6	대	8.00	8.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1	신문로2가	34-7	대	2.70	2.7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2	신문로2가	35-2	대	3.30	3.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3	신문로2가	36-1	대	15.90	15.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4	신문로2가	36-2	대	87.90	87.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5	신문로2가	37	대	226.20	226.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6	신문로2가	37-1	도	370.30	370.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종로구						
77	신문로2가	37-2	대	1.50	1.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8	신문로2가	37-3	대	3.40	3.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9	신문로2가	37-5	도	4.30	4.30			서울특별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0	신문로2가	37-6	도	41.10	4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1**, 5동 15**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1	신문로2가	37-7	도	268.10	268.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82	신문로2가	40	대	105.80	105.80			정**	서울 구로구 공원로 **, 2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3	신문로2가	41	대	109.10	109.10			김**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84	신문로2가	43	대	82.60	82.60			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8, 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8, 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5	신문로2가	44	대	135.50	135.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6	신문로2가	46	대	158.70	158.7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7	신문로2가	49	대	92.60	92.60			양**	29** 올리버 엘엔 아이오아시티 아이에이522** 미합중국				
88	신문로2가	52	대	69.40	69.40			서**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정**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89	신문로2가	54	대	89.30	89.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1	신문로2가	55-2	대	17.50		17.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92	신문로2가	59-2	도	3.30	3.30			국(국토교통부)						
93	신문로2가	60-2	도	2.30	2.30			국(국토교통부)						
94	신문로2가	92-11	도	75.00	17.90	57.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95	신문로2가	35	대	859.80	594.60	265.20		국 (경찰청)						
96	신문로2가	53	대	136.50	52.20	84.30		국 (경찰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관설통	
97	신문로2가	58	대	416.20	416.20			국 (경찰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관설통	

○ 건물조서
1) 증축, 대수선 등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7-3	목조	1F	42.85	42.85	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동현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	7-4	목조	1F	56.53	56.53	이**	서울 서초구 바우포로1길 *,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황**	서울 은평구 진흥로 2**, 1**-6**				
3	7-5	한옥	2F	59.21	77.39	신**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7-50	한옥	1F	33.24	33.24	김**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 비동3004호				
5	7-7	한옥	1F	43.96	43.9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6	7-8	한옥	1F	40.68	40.6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7	7-10	목구조+조적	1F	30.04	30.04	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	7-12	목구조+조적	2F	42.96	42.96	왕**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9	7-13	목구조+조적	1F	29.47	29.47	유**	충남 당진시 밤절로 1**,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0	7-15나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8**, 9**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7-17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김**	서울 종로구 송월길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2	7-20	목구조+조적	1F	78.21	78.21	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 *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3	7-11	목구조+조적	1F	42.96	42.9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4	7-18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5	7-19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6	4	목구조+조적	B1/1F	58.38	93.7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7	7-22	철근콘크리트	B1/5F	131.00	727.09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8	6-가	조적조	1F	14.88	14.8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9	6-나	조적조	1F	39.67	39.6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0	6-다	조적조	2F	341.42	510.2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1	6-3나	조적조	B1/2F	88.30	265.6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2	6-3다	철근콘크리트	B1/5F	253.59	955.3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3	7-33	조적조	B1/2F	49.75	108.86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4	34-2	조적조	2F	66.12	92.5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25	33	철근콘크리트+ 조적	B1/2F	86.94	196.3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6	36-2	목구조+조적	1F	52.89	52.89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27	37	철근콘크리트+ 조적	B1/2F	118.88	336.43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28	32-1	목조	2F	69.42	115.70	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1**-1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마포구 창전로2길 **, 1**-19**				
						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20길 **, 5**-3**				
						전**	서울 은평구 진관2로 **, 2**동 13**호				
29	30-1	목구조+조적	B1/2F	84.96	142.15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30	31	목구조+조적	2F	36.36	69.42	구**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5**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31	27	조적조	2F	42.41	84.82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2	28	조적조	2F	49.59	99.18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33	22-2	목구조+조적	B1/2F	80.89	152.80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 1**동 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				
						윤**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34	22-3	목구조+조적	B1/2F	57.85	117.35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 1**동 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				
						윤**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35	25-가	연외조	3F	66.94	200.82	김**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3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6	25-나	연외조	1F	62.61	122.13	김**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3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7	25-다	연외조	1F	59.52							
38	23-1	목구조+조적	1F	21.85	21.85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 1**동 9**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9	23-2	목구조+조적	1F	33.06	33.0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40	20-1	목구조+조적	1F	59.50	59.50	재단법인학원 밀알장학재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7길 **, 14**호				
41	17-1	연외조	3F	37.69	113.7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2	18-1	철근콘크리트	2F	53.20	106.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3	19-7	조적조	1F	48.59	48.59	김**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 1**동 6**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44	19-1	철근콘크리트	3F	72.40	217.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림로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5	40	목구조+조적	B1/2F	52.89	76.03	정**	서울 구로구 공원로 **, 2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6	41	철근콘크리트+ 조적	B1/2F	60.30	184.86	김**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3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7	43	조적조	1F	57.85	57.85	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48-*, 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8	44-가	조적조	1F	36.36	36.36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49	44-나	목구조+조적	1F	29.75	29.7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0	46	목구조+조적	1F	39.67	39.6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1	49	목조	2F	46.28	72.73	여**	강남구 대치동 *** ***아파트 5-15**				
52	52	목구조+조적	2F	52.89	82.64	정**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3	35	철골조	B1/5F	-	-	국(경찰청)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54	58	철골철근 콘크리트	B2/13F	304.47	4,518.9	국(경찰청)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2) 철거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1-402	철근콘크리트	B1/4F	111.60	590.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2	7-14	목구조+조적	1F	32.83	32.83	연**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9**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	7-15가	목구조+조적	1F	35.96	35.96	강**	고양 덕양구 관음대로 8**, 9**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4-3	연외조	B1/3F	88.76	236.6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	7-23	철근콘크리트	B1/3F	83.31	327.41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6	7-24	철근콘크리트	B1/2F	96.43	161.3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	6-3가	철근콘크리트	B1/2F	105.79	294.61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8	5	목구조+조적	2F	13.22	26.44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9	5-4	목구조+조적	2F	9.92	19.84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0	8-1	조적조	1F	33.05	33.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1	34-가	목조	1F	46.45	46.45	이**	서울 성동구 독레15길 *, 1**동 20**호				
12	34-나	목조	1F	46.28	46.28	정**	서울 성동구 독레15길 *, 1**동 20**호				
13	34-다	시멘트벽돌조	1F	39.52	39.52	정**	서울 성동구 독레15길 *, 1**동 20**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4	55	철근콘크리트	B1/5F	210.74	1077.5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돈의문재정비촉진구역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3.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평동 164 일대	200,065.5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0.4	-	160,150.4	100.0	144,504.6	-	144,504.6	100.0	6,801.4	100.0	8,844.4	100.0	
택지 (획지)	계	111,834.8	증)488.9	112,323.7	70.1	99,923.9	증)488.9	100,412.8	69.5	5,510.1	81.0	6,400.8	72.4	
	주택 용지	95,168.5	증)488.9	95,657.4	59.7	95,168.5	증)488.9	95,657.4	66.2	-	-	-	-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획지)	종교 시설	1,671.2	-	1,671.2	1.0	1,671.2	-	1,671.2	1.2	-	-	-	-	
	상업 업무	14,995.1	-	14,995.1	9.4	3,084.2	-	3,084.2	2.1	5,510.1	81.0	6,400.8	72.4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8,315.6	감)488.9	47,826.7	29.9	44,580.7	감)488.9	44,091.8	30.5	1,291.3	19.0	2,443.6	27.6	
	공원	7,065.8	증)2.5	7,068.3	4.4	6,231.8	증)2.5	6,234.3	4.3	834.0	12.3	-	-	
	녹지	1,044.3	-	1,044.3	0.6	1,044.3	-	1,044.3	0.7	-	-	-	-	
	도로	27,033.2	-	27,033.2	16.9	24,255.5	-	24,255.5	16.8	457.3	6.7	2,320.4	26.2	
	공공 공지	123.2	-	123.2	0.1	-	-	-	0.0	-	-	123.2	1.4	
	광장	594.5	-	594.5	0.4	594.5	-	594.5	0.4	-	-	-	-	
	공공 청사	3,412.1	감)491.4	2,920.7	1.8	3,412.1	감)491.4	2,920.7	2.0	-	-	-	-	
	문화 시설	9,042.5	-	9,042.5	5.7	9,042.5	-	9,042.5	6.3	-	-	-	-	

※ 200,065.5㎡(지구면적) - 32,192㎡(돈의문4,5,6존지구역) - 7,723.1㎡(존치건물) = 160,150.4㎡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	12,454.6	감)491.4	11,963.2	
문화시설	1	9,042.5	-	9,042.5	
공공청사	3	3,412.1	감)491.4	2,920.7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	9	8,827.8	증)2.5	8,830.3	
공원	소계	5	－	5	7,065.8	증)2.5	7,068.3	
	어린이공원	2	감)1	1	4,036.9	감)3,202.9	834.0	
	소공원	3	증)1	4	3,028.9	증)3,205.4	6,234.3	
녹지	완충녹지	2	－	2	1,044.3	－	1,044.3	
기타	소계	2	－	2	717.7	－	717.7	
	공공공지	1	－	1	123.2	－	123.2	
	광장	1	－	1	594.5	－	594.5	

-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면적 (㎡)	존치 면적 (㎡)	현 황(㎡)			사업구역 계획(㎡)					
명칭	계			대지	공공용지	계	사업시행 면적(㎡)	공공용지 부담계획(㎡)			공공 용지 부담율 (%)	
								소계	기존	부담		
기정	돈의문 1	144,504.6	548.5	143,956.1	111,895.7	32,060.4	143,956.1	102,787.5	41,168.6	32,060.4	9,108.2	8.14
변경		144,504.6	548.5	143,956.1	111,895.7	32,060.4	143,956.1	102,785.0	41,171.1	32,060.4	9,110.7	8.14

- (2) 돈의문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227.7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4,504.6	-	144,504.6	100.0	존치면적(7,723.1㎡) 제외
택지 (획지)	계	99,923.9	증)488.9	100,412.8	69.5	
	주택용지	95,168.5	증)488.9	95,657.4	66.2	· 소공원3 위치변경에 따른 획지1-12 신설 : 증)488.9㎡ · 획지1-1 면적변경 없는 선형조정
	종교시설	1,671.2	-	1,671.2	1.2	
	상업업무	3,084.2	-	3,084.2	2.1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4,580.7	감)488.9	44,091.8	30.5	
	공원	6,231.8	증)2.5	6,234.3	4.3	· 소공원3 폐지 및 소공원6 신설 증)2.5㎡
	녹지	1,044.3	—	1,044.3	0.7	
	도로	24,255.5	—	24,255.5	16.8	
	광장	594.5	—	594.5	0.4	
	공공청사	3,412.1	감)491.4	2,920.7	2.0	· 교통순찰대 면적 감소 : 감)491.4㎡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문화시설	9,042.5	—	9,042.5	6.3	

(나)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 로(변경없음)

② 공 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①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2.9	-	3,202.9	
폐지	③	공원	소공원	소공원	교북동 10-38 일원	488.9	감)488.9	-	
기정	④	공원	소공원	소공원	송월동 94-1 일원	1,812.4	-	1,812.4	
기정	⑤	공원	소공원	소공원	신문로2가 54 일원	727.6	-	727.6	
신설	⑥	공원	소공원	소공원	행촌동 180-31 일원	-	증)491.4	491.4	

※ 소공원4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공원시설의 세분 - 기정 : 어린이공원 - 변경 : 소공원 ※ 면적변경 없음.	• 공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변경
③	공원	• 폐지 - 면적 : 488.9㎡	• 소공원3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폐지
⑥	공원	• 신설 - 면적 : 491.4㎡	• 소공원3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신설

③ 녹지(변경없음)

④ 광장(변경없음)

⑤ 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행촌동 180-10 일원	548.5	-	548.5	
변경	③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2,496.5	감)491.4	2,005.1	
기정	④	공공청사	파출소	행촌동 180-17 일원	367.1	-	367.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③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2,496.5㎡ → 2,005.1㎡ (감:491.4㎡)	소공원3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⑥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1	행촌동 27-1	12,766.80	50이하	-	250이하	23/30이하	70이하	주거	교통순찰대 인접 면적변경없는 선형조정
기정	1-2	홍파동 42-1	54,530.60	50이하	-	253이하	23/40이하	70이하	주거/판매	
기정	1-3	평동 13-1	26,281.50	50이하	-	250이하	23/50이하	70이하	주거/판매	
기정	1-4	교북동 11-2	4,074.30	-	-	-	-	-	주거/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0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084.20	60이하	-	583이하	25/50이하	73이하	주거/판매 /업무	상업
기정	1-5	행촌동 37-26	968.8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기정	1-6	홍파동 5-18	702.4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기정 변경	1-7	행촌동 158-8	2,496.50	50이하	-	250이하	8이하	30이하	공공청사 (교통 순찰대)	소공원3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005.1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8	행촌동 180-10	548.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기정	1-9	송월동 116	599.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주거/판매 /근린생활 시설	
기정	1-1 0	행촌동 180-17	367.1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파출소)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기정	1-1 1	신문로2가 6	9,042.50	60이하	-	150이하	4이하	-	문화시설	
신설	1-1 2	교북동 10-38	488.9	50이하	-	323이하	7이하	28이하	주거/판매 /업무 /근린생활 시설	

- 주1) 획지 1-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
- 주2) 획지1-1의 공공보행통로(승강기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주거사업과)가 부담하며, 향후
유지관리비용은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에서 부담함

구 분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변경없음)	○ 건설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90.5%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9.5%				
	구 분	전용 면적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소 계		
	계	-	2,415	2,415	100%
	전용 면적 85㎡ 미만	33㎡	16	0.6%	
		37㎡	91	3.8%	
		39㎡	232	9.6%	
		42㎡	136	5.6%	
		44㎡	68	2.8%	
		45㎡	75	3.1%	
		59㎡	400	16.6%	
		77㎡	71	2.9%	
		84㎡	1,096	45.4%	
	전용 면적 85㎡ 이상	101㎡	130	5.4%	
		116㎡	79	3.3%	
		138㎡	21	0.9%	

구 분	기 정
건축한계선 (변경없음)	○ 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 3m ○ 중로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6m ○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 중로2-43호선 북측 도로변 : 10m ○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 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 3m ※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변경없음)	○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 생활가로변 : 17m ○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차량진입 금지구간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도록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는 사항임 - 획지1-11(문화시설) 및 공원5 - 획지1-8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기타사항 (변경없음)	○ 공공보행통로 - 획지1-1에 중로3-40호선과 소로3-102호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 : 2m(신설) ※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

-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
- 새문안로~중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5.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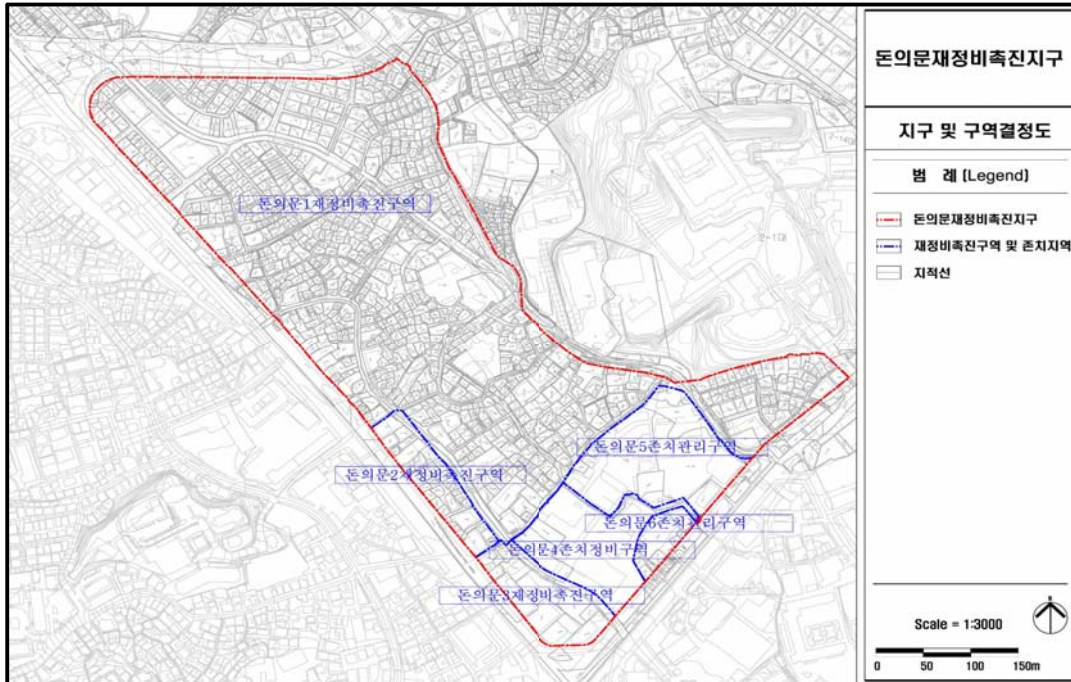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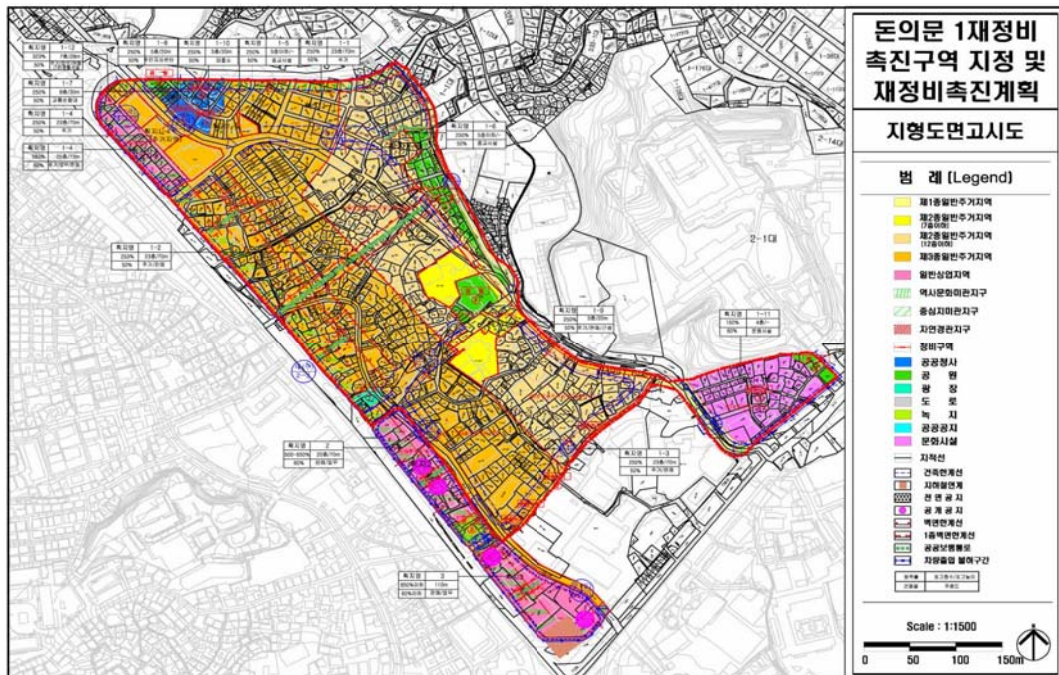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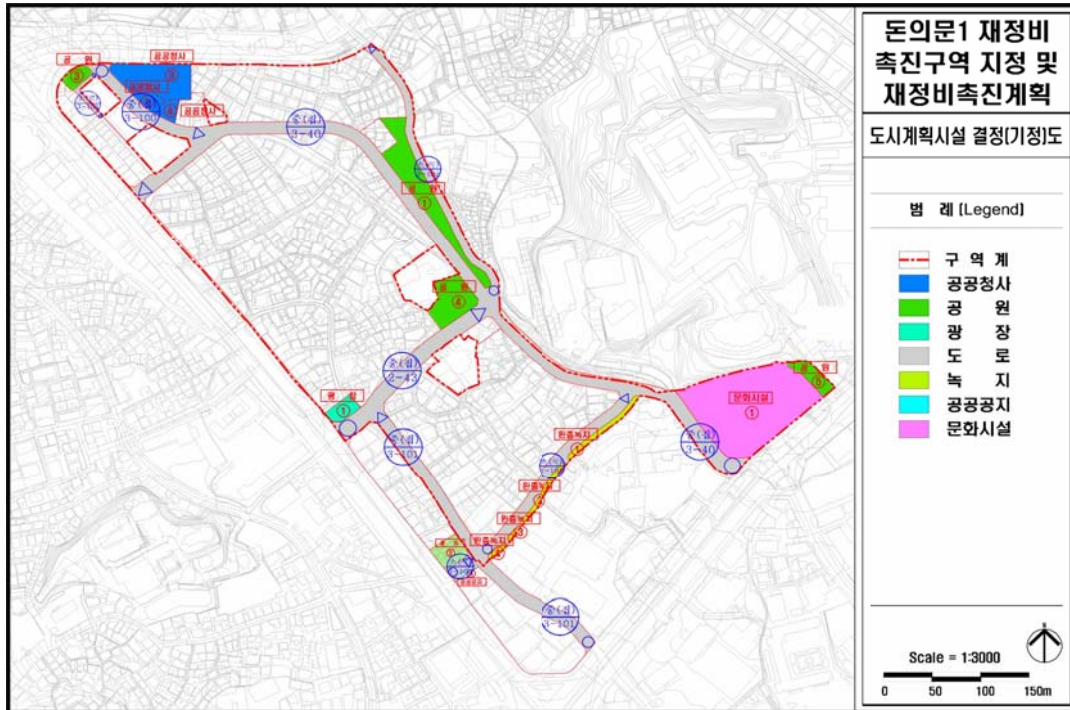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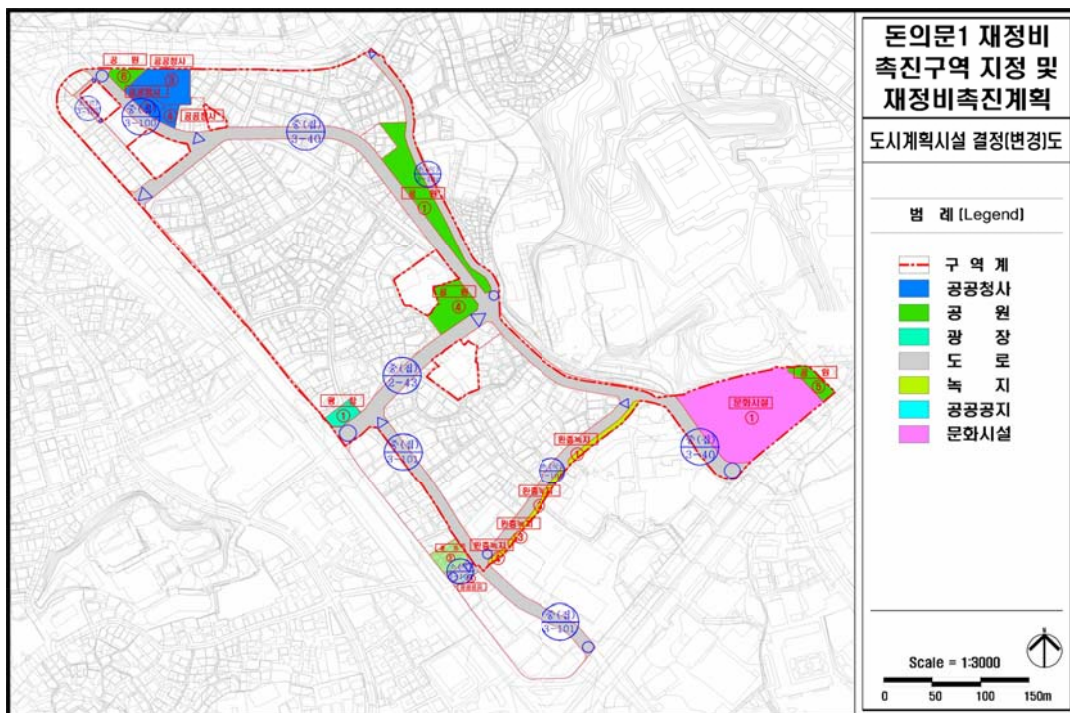
■ 지형도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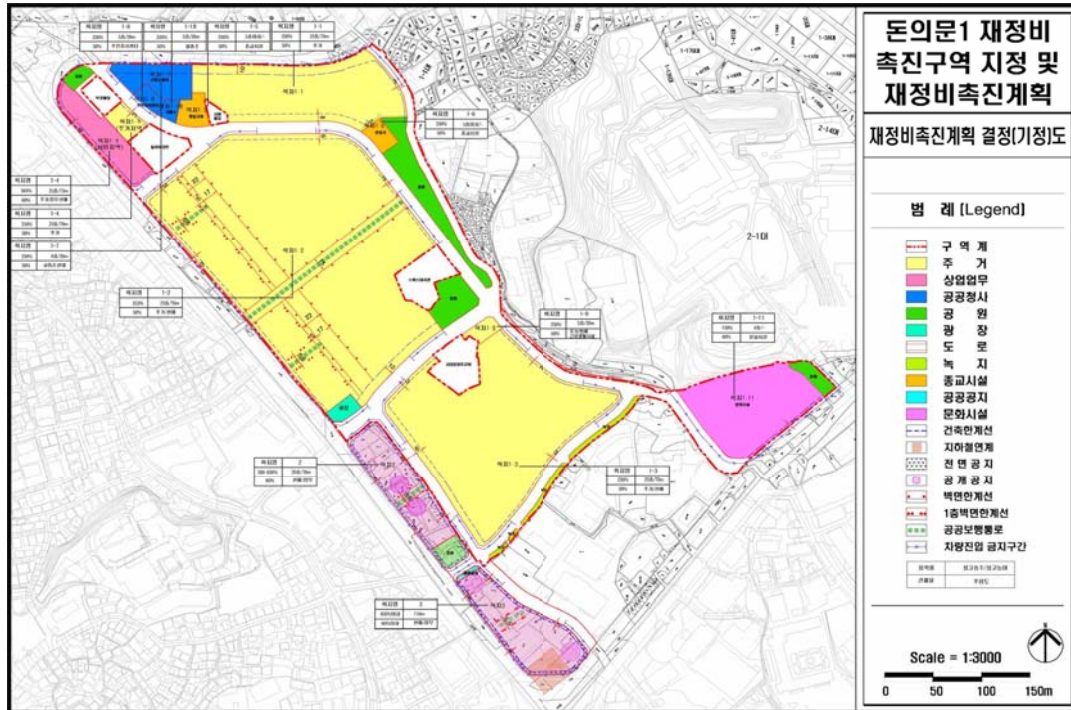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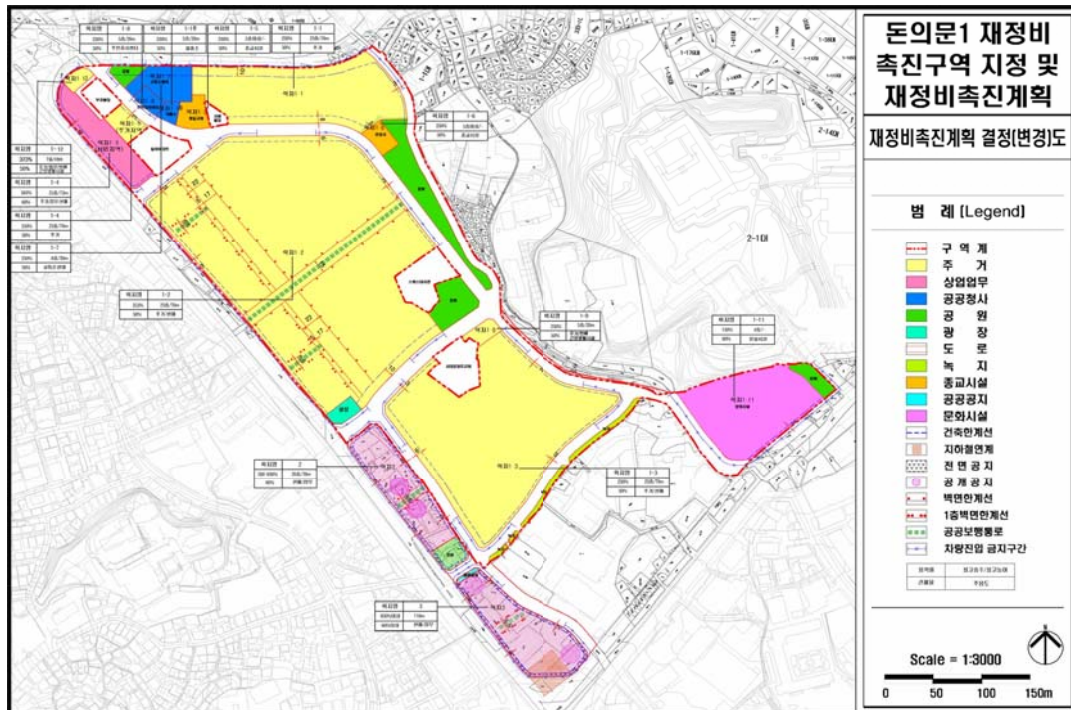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1호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2005.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2.),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경미한 사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C	16	제기동	288	3.2	190%	60%	12층 이하	1	주택 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C	16	제기동	288	3.3	210%	60%	-	1	주택 재개발	전면 개발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10.3.18.)의거
-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

2.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제기제4 주택재개발 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7	-	33,485.7	

3.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	소계	33,485.7	-	33,485.7	1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31,360.0	-	31,360.0	93.7	
	제3종일반 주거지역	2,125.7	-	2,125.7	6.3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비율(%)	
합계		33,485.7	—	33,485.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705.2	감) 3,135.5	3,569.7	10.7	
	도 로	5,030.1	감) 1,460.4	3,569.7	10.7	
	공 원	1,675.1	감) 1,675.1	—	—	
택지	소 계	26,780.5	증) 3,135.5	29,916.0	89.3	
	택지 1	19,337.8	증) 2,943.2	22,281.0	66.5	
	택지 2	7,442.7	증) 192.3	7,635.0	22.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폐지	대로	3	1	25 ~28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95	제기동 424-1	제기동 402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구역외 대로3-131 원상회복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96	제기동 402	제기동 390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도로확폭 (현황도로포함)
변경	소로	3	A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2	제기동 402	제기동 390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6	제기동 424	제기동 288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도로확폭 (현황도로포함)
변경	소로	2	A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9	제기동 424	제기동 390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5	제기동 424-1	제기동 342-45	-	서울특별시 제2005-419호 (’05.12.29.)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2	제기동 424-1	제기동 342-45	-	서울특별시 제2005-419호 (’05.12.29.)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5	제기동 342-45	제기동 288	-	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6.)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 구역 외 도로는 서울시공고 제141호(’ 86.3.6.) 결정사항 및 동대문구

공고 제1999-157호(’ 99.5.3.) 도로 노선인정공고에 따른 결정사항 유지

※ 구역 외 대로3-131 원상회복 : 구역 외 도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187호(’ 78.5.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
사항 유지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	-	폐지	- 도로 확폭구간 폐지 후 건축한계선(전면공지) 내 보행공간 확보 ※구역외 대로3-131 원상회복
중로 3-1	소로 3-A	- 폭원축소 - 12m → 4m - 시점 및 연장 변경 - 96m → 92m	- 대로3-1(도로확폭구간) 폐지에 따른 시점 및 연장 변경(연장 오차 정정 포함)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 현황도로 8m(구역외) 포함시 12m 도로
중로 3-2	소로 2-A	- 폭원축소 - 12m → 8m - 종점 및 연장 변경 - 186m → 89m	- 도로확폭구간 폐지후 건축한계선(전면공지) 내 보행공간확보 - 종점 및 연장 변경 (연장 오차 정정 포함)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소로 1-1	소로 1-1	- 연장 변경 - 245m → 242m	연장변경 (연장 오차 정정 포함)
소로 1-2	-	폐지	- 도로확폭구간 폐지후 건축한계선(전면공지) 내 보행공간 확보 ※구역 외 현황도로 원상회복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1,675.1	감) 1,675.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 (' 05.12.29.)	

나) 공원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폐 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5만㎡ 미만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공원·녹지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공원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기부채납 계획하여 지역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정/서울시 기준		계획면적	비 고
		기준	면적		
공동 이용 시설	소 계	창조적 정비모델 : (2.5㎡×907세대)×1.40	3,174㎡	3,280㎡	
	경로당	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225㎡	260㎡	
	어린이집		330㎡	450㎡	
	작은도서관		158㎡	410㎡	
	어린이놀이터		—	1,060㎡	
	주민운동시설		—	1,100㎡	
관리사무소			—	100㎡	
경비실			—	60㎡	

※ 「창조적 정비모델」 부합여부 : (2.5㎡ × 세대) 대비 40% 강화
 = (2.5㎡ × 907세대) × 1.40 = 3,174㎡ < 3,280㎡ : 적합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제기제4 주택재개발구역	33,485.7	제기동 288번지 일대	363	—	—	363	—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구분	면적(㎡)					
제기제4 주택재개발 구역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7	기정	택지 1	19,337.8	공동주택	26.4%	235.50%	43m이하 (15층)	
				택지 2	7,442.7		27.3%	242.44%		
			변경	택지 1	22,28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50.0% 이하	75m이하 (25층)	
				택지 2	7,635.0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건설비율			o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전용면적(㎡)	기정		변경		비고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계	639	100.00	907	100.00			
			60이하	295	46.17	753	83.02			
			60초과~85이하	238	37.24	154	16.98			
			85초과	106	16.59	-	-			
			o 임대주택 건설비율							
			전용면적(㎡)	기정		변경		비고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60이하	109	17.06	155	17.0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o 기준용적률 20% 상향 (190%→2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10.3.18.)에 의거 기준(계획)용적률 20% 상향							
			- 기준(계획)용적률 20%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량 산정							
			= 7,140.95㎡(기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연면적) < 7,178.4㎡ (59㎡, 90세대 산정시 소형주택 공급면적)							
			o 획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계획 (가로경관향상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폭 2m이상 보행공간 확보)							

3)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대지면적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건축물) 설치 환산 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9,916.0㎡	3,569.7㎡	956.8㎡	646.7㎡	2,165.0㎡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3,569.7㎡ - 956.8㎡ - 646.7㎡ = 1,966.2㎡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 환산 부지면적	○ 대지지분 면적 = 공공청사 연면적 ÷ 상한 용적률 = 2,460㎡ ÷ 250% = 984.0㎡ ○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 × 연면적) ÷ 부지가액 = 1,181.0㎡ ⇒ 공공시설(건축물) 설치 환산부지면적 = 984.0㎡ + 1,181.0㎡ = 2,165.0㎡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용적률)	○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1 + 1.3 × 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10% × (1 + 1.3 × 0.1489) = 250.64% · α : [(1,966.2㎡ + 2,165.0㎡) ÷ (29,916.0㎡ - 2,165.0㎡)] = 0.1489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491세대 계획 : 907세대 (증) 416세대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사업시행시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 세차 시설의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시행과 대기질의 영향을 최소화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 주변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시행하고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	
	보행안전	-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휀스를 설치 하고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 수립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 공사차량의 운행 제한	
사업시행후		-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용도제한 - 보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통행에 안전을 확보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제시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 · 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 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단지내 소공원, 광장의 조성을 통한 녹지 ·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 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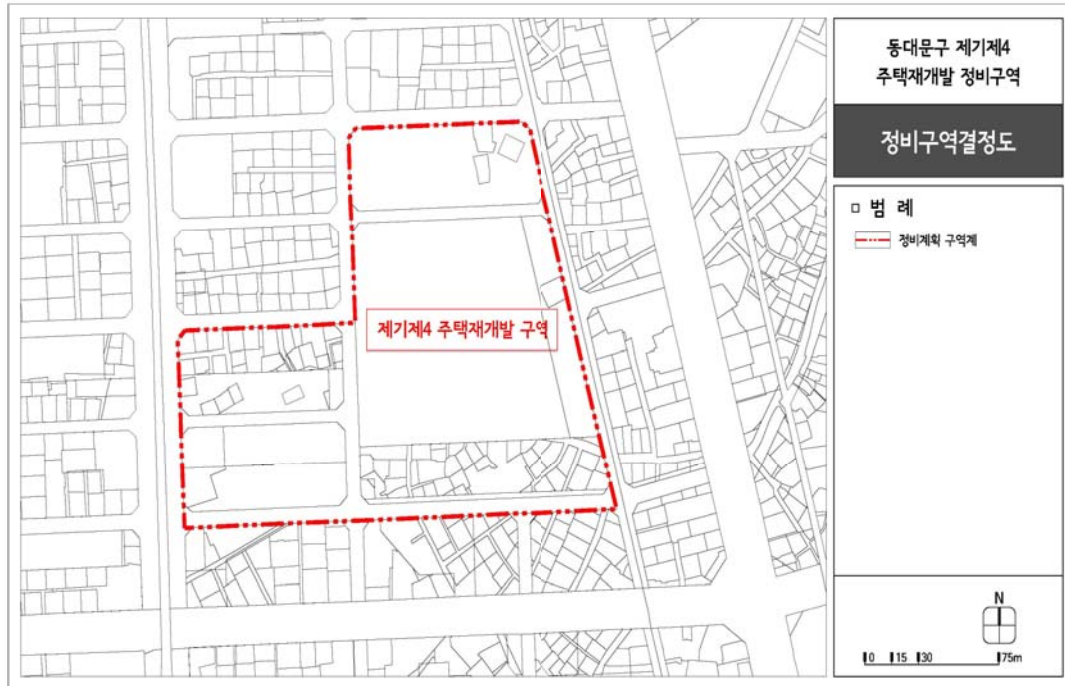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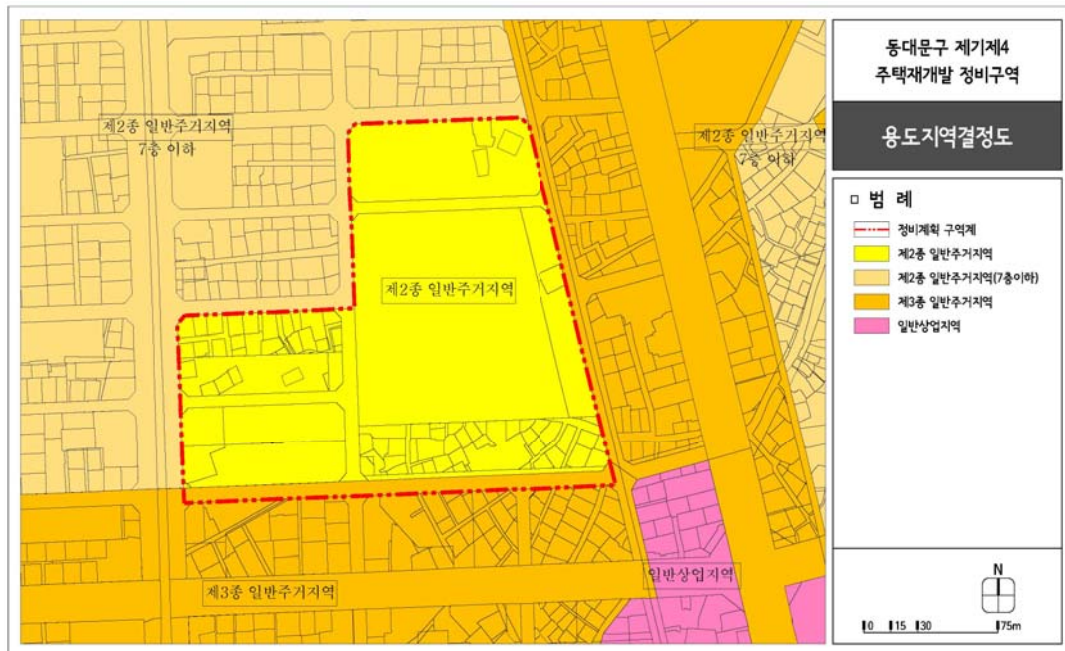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8) 및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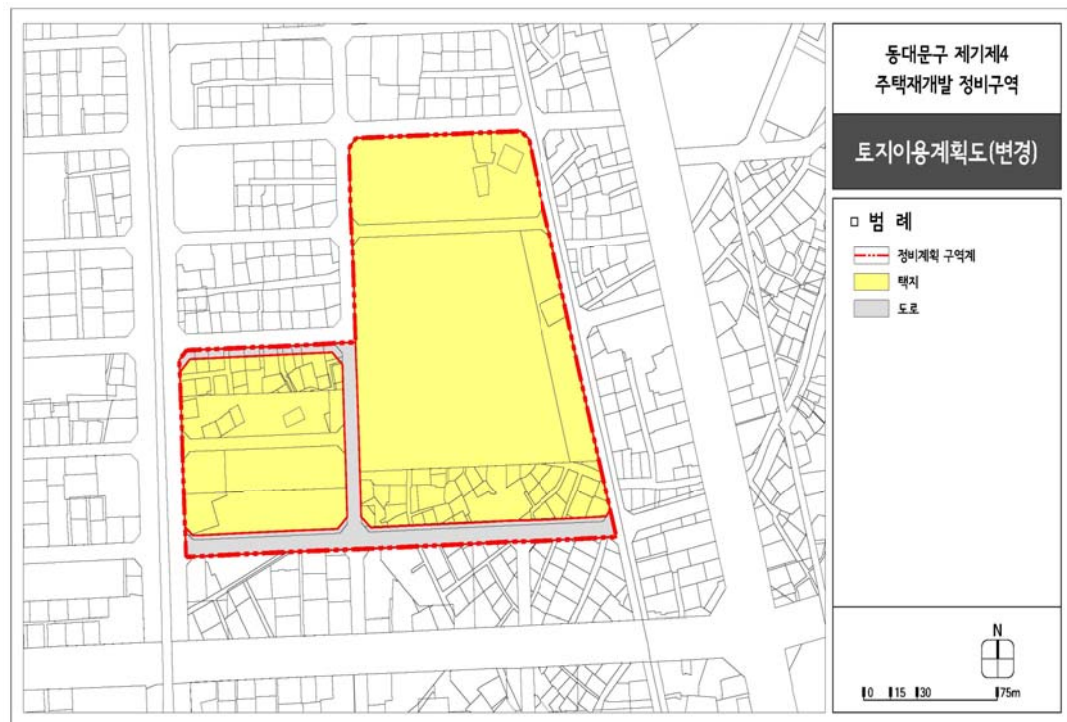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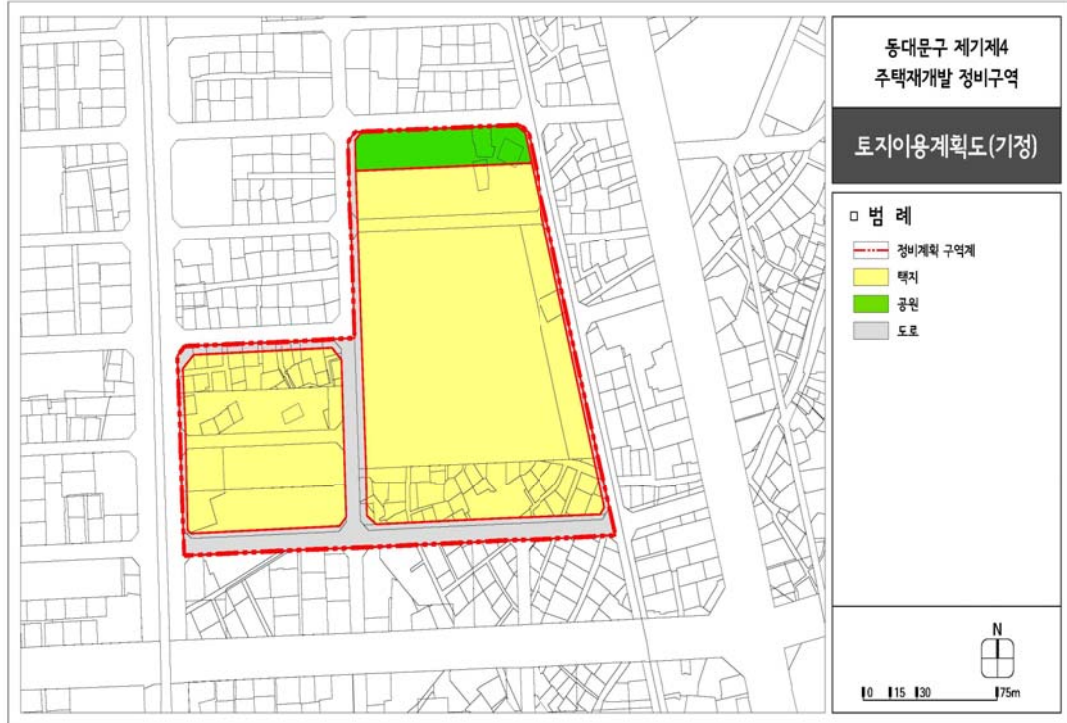
가.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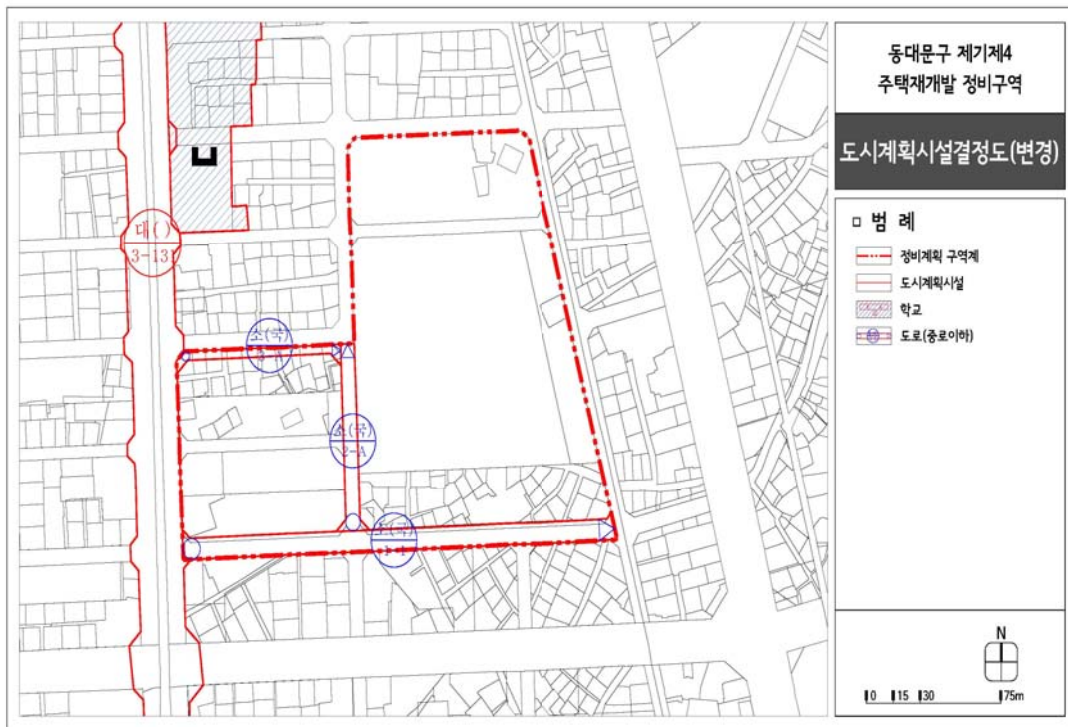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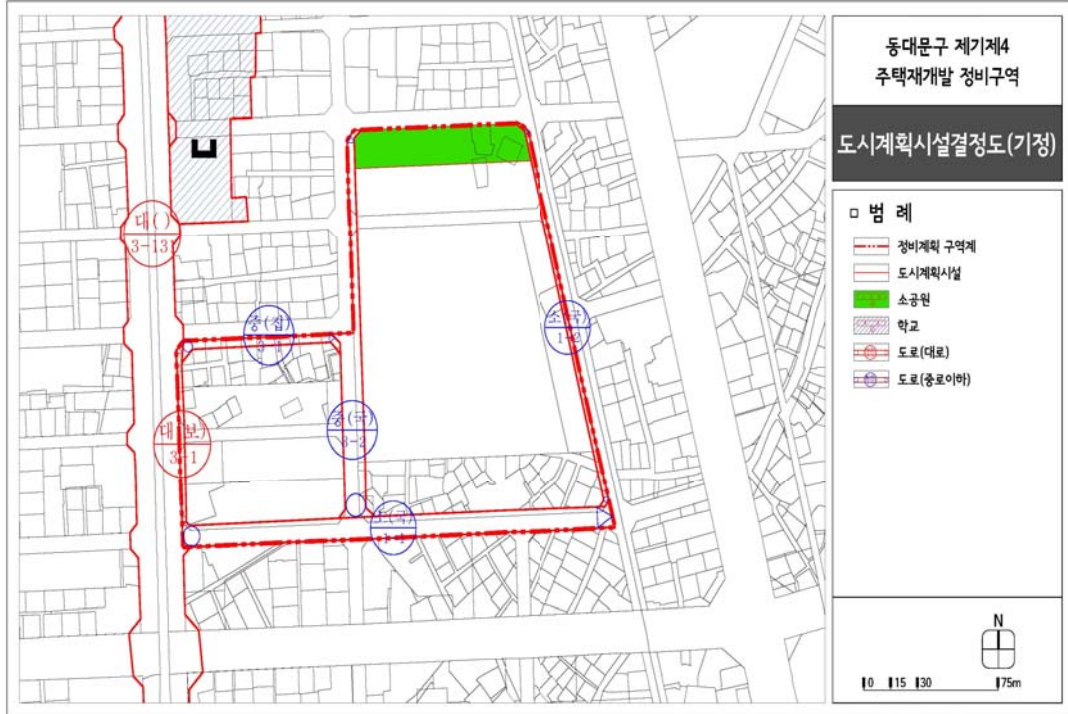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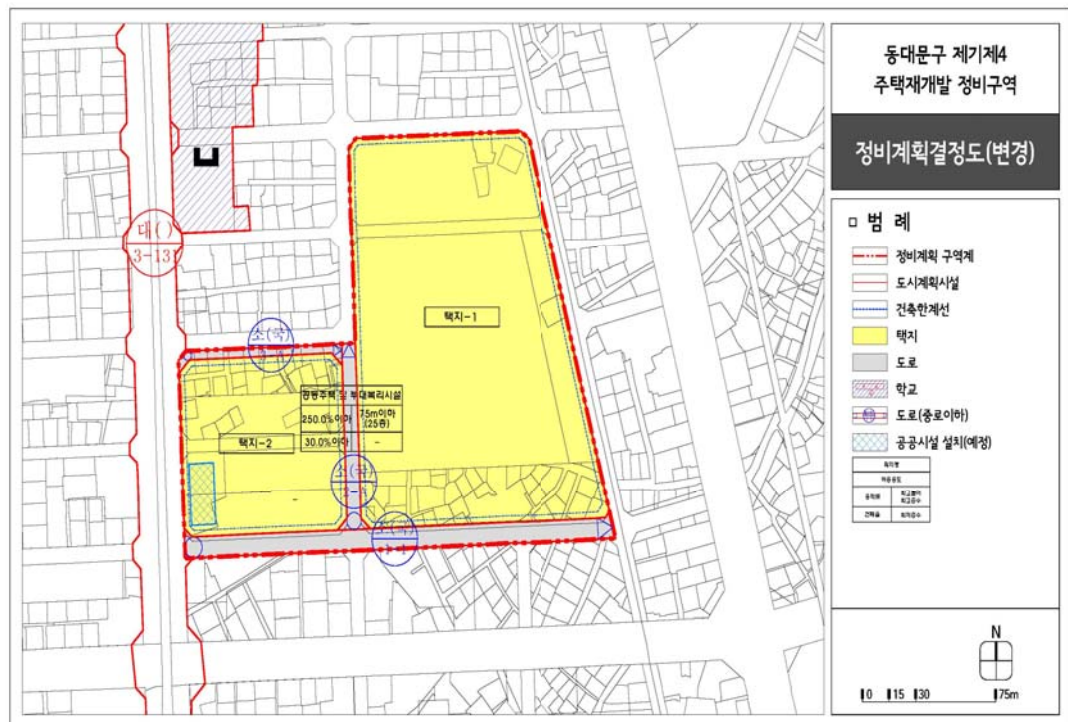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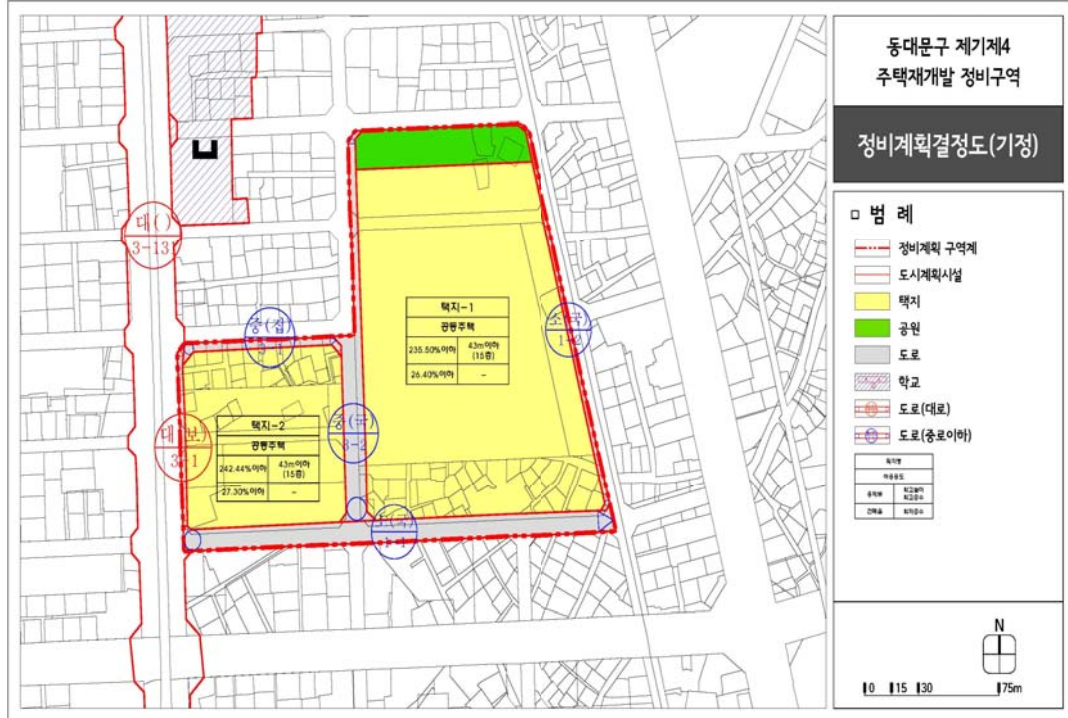
다. 토지이용계획도 (기정/변경)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기정 / 변경)



마.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2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서 강북구 수유1동 등 7개동에 대해 배수지 적정 체류시간 확보로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유6배수지 증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강북구 수유동 산84-5	2,040	증)1,157	3,197	서울특별시 고시-329호 (1990.10.12.)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수도공급설비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수도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 기 정 : 2,040㎡ • 변 경 : 증 1,157㎡ • 변경후 : 3,197㎡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시설용량 확충으로 인한 변경결정 • (증 653㎡) - 기정 면적 오류 수정 • 고시면적 : 2,040㎡ • 실측면적 : 2,544㎡(증 504㎡) - 합계 : 증) 1,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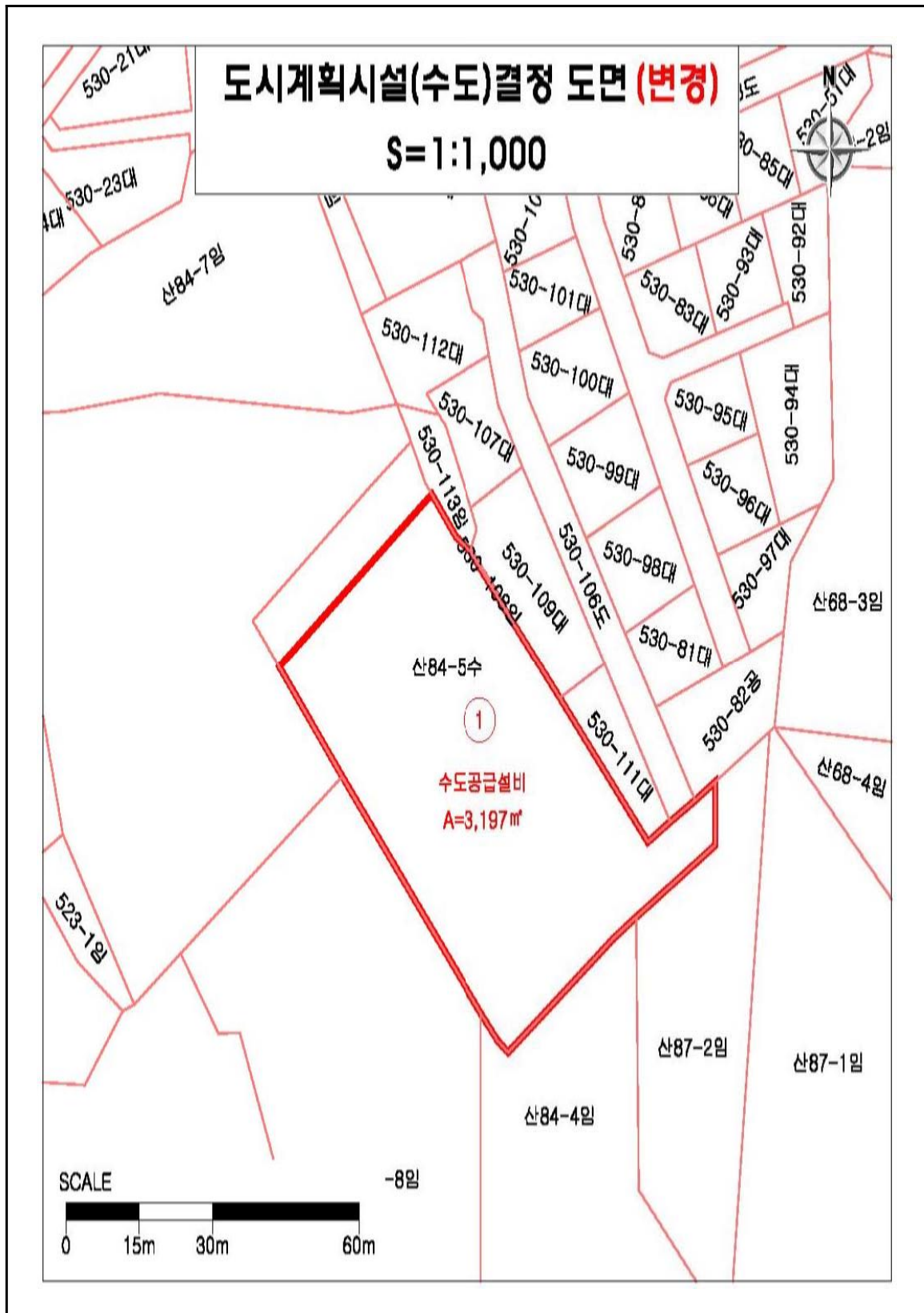
다.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3)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3호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 DMC 첨단산업센터 3층(301호~310호)
- 면 적 : 3,624.50㎡

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투자내용 : 882만 불(1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술혁신센터 설립
- 고용규모 : 60명
- 사업내용 : 국내외 의료진 대상 로봇수술 교육서비스와 로봇수술기법 개발 수술혁신센터 설립·운영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목적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는 수술로봇 ‘다빈치’를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교육서비스 사업과 최소침습수술 기법 개발을 위한 수술혁신센터 건립을 통해, 국내 의료진의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내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로봇수술 관련 국내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ICT 융합 의료기기 부문 4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4.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34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등록 및 폐기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및 폐기 직인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구분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폐기 일자
등록	공정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4. 1.
등록	공정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4. 1.
폐기	민생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4. 1.
폐기	민생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4. 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1. 업체명 : (주)일신종합환경
2. 대표자 : 유 남 중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법원로11길11 현대지식산업센터 I A동 1111호
(☎ 02-861-4488)
4. 업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42호]
6. 지정일자 : 2017. 4. 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69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6-265호('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 고시 제130호('87.04.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4호('1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호('16.01.0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의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 원 명 : 보라매근린공원
2.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보라매근린공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 배드민턴장 변경 계획 : 운동시설 면적 증
 -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착오정정(서울시 고시 제2016-74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413,352.0	163,511.88	19	14,675.62	33,228.09	413,352.00	163,514.88	19	14,675.62	33,228.09	증 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바닥면적 (㎡)	연 면 적 (㎡)	
기 본 시 설	소 계	57,217.94	57,217.94				57,112.94	57,112.94				
	도 로	44,699.94	44,699.94				44,594.94	44,594.94				감 105㎡ 착오정정 감105㎡
	목 교	108.50	108.50				108.50	108.50				
	광 장	12,409.50	12,409.50				12,409.50	12,409.50				
조경시설		48,454.00	48,454.00				48,454.00	48,454.00				
휴양시설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2,807.55	2,431.79	2	938.97	3,264.35	
유흥시설		2,402.27	2,402.27				2,402.27	2,402.27				
운동시설		29,197.73	29,197.73				29,305.73	29,305.73				증 108㎡
교양시설		16,336.40	14,504.78	7	10,235.75	21,538.60	16,336.40	14,504.78	7	10,235.75	21,538.60	
편익시설		4,931.53	4,931.53	5	429.06	429.06	4,931.53	4,931.53	5	429.06	429.06	
관리시설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5,152.58	3,071.84	5	3,071.84	7,996.08	
녹지및기타		245,552.00					245,549.00					감 3㎡ 운동시설증 가 감108㎡ 착오정정 증105㎡
기 타		1,300	1,300				1,300	1,300				
시 설 율		(163,511.88 / 413,352.00) × 100 = 39.56%					(163,514.88 / 413,352.00) × 100 = 39.56%					
건 폐 율		(14,675.62 / 413,352.00) × 100 = 3.55%					(14,675.62 / 413,352.00) × 100 = 3.55%					

4.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시설과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02-2181-115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74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60023	광명산업 개발㈜	김상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2017.4.13.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7.4.14.~2017.5.13.)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77호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2017. 4. 21. ~ 2017. 5. 4.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02-2133-4932)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2-6 일원	120,730	2007.8.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0,730	—	120,730	100.0	
주거 지역	소계	42,000	—	42,000	34.8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80	—	22,280	18.5	
	제3종일반주거지역	620	—	620	0.5	
	준주거지역	19,100	—	19,100	15.8	
상업 지역	소계	78,730	—	78,730	65.2	
	일반상업지역	39,500	—	39,500	32.7	
	유통상업지역	39,230	—	39,230	32.5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82.8	—	682.8	100.0	
상업 지역	소계	682.8	—	682.8	100.0	
	일반상업지역	682.8	—	682.8	100.0	

다.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천호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구 용답동 232-1 일원	278,400 (175)	11,600 (15)	12m	1982.4.22. (서고164호)	

※ ()는 대상지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준주거지역	QR1	
	QR2	
일반상업지역	C1	
	C2	
	C3	대상지
	C4	
유통상업지역	DC1	
	DC2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C3	7,553.1	233-1, 233-9, 233-10	2,288.4	공동개발 권장
기정	2			233-2, 233-3, 233-4, 233-8	3,370.3	공동개발 권장
기정	3			233-5, 233-6, 233-4	2,288.4	공동개발 권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1층	전층	
불허 용도	A	C1~C4	· 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중 자동차 관련용도 (이면부 제외^{제1}) · 위락시설(C3, C4 제외) · 숙박시설(C3, C4 제외)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1층	전층	
권장 용도	A	C1~C4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 장, 당구장 등	
기타		C3	· 233-1, 233-9, 233-10 3필지 적용사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 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1) C1~C4 블록의 이면부 : 천호대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를 말함

■ 변경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1층	전층	
지정 용도	A	C3	· 233-1, 1필지 적용사항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용답동 233-1 에 한함
불허 용도		C1~C4	· 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C3 내 “233-1” 필지 청년주택 건립시 예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중 자동차 관 련용도 (이면부 제외 ^{주2)}) · 위락시설(C3, C4 제외) · 숙박시설(C3, C4 제외)	
권장 용도		C1~C4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체 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변경 없음
기타		C3	· 233-1, 233-9, 233-10 3필지 적용사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 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주2) C1~C4 블록의 이면부 : 천호대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를 말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C3 내 233-1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C3 가구 내 “233-1”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 불허용도 변경 - C3 내 233-1 공동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시 제외)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C3 가구 내 “233-1” 필지에 한하여 불허용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거복합시 제외)로 변경

나. 건축물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획지	기정	변경	
-	C3	1	60% 이하	64% 이하	용답동 233-1 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60% 이하 - 변경 : 64%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의거하여 C3 가구 내 1 획지 중 “용답동 233-1” 에 한하여 건폐율을 법정상한(80%) 이하인 64% 이하로 완화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획지	기정	변경	
-	C3	1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660% 이하	· 기본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 이하	용답동 233-1 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지정(기준/허용) : 400%/660% 이하 - 변경(기본/상한) : 800%/법정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C3 가구 내 1 획지 중 “용답동 233-1”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용도지역 변경 없음)을 준용하여 변경

3) 상한용적률(변경)

구 분		산정방식	비 고
지정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변경	C3 (233-1)	· 기본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 = $\frac{\text{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text{사업부지 용적률}(\%)}$ - $\alpha = \frac{\text{순부담 공공시설 부지면적}(\text{m}^2)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text{m}^2)}$ ※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면적 :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부지 면적	· 용답동 233-1 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상한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변경 - 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Rightarrow$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C3 가구 내 1 획지 중 “용답동 233-1”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변경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계획내용(기준/최고)	비고
-	C1~C4	천호대로변	60m 이하 / 75m 이하 ^{주1)}	
		이면도로변	- / 35m 이하	

※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천호대로변 블록(C1~C4 블록)

1. 조건 : 개발규모 2,000㎡ 이상, 이면부와 공동개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구 설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2. 인센티브 : 기준높이에 15m 가산(최고높이 75m)

라. 건축물의 건축선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변경 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C1~C4블록)	3m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변경 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1층부 바닥높이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10cm 이내로 함	
개구부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의 1개소의 출입구만 허용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건물들과 통일	
벽면처리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 금지	
투시벽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셔터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 옥외광고물(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설치기준	· 지주형 통합간판의 설치 권장 · 설치하는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 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옥외광고물 형태로 옥상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을 금지 · 간판 설치개소를 1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소, 돌출간판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대지내 공지(변경 없음)

나. 차량동선(변경 없음)

다. 친환경계획(변경 없음)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 기정

항목 \ 내용		완화조건		산정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선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간선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15 · 3필지 : a=0.2 · 4필지 이상 : a=0.25
			이면	기준용적률 × 0.5a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간선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3	· 전층 권장용도는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시 인정
			이면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	
		특정층 권장	간선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 바닥면적) × 0.15	· 특정층 권장용도는 해당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시 인정
			이면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 바닥면적) × 0.1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및 법정 초과확보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a	· 필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0.8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위치/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필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0.8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준수시 초과 확보시	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이면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5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환경 친화적 건축물	생태면적률	준수시	간선	기준용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대지면적)	
			이면	기준용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대지면적) × 0.5	

- 주) 1. 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간선을, 준주거지역은 이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3.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
 4. 면적산정 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주차장 면적 제외)
 5.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생태면적률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1조에 따라 산정한다.

■ 변경

사업조건 항목		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비율		· 기본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본용적률 800% 부여	· 용답동 233-1 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 주거 90% 이하 - 비주거 10~20% 이하 (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 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233-1 필지의 용적률 완화항목 변경 - 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233-1 필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 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변경

나. 높이 인센티브(변경 없음)

위치	완화조건	완화량	비고
천호대로변 블록 (C1 ~ C4)	· 개발규모 2,000㎡ 이상이고 이면부와 공동개발을 하여 이면도 로에서의 주차출입구 설치시	15m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4-41호(1984. 02. 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99호(2017. 03. 16.)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한 『밤고개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개요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5-13 ~ 강남구 수서동 729-1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밤고개로 확장공사
-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6 → 7 ~ 8차선, 연장 1.85k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 까지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열람 의견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 다.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7)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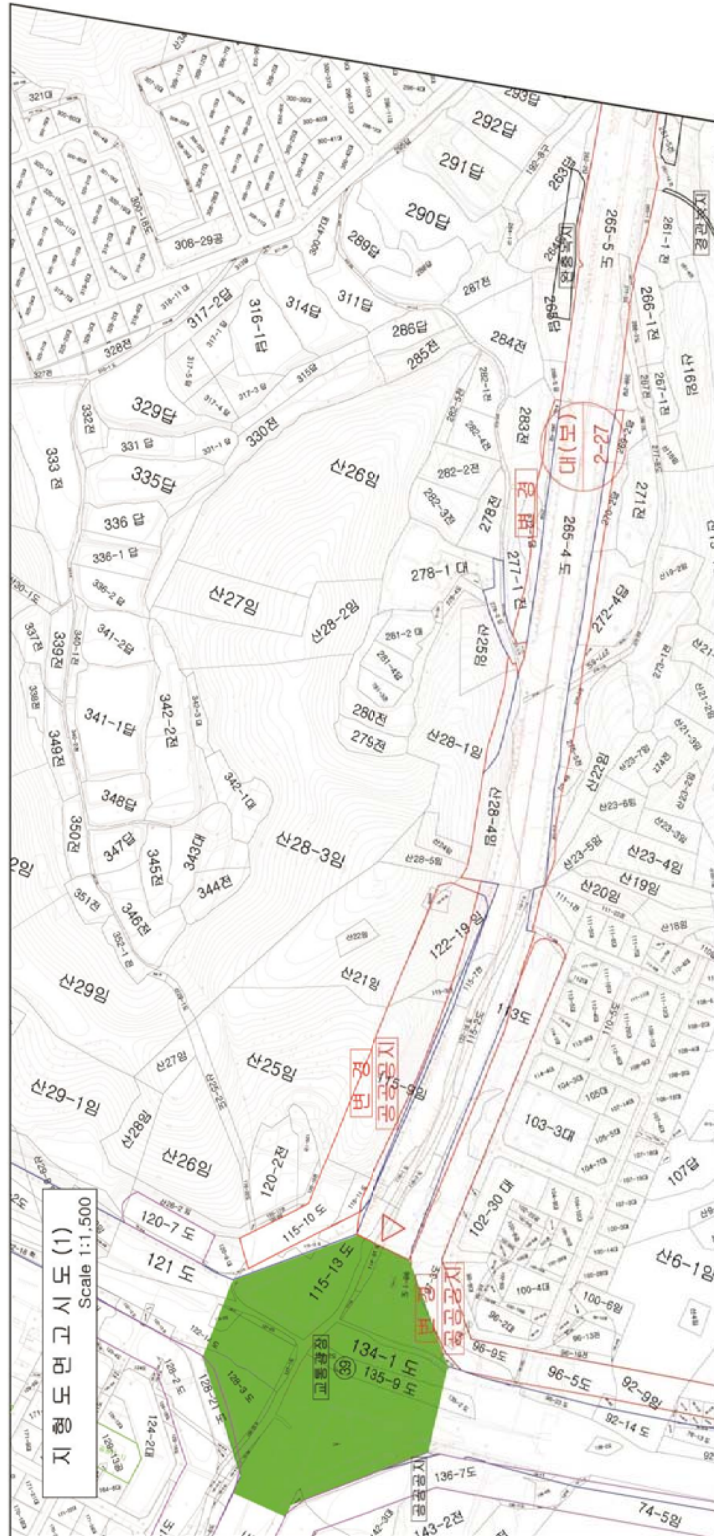
토지 세목 조서(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5-13	도	3,544	46	공	서울특별시	세곡동-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5-11	도	418	80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5-9	임	5,598	492	공	서울특별시	세곡동-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5-3	전	334	118	공	서울특별시	세곡동-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22-19	임	2,908	461	공	서울특별시	세곡동-5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3	도	4,562	125	공	서울특별시	세곡동-6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산28-1	임	5,516	424	백동환 외 8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울현동-1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산25	임	1,190	34	노유성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5	울현동-2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7-1	전	1,184	263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3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2-1	답	641	295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4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0	답	135	135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5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83	전	1,871	207	이제호	서울시 광진구 독성로35길 32, 307동 505호	울현동-6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69-4	답	99	99	재단법인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7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68	답	50	50	김분영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27-43	울현동-8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산23-5	임	992	4	신승복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46-8	울현동-9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산22	임	2,182	51	성기월 외 1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5동 508호	울현동-10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5-2	전	111	82	김계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	울현동-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5-4	전	217	102	김계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	울현동-12

토지 세목 조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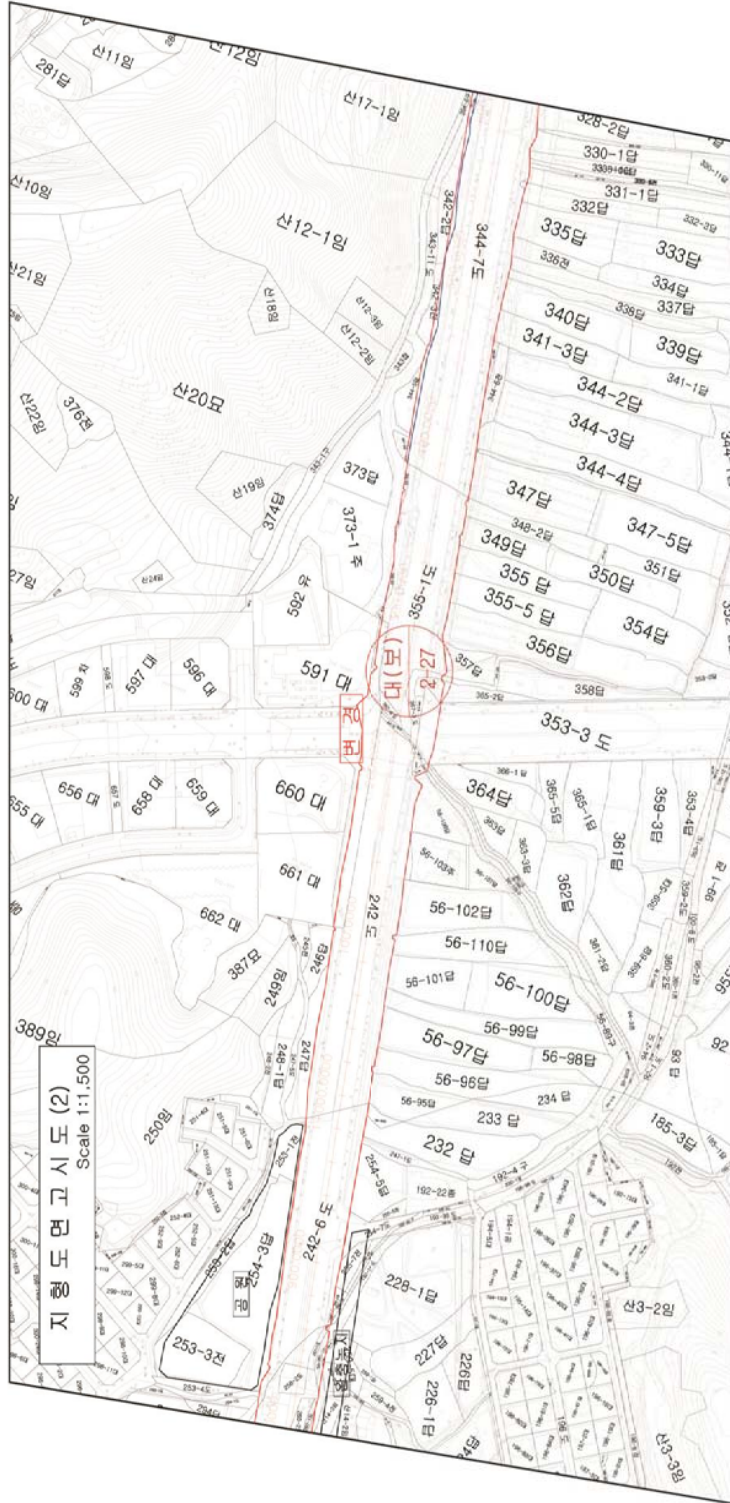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5-5	전	617	184	김계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	울현동-13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6-2	전	369	200	재단법인천주교서 울대학교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14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6-1	도	142	28	최규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남이터길 28-110	울현동-15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7-8	도	1,307	49	공	서울특별시	울현동-16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7-5	전	169	93	재단법인천주교서 울대학교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17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2-4	답	1,839	342	재단법인천주교서 울대학교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18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70-2	답	721	298	재단법인천주교서 울대학교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19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현동	269-2	답	531	175	재단법인천주교서 울대학교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울현동-20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47-2	답	130	21	강민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35	자곡동-1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43-11	도	2,803	4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2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44-5	답	458	111	채홍수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3-4	자곡동-3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42-3	전	362	83	정성옥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1-505	자곡동-4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42-2	답	638	139	박민숙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407호	자곡동-5
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196-1	도	2,818	72	공	서울특별시	자곡동-6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04-6	구	356	75	공	서울특별시	자곡동-7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17-1	임	13,289	41	이겸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13, 41동 1303호	자곡동-8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5	차	18,001.8	337	공	서울특별시	수서동-1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9-1	공	6,874.1	84	공	서울특별시	수서동-2

지형도면고지도(S=1:1,5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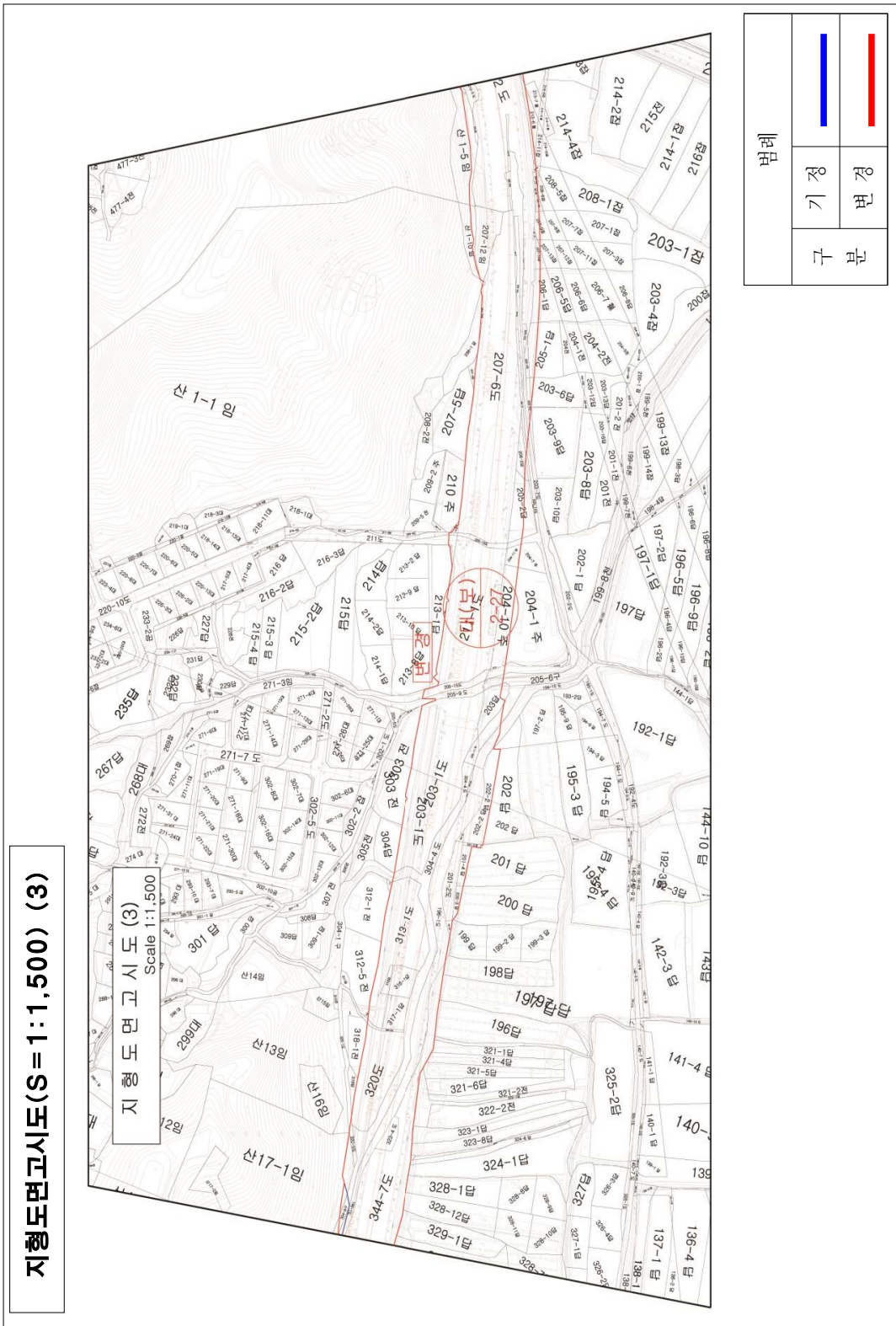


범례	
기	정
구	변
변	경

지형도면고시도(S=1:1,500) (2)



범례	
기	정
구	변경



지형도면고지도(S=1:1,500) (4)



범례		
구분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96호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명칭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우며, ‘이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
 용어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며, 부르기 쉽고 듣기에도 좋은 새 이름을 찾아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 공모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살리고, 부르기 쉬운 이름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단체, 기관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가능)
- 응모기간 : 2017. 4. 20. ~ 5. 17. (4주)

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보내실 곳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명칭공모담당자 앞
- 이메일 : lby5000@seoul.go.kr

3.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4.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 규모 : 5개 용어 선정(최우수 1, 우수 2, 참여 2)
- 선정에 따른 혜택 : 문화상품권 지급
 - 최우수 1명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우 수 2명 :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참 여 2명 : 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결과발표 : 2017년 6월 20일(화) 예정
- 통보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5. 참고 사항

- 1인 응모 건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 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명칭을 여러 명이 응모한 경우,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모전 응모 내용은 공모전 제출과 공모전 선정 후 공개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사정에 따라 발표 일정 및 선정규모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모관련 문의 : 서울시 자치행정과 02-2133-5822

☐ 공모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시민공모 신청서

필 수 정 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이 메 일			
기타사항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저작권 등 기타 사항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본 신청서에 기재되는 인적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시민공모전 관련 목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공모전 목적 달성 후 폐기됨 ○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공모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됨. ○ 응모 내용은 공모전 제출과 선정 후 공개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
--	--

☐ 공모 내용

응모분야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제안용어	
제안이유	- 100자 이내로 간단히 자유롭게 써 주세요.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0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47	(재)아름다운가게 (대표 홍명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	- 저소득 위기 가정 기초생활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정의 자립기 반 조성	990 (현금)	전국	'17.4.19~ '18.4.18
						'17.4.19 ~ '19.4.1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성북구고시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된 【성북동 113-86,117 한양도성 문화공원 조성사업(1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 2017-402호(2017. 3.30.)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2241-26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시행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사업	한양도성 문화공원 조성(1차)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86, 117	570㎡	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문화체육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2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한양도성 문화공원조성 사업(1차) -성북동 역사문화거점시설 조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성 명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86	대	373	373	임옥례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김자민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13, 103동211호 (정릉동, 우성아파트)					
					김성민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 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2	성북구 성북동 117	대	197	197	김자민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13, 103동211호 (정릉동, 우성아파트)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김성민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 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임옥례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한양도성 문화공원조성 사업(1차) -성북동 역사문화거점시설 조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86, 117	건물	연외조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건물(1층) 303㎡ 건물(2층) 268㎡ 건물(지하) 193㎡ 계단 1식 담장 1식 벽돌구조물 1식	상가	임옥례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권	
						김자민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13, 103동211호 (정릉동, 우성아파트)					
						김성민	서울 강북구 화계사길 60, 202호 (수유동, 스위트그린빌)					

◆ 노원구고시 제2017-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60호(1974.05.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되고, 노원구 공고 제2017-261호(2017.03.23.)로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한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노원구 상계동 1036-1~ 상계동 1037-1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	B = 10m L = 140m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60호 (1974. 5. 17.)	

나.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701-1)

다. 사업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12.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02-2116-4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상계동 1036-1 ~ 1037-1간 도로개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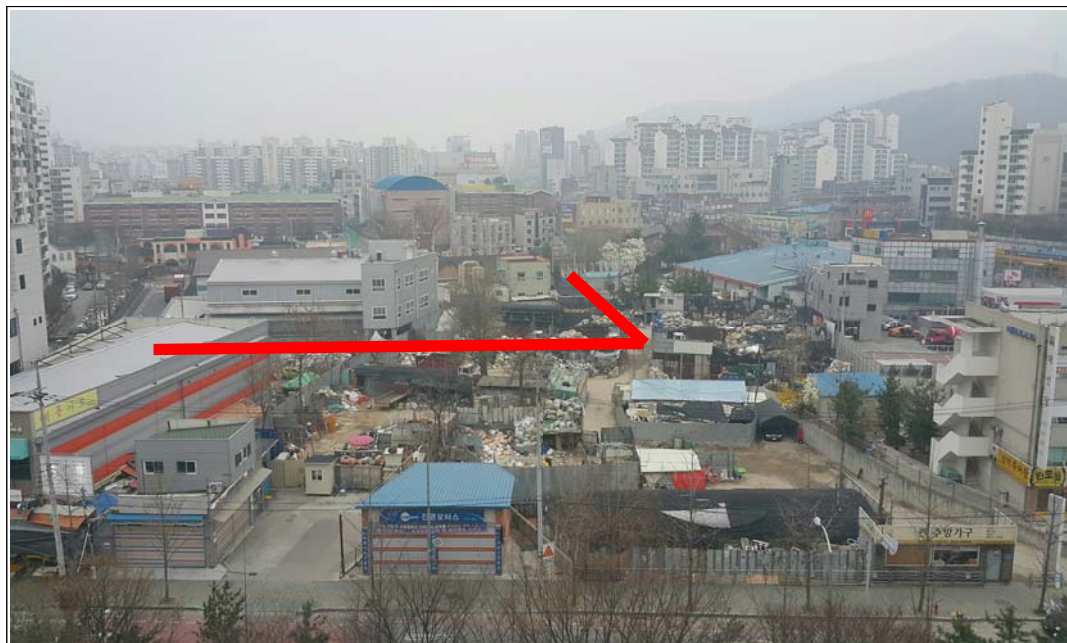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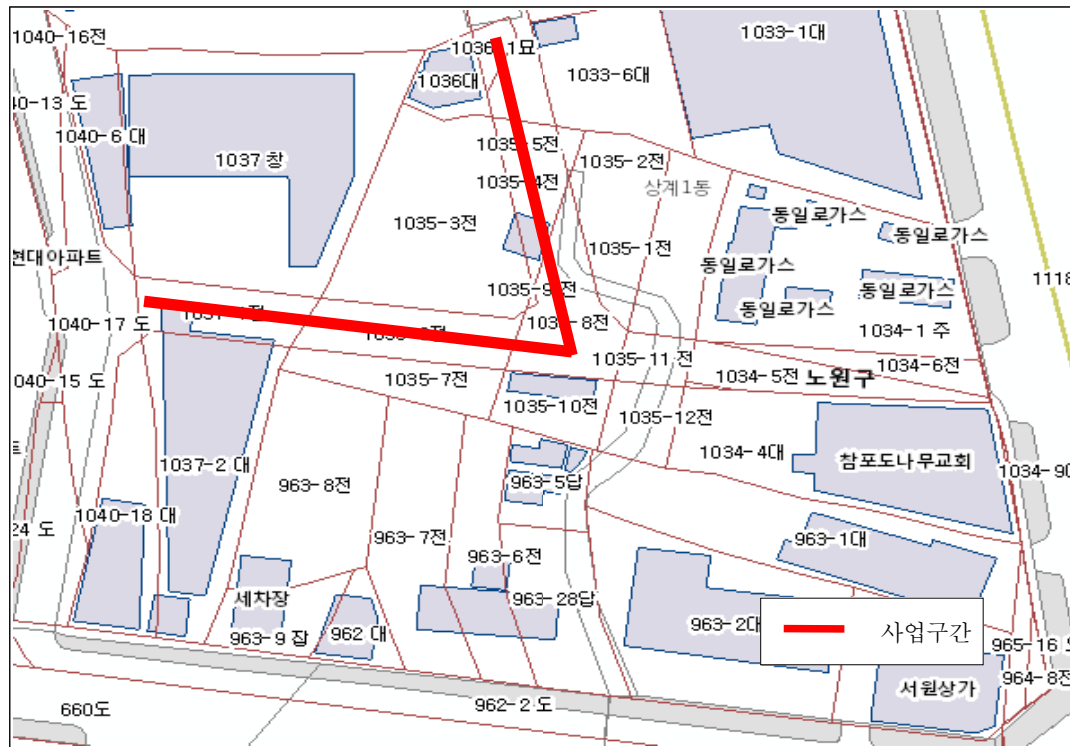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비 고
1	노원구 상계동 1036-1	묘	48	48	성명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22-2		
					성삼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2동 702호		
2	노원구 상계동 1035-4	전	212	212	홍경모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73		
3	노원구 상계동 1035-8	전	367	367	홍경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4동 1116호		
4	노원구 상계동 1035-6	전	347	347	홍경모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73		
5	노원구 상계동 1037-1	전	269	269	김인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91-3		

물 건 조 서

사업명 : 상계동 1036-1 ~ 1037-1번지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 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1039-1	컨테이너		7㎡		오치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36 텔보네세차장					
2	노원구 상계동 1035-4	주차공간	파이프조	17㎡		김남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35-8호 영남자원					
3	노원구 상계동 1035-4	계근대		1식								
4	노원구 상계동 1035-4	컨테이너 시설		15㎡		임경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소백자원					
5	노원구 상계동 1035-4	계근대		1식								
6	노원구 상계동 1035-8	컨테이너 시설	철제구조	8㎡		유재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한덕자원					
7	노원구 상계동 1035-8	간판		1식								
8	노원구 상계동 1035-6	웬스	철제구조	67.8㎡		이만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준희자원					
9	노원구 상계동 1035-6	계근대		1식								
10	노원구 상계동 1035-8	웬스	철제구조	70.8㎡								

□ 위치도 및 현황도



◆ 노원구고시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가. 상계동 389-52외 2필지 : 주택가 및 채재시장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결정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상계동 441- 3외 2필지 : 주차장 부지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토지정형화,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389-52외 2필지	-	증)199	199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441-3 외 2필지	1,082	-	1,082	2010. 4.1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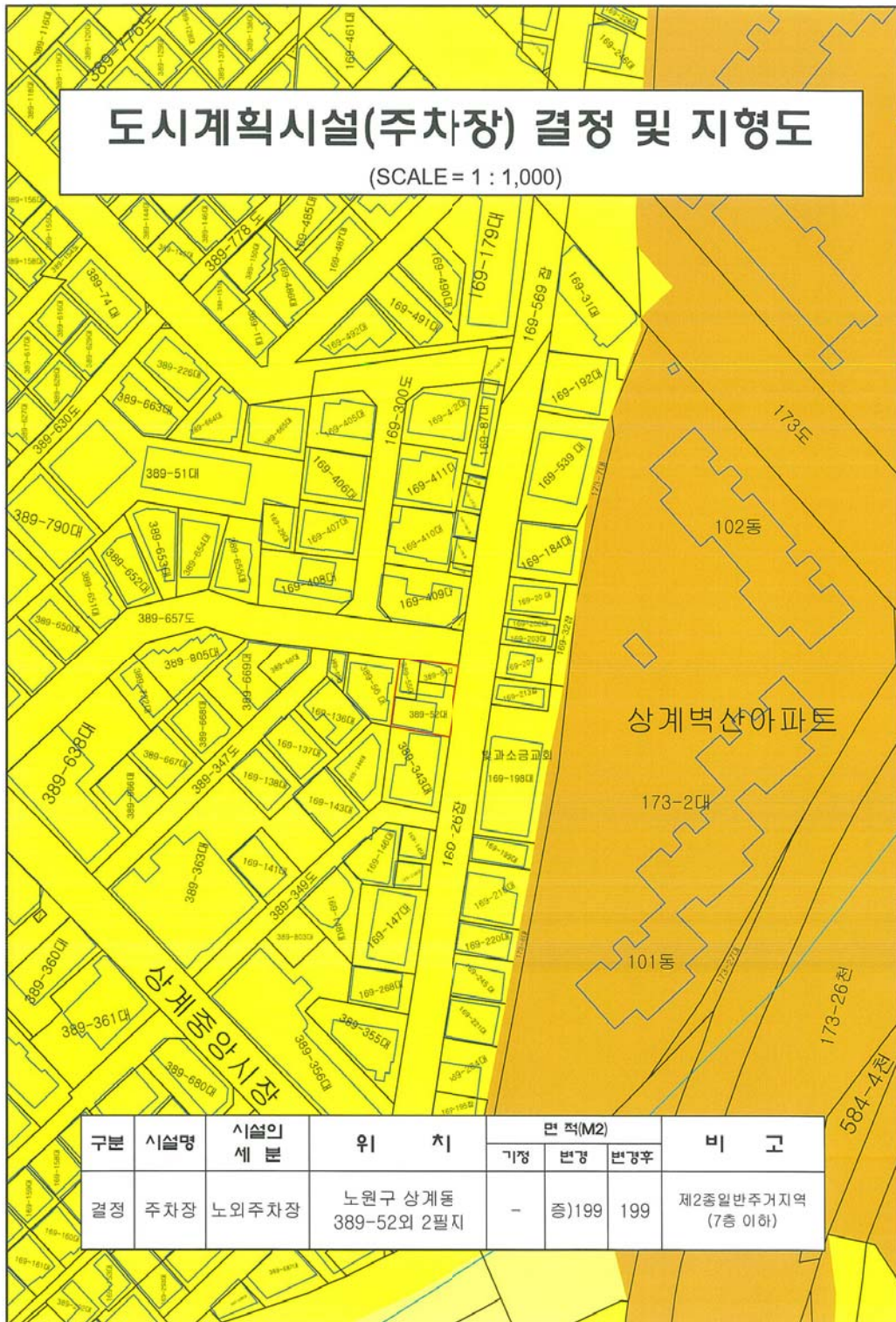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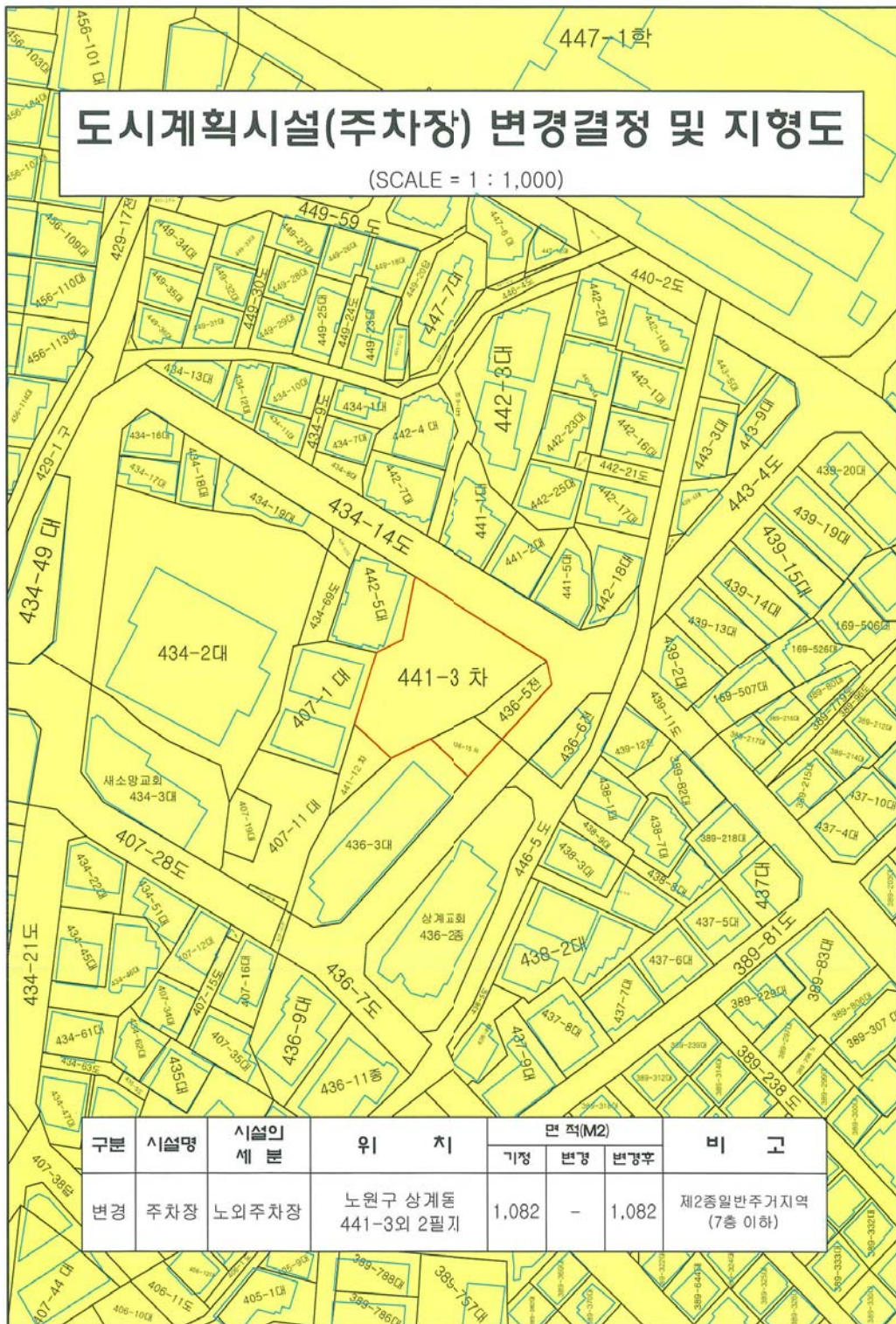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과(T.2116-386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7-278호(2017.3.9)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연희동170-9~142-2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대문구 연희동 160-1~170-16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연희동 170-9~142-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0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 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토목과(☎ 33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서대문구 연희동 170-9 ~ 연희동 142-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위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서대문구 연희동	160-1	대	36	36	조은산	서대문구 연희동 292-9					
2	서대문구 연희동	162-14	도	251	251	손경식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신안아파트 1704-1402					
3	서대문구 연희동	170-20	대	53	53	조은산	서대문구 연희동 292-9					
4	서대문구 연희동	170-78	대	331	6	남상욱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264 180동104호(원주더샵아파트)		(주)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근저당권	
5	서대문구 연희동	170-168	대	387	279	홍성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100					

◆ 마포구고시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9호(1976.3.31.)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7호(2015.7.2.)로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구 성산동 산53-17일 대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2. 마포구공고 제2017-259호(2017.3.16.)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마포구공고 제2017-285호(2017.3.23.)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3153-9572)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성산녹지 보상

다. 사업의 규모 : 1,0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동	번지					성명	주소(등기)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23,847	1,000							
1	성산	산53-17	임야	23,847	1,000	나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예루살렘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1				

※ 토지의 손실보상은 상기 토지 중 수목식재 등을 통한 녹지의 기능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분할 후 보상할 예정임

◆ **강서구고시 제2017-28호****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3호(2001.6.1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07호(2013.4.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사업의 명칭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42-14번지 등 6필지

다. 사업의 규모 : 5,9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화곡본동 산42-14	임야	800	800	1/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17 반포상가 지-202	현철원				
2	화곡4동 산22-95	임야	680	680	2/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순열				
					2/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조은숙				
					2/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중문				
					1/7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22, 304동 205호 (반송동, 동탄시범타운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아파트)	이연주				
3	화곡4동 산22-94	임야	320	320	1/1	경기도 이천시 경중대로 2993번길 138-112(사읍동)	이준열				
4	등촌2동 산87-3	임야	700	700	2/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순열				
					2/10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4, 3동 1005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오길자				
					6/1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4-8, 201호 (방배동, 상지리초빌)	박병우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5	화곡본동 산46-9	임야	450	450	455/4,760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89, 에이동 1906호(신정동, 삼성쉐르빌1)	추동길				
					545/4,760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89, 에이동 1906호(신정동, 삼성쉐르빌1)	추서현				
					353/4,760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89, 에이동 1906호(신정동, 삼성쉐르빌1)	추승현				
					455/4,76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항로24번길 116	추동창				
					535/4,76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항로24번길 116	추예림				
					363/4,760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710호 (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추재현				
					567/4,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1102동 1203호 (중앙동, 레미안 에코팰리스)	추화연				
					393/4,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1102동 1203호 (중앙동, 레미안 에코팰리스)	민정기				
					393/4,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1102동 1203호 (중앙동, 레미안 에코팰리스)	민세림				
					701/4,760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9-6(화곡동)	김성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6	화곡4동 산5-9 임야		2,950	2,950	3,297.5/13,19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9동 814호	민부기				
					1,648.75/13,19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294 그린빌라-5	한영구				
					1,648.75/13,19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5 가락6차현대아파트 101-807	한영철				
					1/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 16동 405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경채				
					1/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 16동 405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김태은				
					1/6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오피스텔 D동 1610호	김태석				

◆ 강서구고시 제2017-30호

도시계획시설(평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평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7-365호(2017. 3.23)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평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6-51번지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1,0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방화동 36-51	임야	1,000	1,00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 구로구고시 제2017-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호(1970.10.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된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8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4m, 연장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6-284	대	23	23	허영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53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압류(징수과)	
2	오류동 6-328	대	22	22	심대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58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37-3	지상권	
3	오류동 6-166	대	106	5	심대식	"				
4	오류동 6-320	도	29	29	심대식	"				
5	오류동 6-198	대	169	50	안완수	서울시 영등포구 궁동198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6-160	건물	시멘트블록조 및 판넬, 샤시	6	건물	백종환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워너 아파트)				
		보일러실	벽돌조 및 판넬	1	보일러실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2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김한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951-20 은광빌라2-001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박은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339 수지1차대진아파트106-805				
						김숙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9-41				
						차찬모	서울시 도봉구창동814 대우그린아파트101-503				
3	오류동 6-158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88-9삼성빌라401호				
4	오류동 6-220	보일러실	벽돌조	3	보일러실	조성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145-23 201호				
		옥상철계단	철제	1식	계단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 구로구고시 제2017-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 2011-78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오류동 135-6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135-6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8m, 연장2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135-69	답	344	53	이경훈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27호				

◆ 금천구고시 제2017-34호

가산동 3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우리 구 아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적정(조건)함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코자 하며, 같은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보와 구보에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가. 대지위치 : 금천구 가산동 38-1호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씨엔에스파크 대표 최광섭

-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3,562.39㎡
 마.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73세대)
 바. 건 폐 율 : 50.54%, 용 적 륜 : 198.76%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7-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17.01.25.)
 자. 변경승인 내용 : 사업주체 변경
 변경 전 : 주식회사씨엔에스파크 대표 최광섭, 박계철, 박정일
 변경 후 : 주식회사씨엔에스파크 대표 최광섭
 차. 면 허 세 : 67,500원

◆ **관악구고시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4호(2008. 8. 7.)로 결정된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 계획(공동개발)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조원)동 1655-6호 외 2필지의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지번	획지계획	면적(㎡)	획지계획	면적(㎡)
신림동 1655	공동개발 (지정)	1,061.3	공동개발	532.0
신림동 1655-1				
신림동 1655-6			단독개발	529.3

※ 보차혼용통로(4m)·건축한계선(1m) 신설 : 도면 참고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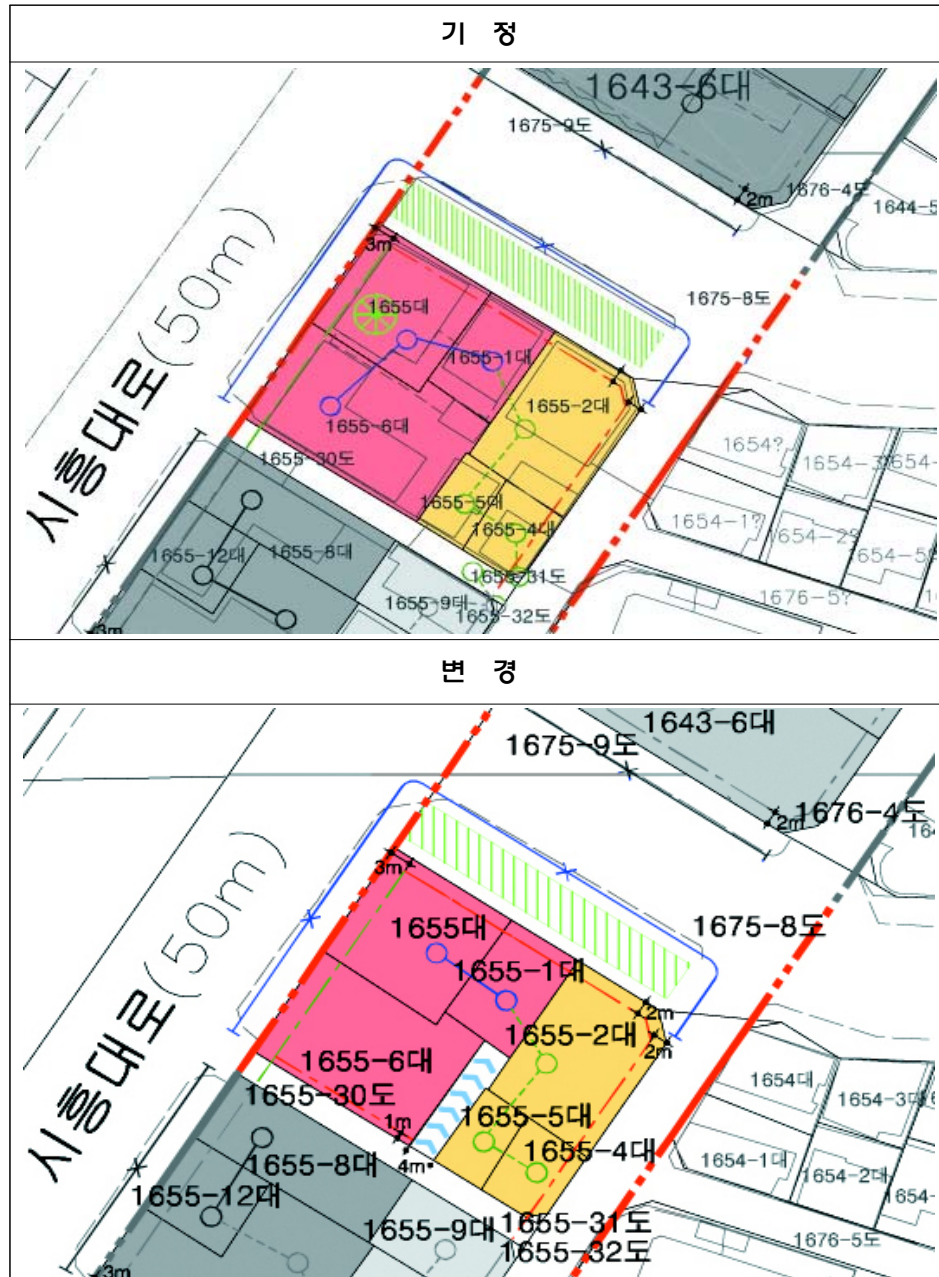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조원동) 1655, -1호, -6호]



◆ 관악구고시 제2017-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351호(2017.03.09.)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대상지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2) 면 적 : 3,930㎡

3) 내 용 : 토지보상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2,999	3,930							
1	신림동 산105-24	임야	3,914	180	임야	김아*	645624분의 104139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20번길 ***호, ***호(토평동)			
						문인*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문 *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박미*	645624분의 23128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호			
						박*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박중*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성순*	645624분의 1428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 큰마을대림아파트 ***-*****	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	가등기권자
						유민*	645624분의 34692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윤성*	645624분의 1041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재로24, ***호 (휘경동, 서울가든아파트)			
2	신림동 산105-23	임야	7,207	850	임야	이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동작 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서울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3	신림동 산105-20	임야	8,198	350	임야	김부*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			
4	신림동 산105-18	임야	53,680	2,550	임야	진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호(세종로)	오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동 ***호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가등기권자
									(주)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개봉동지점)	근저당권자
									(주)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개봉동지점)	근저당권자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종로지점)	근저당권자

◆ 서초구고시 제2017-34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7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23-16 등 5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 7,443㎡
 - 나) 내용 :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면적면적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서초동 산160-27	임야	29,600	7,443	16,328	1,39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4,936/16,328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길 *(누하동)	최정*	621.29/16,32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9, **동 ***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김신*	591.79/16,32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동 ****호(망월동, 미사강변도시12단지)	김윤*	178.92/16,328	은성*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70길 43 ****동 ****호 (청담동, 청담2차 이-편한세상)	근저당권설정
2	반포동 산85-11	임야	2,245	910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60031, 4117 Bitternut Lane ATP *** Gumee	이동*	2,245/2,245					
3	반포동 산89	임야	3,140	1,16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남윤*	3,140/3,140					
4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11,***호 (마장동, 마장동해맑은아파트)	안영*	132.6/5,966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59번길 19-7(덕풍동)	손성*	132.6/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동 ****호(석수동,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최승*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1길 35-5(봉천동)	신철*	132.6/5,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1동 ***호 (매탄동, 동남아파트)	이낙*	132.6/5,966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윤상*	132.6/5,966					
					서울 강동구 상암로11, ***동 ****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종*	132.6/5,9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 (우이동)	고종*	132.6/5,966									
	서울시 종량구 상봉로 131, *동 ****호 (상봉동, 상봉 듀로트리스)	이공*	132.6/5,9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4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1, ***동 ***호 (정현동, 청구아파트)	황선*	132.6/5,96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동 ***호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이*	132.6/5,9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5, *동 ***호 (오금동, 상아아파트)	김희*	132.6/5,96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 1021번길 *-*	최화*	132.5/5,96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동 ***호 (용현동,건영아파트)	권혁*	132.5/5,966	이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95번길 ***	근저당권설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0, ***호 (만촌동, 담터힐즈)	정환*	132.5/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65-13, ***동 ***호 (암사동, 암사e-편한세상)	연충*	169.4/5,966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6, ***호 (후평동)	박동*	169.4/5,966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 (중동, 미래내마을)	민경*	169.4/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동 ***호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최중*	169.4/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동 ***호 (분당동, 장안타운)	이웅*	169.4/5,9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동 ***호 (잠실동, 리센츠)	이재*	169.4/5,9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화로81번길 **	김차*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5-1, ***호 (인양동)	권명*	191.5/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동 ***호(야탑동, 장미마을)	김원*	191.5/5,966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동 ***호(호원동, 신일유평아파트)	백규*	132.6/5,9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4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서초구 방배동 964-24(42/6) 우림기든빌라 ***호	고무*	132.6/5,9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27, ***동 ***호(신길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성금*	191.5/5,966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박노*	169.4/5,966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112동 ***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이철*	132.6/5,966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동 ***호(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남영*	132.6/5,966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43/2) 삼성아파트 ***동 ***호	김동*	132.5/5,966		
					경기도 의왕시 새롭길 21, ***동 ***호(포일동, 인덕원대우아파트 푸른마을)	이옥*	191.5/5,96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동 ***호(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한상*	169.4/11,932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호(암사동, 강동해미리)	김태*	169.4/11,9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동 ***호(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이순*	191.5/5,966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27, *층동 ***호(보아주택)	윤원*	169.4/5,966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3, ***동 ***호(원문동, 주공아파트)	김명*	169.4/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김철*	191.5/5,966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2, ***동 ***호(문정동, 건영아파트)	이선*	663/29,83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이지*	169.4/5,9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5	방배동 산23-16	임야	1,921	1,921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5길 ** (홍제동)	박채*	1/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동 ***호(동소문동7가, 한신휴아파트)	현옥*	1/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세*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동 ***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노성*	1/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9, ***호(불당동)	최영*	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1, ***동 ***호(신방동, 천안신방푸르지오)	김혜*	1/1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동 ***호(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박성*	1/16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7-29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107(2016.11.17.)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25(2017.4.6.)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변경결정된 회현동1가 203-4번지 지상 「회현동 복합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중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내용

-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4번지 외 8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회현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규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9,044.72㎡
 - 나) 면적 : 2,388.8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주)신세계디에프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3층, 8층, 12층 (회현동2가, 프라임타워)]
 - 나)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5) 인가 신청일 : 2017.4.7
- 6) 인가 신청의 요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신축
-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18년 4월
-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1) 열람 및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 3396-5753)
- 2) 열 랐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중구공고 제2017-309호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04호(2016.11.14.),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16호(2017.03.1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56호(2014.07.09.),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13호(2016.11.30.)로 사업시행 인가(변경)된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되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실시계획인가 내용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회현역 7번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신설공사

2.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대

3. 사업시행 규모 : 폭 7.6m~19.0m, 연장 4.1m~13.2m, 면적 410.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순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5.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사업 완료 내역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최초결정일	비고
철도 (정거장)		회현동1가 194-19 일대	면적(㎡)	269.8	서고시 제181호 (83.3.29)	-
			길이(m)	4.1~13.2		
			폭(m)	7.6~19.0		
			높이 (m,해수면기준+)	29.92~44.52		
세부 사항	• 입체결정 범위 - 지상부 : A=152.1㎡ H=해수면기준(+42.47m~44.52m - 지하부 : A=269.8㎡ H=해수면기준(+29.92m~42.47m · 지하1층 A=269.8㎡ H=해수면기준(+36.47m~42.47m · 지하2층 A=15.3㎡ H=해수면기준(+29.92m~36.47m					

6. 사업시행기간 : 2016.11.15. ~ 2017. 04. 14.

7.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 비치도서와 같음)

◆ 은평구공고 제2017-5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3)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류		6	일반도 로	150	녹번동 29-31	녹번동 89-23	-		1969.1.18 (서고3호)	
변경 (폐지)	소로	3류		6		150	녹번동 29-31	녹번동 89-23	-		-	전구간 폐지
기정	소로	3류		8	일반도 로	60	구산동 169-3	구산동 172	-		1984.11.28 (서고698호)	
변경 (폐지)	소로	3류		8		60	구산동 169-3	구산동 172	-		-	전구간 폐지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	신사동 300-165	165	감)165	-	1972.07.22 (건고103호)	

□ 변경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주변여건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코자함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 마포구공고 제2017-4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창전동 42-15~395번지 외 5건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4. 20. - 2017. 5. 4.
2.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5)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	6	국지도로	114	창전동 42-15	창전동 395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류	-	6	국지도로	114	창전동 42-15	창전동 42-16	일반도로	1972.08.11. (서고 제115호)	
폐지	소로	3류	-	6	국지도로	28	공덕동 3-50	아현동 405-1	일반도로	1964.01.24. (건설부 제768호)	
폐지	소로	3류	-	6	국지도로	30	용강동 473-2	용강동 472-7	일반도로	1964.01.24. (건설부 제768호)	
폐지	소로	3류	323	5	국지도로	68	염리동 81-48	염리동 81-90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폐지	소로	3류	(2)	6	국지도로	60	염리동 98-65	염리동 105-8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4.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금천구공고 제2017-480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 호암사지구)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안)**

건설부고시 제146호(1975.9.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19호

(1983.12.23) 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5-231호(2005.8.4)로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5-31호(2005.8.10.)로 지형도면 승인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호암사지구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4. 17 ~ 2017. 4. 30(14일간)
2.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2627-1653~5)
3.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호암사지구 조성계획(변경)
 -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26,784㎡
 - 내 용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호암사지구내 숲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기조성된 치유의 숲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코자 함.
 - 교양시설 16,350㎡ ⇒ 16,533.2㎡ (숲치유센터, 증 183.4㎡)
 - 편익시설 1,192㎡ ⇒ 1,506㎡ (주차장, 증 314㎡)
 - 녹 지 97,395㎡ ⇒ 96,897.8㎡ (감 497.2㎡)
4. 관련도서 :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17-425호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호(2002.06.28.)로 결정되고, 2017년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1.25.)에서 수정 가결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 가. 구 역 명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 면 적 : 70,954m² (특별계획3구역 면적 : 11,391.5m²)
- 나. 취 지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이고 열람의견을 듣고자 함.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 마.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별관 유한양행 3층, 820-9734)
- 바. 열람도서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일반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련도서 비치
- 사. 의견제출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820-9734, FAX 820-9798)

◆ 관악구공고 제2017-5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256-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구 봉천동 256-1 일대)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다. 사업규모 : 10,000m²
-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1)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2,999	10,000						
1	봉천동 256-1	전	1,696	1,696	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2	봉천동 산41-4	임야	59,198	8,304	임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 관악구공고 제2017-5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동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며,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0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8번지 일대)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등

다. 사업규모 : 258㎡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3)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차. 의견서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8일대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현실적 이용상 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계				258	258						
1	신림동 산108-6	임야	임야	226	105	유*주	단독 소유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대지		121						
2	신림동 산108-7	임야	임야	32	32	유*주	단독 소유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8일대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 종류	구조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142							
1	신림동 산108-6	건물 (주택)	세멘조	115.703	주거	유*주	관악구 신림동 ***				
			세멘조	5.297	주거						
			세멘조	17	주거						
2	신림동 산108-7	지장물 (화장실)	판자	4	화장실						

◆ 서초구공고 제2017-50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 고시 제72호(1977.07.09)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1호(2003.12.15)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호(2017.01.0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도구머리 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5-3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도구머리근린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부지 면적 : 761.68㎡
 - 나) 시설면적 : 483.5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나.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구머리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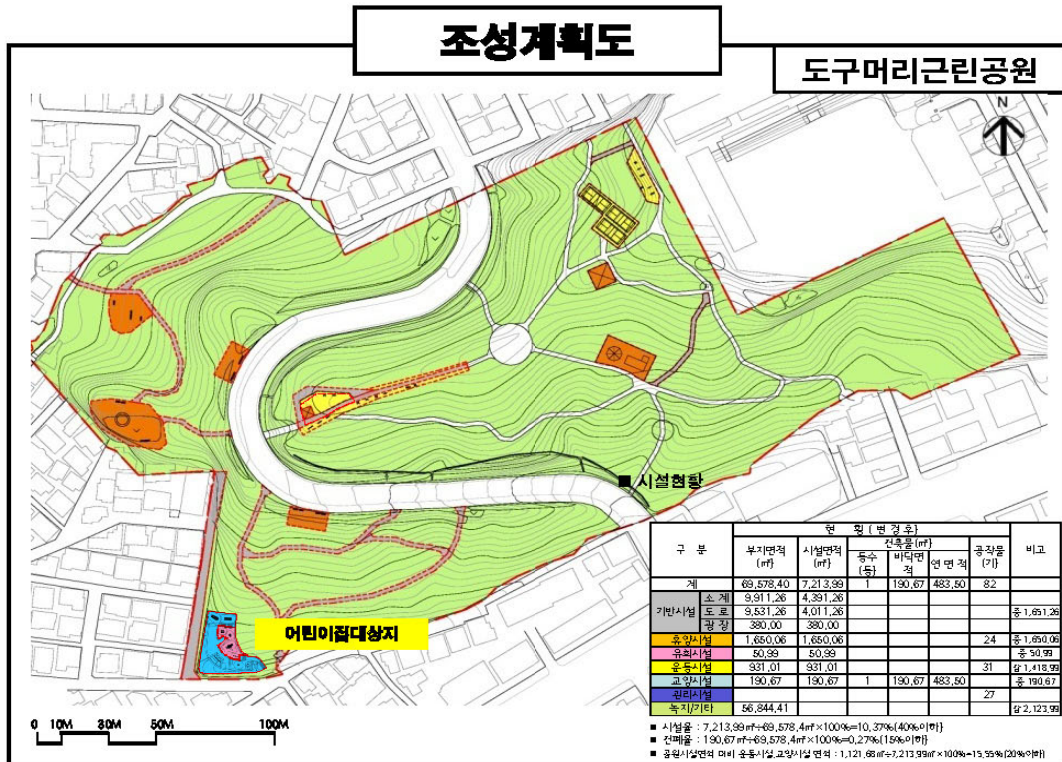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73-136	임야	3,7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2	방배동	산73-139	임야	3,468.0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김영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3	방배동	산73-141	임야	9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4	방배동	산73-145	임야	1,961.0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5	방배동	산73-147	임야	2,988.0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6	방배동	산73-148	임야	597.0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김영준				
7	방배동	산73-149	임야	6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김영준				
8	방배동	산73-150	임야	1,22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방유선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창계동)	김영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구머리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9	방배동	산73-155	임야	45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0	방배동	산73-157	임야	3,6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방배동	산 73-2	임야	13,880.0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청계동)	방유선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40(청계동)	김영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34 양지마을 103-1101	김영희				
12	방배동	산 75-1	임야	2,64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3	방배동	산 75-2	도로	9,1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방배동	산 75-3	임야	3,295.0	761.6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5	방배동	산 75-4	임야	11,1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6	방배동	산 75-6	임야	1,7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방배동	산 75-8	임야	4,78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방배동	산 75-9	임야	2,83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강남구공고 제2017-7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 및 서울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도곡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133호(2016.5.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4-20호(2014.3.6)로 도시계획사업(도곡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423-6243)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산46번지 등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도곡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388㎡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도곡동 산46	임야	595	595	김 미 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108-1002			
2	강남구 도곡동 산35-2	임야	793	793	한 일 자	서울시 중구 북창동 11-3	조흥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남대문지점)	근저당권
					한 석 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아파트 61-1006			
					한 일 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아파트 318-307			
					한 일 홍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펙스 루이브룩드라이브 204			
					한 일 봉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1 한신서래아파트 4-1002			
					이 명 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아파트 61-1006			
					한 수 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12 효성올림픽카운티 2-201			
					한 종 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아파트 61-1006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2척	양화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2017.04.17.~ 2017.05.04.	2017. 04.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2척	한남대교 정밀안전진단	2017.04.17.~ 2017.04.30.	2017. 4.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휴먼트리에프앤씨	영등포구 노들로 111(양화동)	성산대교~가양대교	-동력선 2척 -무동력 7대	수상레저사업	2017.4.15. ~ 2017.10.31	2017. 4. .

사업소공고

◆ 동작소방서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였기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동 작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동작2017-1호 (2017.4.12.)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118-81-15986)	구 자 관 (44.8.14) 동 일 범 (59.1.5)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92 삼구빌딩 (신대방동)	02-828-3943

※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846-119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 제2017-131호

서울시보 제2017-3404호(2017.4.13.)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정정 전】 79페이지

<지정 사유>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총 16점으로,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 탕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무신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행당동 아기씨당과 함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조선시대 전농동 일대는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또한 서울지역 농악 관련 일종의 풍속화로 서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정 후】 79페이지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총 16점으로,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 탕화의 영향이 나타나며,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무신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행당동 아기씨당과 함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조선시대 전농동 일대는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또한 서울지역 농악 관련 일종의 풍속화로써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정 전 → 후】 페이지 80~83 전문에서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 숲당아가씨 → 숲당아기씨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 강남국 호국 별상마마 → 강남국 호구 별상마마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